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of Family Crisi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Korea

- With a Focus on the Family Life Cycle Perspective After Economic Crisis -

김유경 · 김양희 · 임성은

연구보고서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김 유 경 외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 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93-0 93330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가족갈등의 잠재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경제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 안정성 약화가 예측되고 있다. 2003년도 가계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가계부채의 확대와 물가상승 및 실업률 상승 등 가족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기를 추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가족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경제위기 하의 가족위기의 대응양식은 개별 가족이 처한 자원의 양과 질, 사회적 관계망 성격, 부부 및 가족관계 특성, 가족주기 등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여 정책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위기 하에 급증하는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위기의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빈곤예방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별로 괴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가족생애주기별로 위기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임성은)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임성은)

제3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임성은·김유경)

제4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김양희)

제5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김유경·임성은)

제6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김유경·김양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토를 해주신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 연세대학교 전해정 교수, 서울대학교 진미정 교수, 본 원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연구의 제한점	23
제2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27
제1절 가족생애주기 이론	27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및 대응 관련 선행연구 고찰	39
제3절 시사점	48
제3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53
제1절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53
제2절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58
제3절 시사점	62
제4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67
제1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	67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외 법·제도	108
제3절 시사점	140

제5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151

제1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151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차별적 대응 욕구 181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92

제6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199

제1절 기본방향 199

제2절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200

참고문헌 215

부록 223

표 목차

〈표 2-1〉 학자별 가족생애(생활)주기 단계	30
〈표 2-2〉 혼인유형별 혼인건수	41
〈표 2-3〉 합계출산율	41
〈표 3-1〉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가족위기	58
〈표 4-1〉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전후 상담 현황	70
〈표 4-2〉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78
〈표 4-3〉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83
〈표 4-4〉 육아지원시설 이용 관련 예산 지원 현황	84
〈표 4-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	86
〈표 4-6〉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87
〈표 4-7〉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92
〈표 4-8〉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97
〈표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기준	106
〈표 4-10〉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130
〈표 5-1〉 연도 및 연령별 고용변화	152
〈표 5-2〉 연도 및 연령별 근로형태	153
〈표 5-3〉 연도 및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	154
〈표 5-4〉 연도 및 연령별 소득 및 지출	156
〈표 5-5〉 연령별 경제위기로 인한 실제적인 타격 여부 및 가계지출 감소 여부	156
〈표 5-6〉 연도 및 연령별 주택소유가구 비율	157
〈표 5-7〉 연령별 부채비율 및 이유: 1999년	158

〈표 5-8〉 가구주 연령별 부채비율 및 이유: 2009년	159
〈표 5-9〉 지난 1년간 가족관계의 변화	160
〈표 5-10〉 연령별 지난 1년간 가족관계 변화 정도	161
〈표 5-11〉 연령별 부부폭력발생률	162
〈표 5-12〉 연도 및 연령별 자녀관계 만족도	162
〈표 5-13〉 연령별 자녀관계 만족도: 2009년	163
〈표 5-14〉 연도별 이혼율의 변화	164
〈표 5-15〉 연령별 이혼비율	164
〈표 5-16〉 연령별 자살 충동여부 및 이유	165
〈표 5-17〉 연도별 자살 통계	165
〈표 5-18〉 연도별 평균 자녀양육비	166
〈표 5-19〉 지출감소 항목별 순위	167
〈표 5-20〉 연령별 방과 후 자녀양육형태: 2007년	168
〈표 5-21〉 아동양육의 어려움: 2007년	169
〈표 5-22〉 연도별 혼인율 및 출산율의 변화	170
〈표 5-23〉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특성	171
〈표 5-24〉 가족특성별 대응 욕구	181
〈표 5-25〉 실업자를 위한 대책: 1998년	183
〈표 5-26〉 연령별 자녀양육 대응 욕구(1순위)	183
〈표 5-27〉 연령별 자녀양육 대응 욕구(2순위)	184
〈표 5-28〉 연령별 가정폭력 대응 욕구	185
〈표 5-29〉 연령별 결혼 기피 대응 욕구	185
〈표 5-30〉 연령별 출산기피 대응 욕구	18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분석틀	19
[그림 3-1]	성별에 따른 초혼연령 추이	53
[그림 4-1]	2009년 미혼모·부 가족 지원체계	71
[그림 4-2]	2009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목표	72
[그림 4-3]	가정폭력 네트워크 시스템	74
[그림 4-4]	새로마지플랜 2010	77
[그림 4-5]	아이사랑플랜 추진방향	82
[그림 4-6]	비전 2030의 패러다임 구축 체계	96
[그림 4-7]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준 및 현황	98
[그림 4-8]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취업패키지지원 개요	102
[그림 4-9]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현황	107

부록 목차

〈부표 1〉	결혼연기 및 출산율 저하 관련법과 내용	225
〈부표 2〉	자녀 돌봄노동관련 법과 내용	227
〈부표 3〉	이혼가정지원 관련법	231
〈부표 4〉	가정폭력 관련법과 내용	233
〈부표 5〉	청소년 관련법	236
〈부표 6〉	경제 구조적 변화로 인한 가정의 위기지원관련법	238
〈부표 7〉	노인의 돌봄노동관련 법과 내용	24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ased on the theory of family life cycle, causes and types of family crisis und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rough case studies examines various welfare needs of families in crisis. "Family crisis" is defined as a situation that the family cannot either successfully move from one stage of development to the next or complete developmental tasks in a given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due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family.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families in crisis at each stage to prevent family poverty and promote healthy marriage. With a view to pursu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o help families in crisis,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needs to effectively respond to family's diverse demand for social services such as cash, housing assistance according to their stage of family life cycle.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monitoring system to find out and support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and provide universal services for families.

요약

제1 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빈곤 예방 및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가족위기의 요인과 특성, 복지욕구 등의 파악을 통해 가족생애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가족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
- 가족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독특한 위기가 있는지, 동일한 위기이나 가족주기별로 위기 내용이 상이해지는지 진단
- 가족생애주기별로 차별적인 가족위기 및 욕구를 파악, 발달과업 수행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 제고

□ 연구의 내용

-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가족위기의 발생
-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 연구의 방법

- 문헌고찰
- 각종 가족위기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존 가족실태 관련 통계자료 심층분석 및 가족위기 사례조사
- 워크숍 3회 개최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의 위기는 경제위기라는 명제 하에 도출된 개념이므로 연구범위 또한 사회의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협의의 위기로 제한함.
- 가족생애주기이론은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둔 동태적 관점의 이론으로 경제위기라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사회현상이 가족에게 미치는 위기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제2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본 연구에서의 가족위기 개념

-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각 가족주기단계상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발달과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함.

□ 가족생애주기의 개념

- ‘가족’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예측하며, ‘분석의 기본단위’로 전제하여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주목함.
- 일반적으로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인해 축소되면서 노년기의 사망으로 종결됨.

- 가족생애주기는 서구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자녀가 많거나 터울이 긴 가족과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다른 문화권의 가족을 효율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별 특성

-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 － 결혼에 의한 가족의 결합을 축으로 하는 시기로서, 부부 어느 한 쪽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거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부부갈등이 생김.
- 미취학 자녀기 가족
 - －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응하고 부모와 자녀가 만족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확립하는 기간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취학 자녀기 가족
 - － 자녀들이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과정이 시작되며, 주요과제는 부모-자녀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임.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 － 자녀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외부 세계에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로, 주요과제는 부모-자녀체계에서 부부체계로서의 친밀한 협력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임.
- 노년기 가족
 - － 일반적으로 부부는 3세대의 조부모가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관심이나 사회생활을 만들어갈 필요가 생김.
 - － 노년기의 재정적인 불안감이나 자녀에 대한 의존의 염려가 커지며, 노후보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노년기 빈곤을 경험하게 됨.
- 시사점
 - － 가족생애주기를 적용한 맞춤형 가족위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 가족정책은 능동적 복지정책으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

색하는 방향으로의 연구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기능적 측면에서 가정위기의 보편적인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방안으로서 가족의 역량강화와 탄력성 (Resilience) 강화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중산층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기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의 위기와 해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을 파악하고, 통합·예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 조직 및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함.

제3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 가족형성기로서 부부간 적응을 위해 의사소통방식의 공유, 일의 분담, 가정생활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가 주요 발달과업임.

□ 미취학 자녀기 가족

-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역할 분담, 경제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 등 부부간에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업무 분담이 주요 발달과업임.

□ 취학 자녀기 가족

- 자녀의 학교적응(학교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또래관계, 학습 적응)과 교육·학습, 청소년 자녀의 자아감 발달이 주요 발달과업임.
- 자녀가 독립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상호간의 분리가 부모의 주요 발달과업임.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 자녀의 심리적·물리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자녀 양육의 완료로 인해 부부관계가 새롭게 부각이 되어 부부를 중심으로 삶의 계획을 재정립하는 것이 주요 발달과업임.

□ 노년기 가족

- 경제적인 대책 마련, 정신적·육체적 건강 유지, 거주환경 선택, 생활방식 시도, 부부관계 유지개선, 친인척과의 유대감 발전, 죽음의 수용 등이 주요 발달과업임.

□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 경제위기는 특정 가족생애주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 가족체계 불균형과 갈등을 유발함.
- 해당 가족주기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발달과업은 단순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각 가족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도 존재하나, 특정 문제들은 전 주기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족주기와 위기대응 자원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대응방식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음.
-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기능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과업수행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제4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 국내 법·제도

-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여 이혼 후의 사후개입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해체가족은 취약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결혼연기현상과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적 접근인 민간기관, 기업, 지역사회, 정부 부처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녀의 돌봄노동관련 정책들은 ‘권고’의 성격이 높아 피고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있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취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성, 건강, 안전 등을 보호·예방하기 위한 One-stop Service System이 마련되어야 함.
- 중·장년기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 위기를 맞아 저하된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성년기 자녀의 우선취업 지원 및 경제적 자원 확보가 필요함.
- 노인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추 기관(Control Tower)을 설치하고, 전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필요함.

□ 국외 법·제도

- 이혼 전 예방교육과 상담지원, 별거 기간제를 통한 숙려 시기지정, 가정해체위기 후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음.
-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실행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의 차등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돌봄지원을 위해 가정의 건강성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제도와 부성이 강조되어진 시책이 실시되고 있음.
- 성인자녀·중년 및 노년기 가족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무직자, 무거주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음.
- 영국, 호주, 스웨덴의 중·노년기 정책들은 개인육구별 지역사회내 서

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가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제5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 경제위기의 발생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가족관계에서의 부조화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과 소득의 감소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각 가족주기 단계의 발달과업 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지지 자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지임.

-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유대, 가족에 대한 긍지와 일치감, 양육 지원 및 행동 등은 가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족의 대처자원 및 반응에 따라 각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각기 다르게 경험되며 대응방안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제6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 기본방향

- 경제위기 하에 전체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에게 발생하는 위기의 다각적 해결을 위하여 법적 근거 강화

-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체 위기 가족의 대응방안 모색
- 경제적 위기가족을 위하여 긴급지원의 실효성 제고, 생계 및 주거지원 강화를 통하여 경제력 제고
- 위기 직면가족을 발굴·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응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가족생애주기 4단계별로 맞춤형 정책 모색

□ 전체 가족생애주기별 사회적 대응방안

-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 －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위기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 경제위기 관련 법의 사후개입 및 지속성 강화
- 경제위기 하의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해체위기 가족의 대응 방안
 - － 숙려제도 및 자녀양육 관련법의 강제성 강화
 - － 해체위기 가족의 주거지원 강화
 - － 가정폭력 대응방안
- 경제적 지원 강화
 - － 경제위기 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 경제위기 가족의 생계 지원 강화
 - － 경제위기 가족의 주거 지원 강화
- 위기직면 가족 지원
 - － 잠재적 위기직면 가족의 발굴·지원 시스템 도입
 - － 해체위기 직면가족의 위험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망 마련
-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 부부갈등 완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통한 결혼 적응력 제고

- 출산제고 방안

- 부채부담 해소로 가계재정의 건강성 제고

-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

- 맞벌이 가족의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

-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방안

- 성인자녀 및 중년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 성인자녀의 결혼 제고 방안

- 중산층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경제위기 직면가족의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제도 도입

- 중년기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 노년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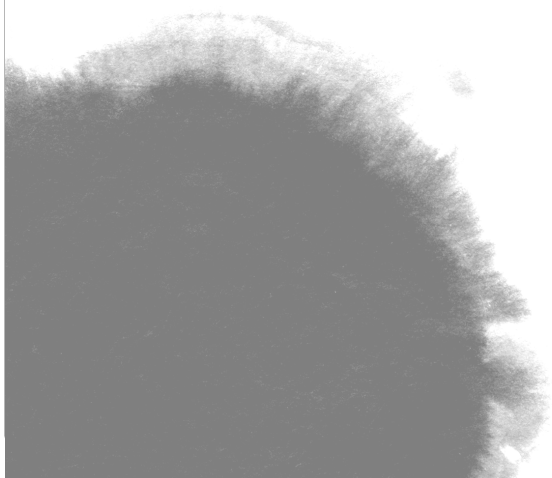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 노인돌봄 가족의 경제적 지원 검토

-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결과적으로 가족생애주기별로 과업수행 제고를 위한 통한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로 우리나라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기여

01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고 가족가치관이 변화되는 등 다양한 가족갈등의 잠재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결혼고착성은 저하되고 이혼허용도가 높아졌으며, 가족가치관의 세대간 격차도 증가하여 가족간 유대감의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2~3년간 새로운 경제적 위함이 대두되면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 가족 안정성 약화가 예측되고 있다. 2003년도 가계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가계부채의 확대와 물가상승 및 실업률 상승) 등 가족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기를 추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한 빈곤은 개인과 가족생활의 변화, 노숙자의 증가, 비행과 범죄의 증가 등을 유발한다.

특히, 과거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위기라는 점에서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친 영향은 크게 다섯 가지 현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송혜림

1)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 2009.

외, 2009). 첫째, 장기화되는 경제위기는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삶을 악화시켜 미래의 희망을 담보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이는 국가의 지원대상인 수급권자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과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연계되고, 이는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하향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집단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위기직면가족²⁾으로 누적되고 있다. 셋째,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영향은 실직 여성의 증가와 기혼여성 구직자의 고용증가로 이어지나, 기혼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가정의 공동화와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경제위기는 가족 간 갈등 및 불화 등 가족관계 약화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유기와 방치의 위험성을 높여 자녀양육기와 중년기 가족 등 가족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는 미래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출산이 기피되고, 이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이라는 개별가정의 기능의 혼란, 왜곡문제로 등으로 이어진다(송혜림 외, 2009). 이는 경제위기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조이혼율은 2003년 3.4‰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2.4‰에 이르고 있으나³⁾,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도 1990년 이후 15년간 39.9%의 증가율을 보였고, 조손가족도 1995년 이후 10년 간 65.1%로 증가하였다⁴⁾. 자살률은 IMF 직후 1998년 인구 10만명당 18.8명에서 2003년 23.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5년 24.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⁵⁾.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00년 75,723건에서 2007년 167,62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 ‘위기직면가족’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부각된 일정 소득계층을 임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음 단계의 소득계층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를 포괄함(송혜림 외, 2009).

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5)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조사대상 가구 중 40.3%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하였다⁶⁾.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가족위기를 유발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선택이기보다는 사회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비선택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 역시 사적 영역으로서 가족 내부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를 포함한 사회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가족단위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외적 환경에서의 지원을 통해 해결이 될 수 있다.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1월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위기구호대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각종 위기 하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역기능과 빈곤을 예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가족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며,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경제위기 하의 가족위기의 대응양식은 개별 가족이 처한 자원의 양과 질, 사회적 관계망 성격, 부부 및 가족관계 특성, 가족주기 등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 2004). 이는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수행과업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가족 위기유형 및 특성, 영향은 가족생애주기별로 다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생애주기별로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여 정책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가족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6)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대비할 수 있도록 가족의 탄력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Empowerment)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최근 경제위기 하에 급증하는 위기의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빈곤 예방 및 가족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는 대응책 마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문제는 “경제위기는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수행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별로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가족생애주기별로 위기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하에 발생하는 가족위기 개념을 가족생애주기 관점으로 접근하여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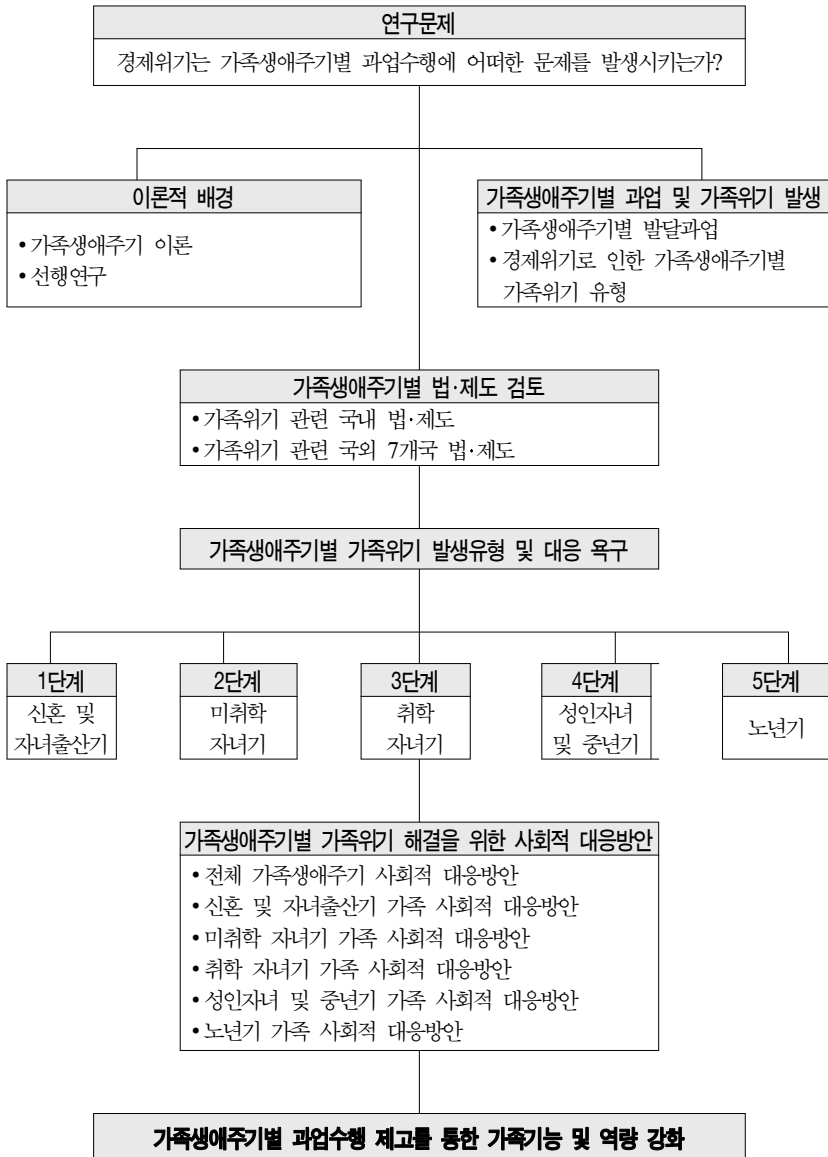
둘째, 가족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독특한 위기가 있는지, 동일한 위기이냐 가족생애주기별로 위기 내용이 상이해지는 지를 진단한다.

셋째, 가족생애주기별로 차별적인 가족위기와 욕구를 파악하고 발달과업 수행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를 제고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1]과 같으며, 동 연구분석틀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하면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는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가족위기 발생, 그리고 국내·외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법·제도 비교를 논의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유형과 위기대응욕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 및 법·제도, 가족위기 발생유형과 대응욕구를 중심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의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장에서 가족생애주기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가족생애주기단계별 특성과 가족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가족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나.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가족위기의 발생

제3장에서는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검토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족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동일한 문제지만 가족생애주기별로 문제의 내용이 상이해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다.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제4장에서는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

하였다. 신희 및 자녀출산기, 미취학 자녀기, 취학 자녀기, 성인자녀 및 중년기, 노년기 등 5단계별로 접근하여 관련법과 부처별 정책 및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고, 또한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 이혼, 폭력 등으로 인한 해체위기가족 관련법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민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정책으로는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장기 보육정책’, ‘아이사랑플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이혼 및 한부모 가족정책’, ‘미혼모·부 정책’,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가정폭력 관련 정책’,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신규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민생안전 긴급지원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폭력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법·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국외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호주, 스웨덴, 기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위기 관련법과 제도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 발생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신희 및 자녀출산기, 미취학 자녀기, 취학 자녀기, 성인자녀 및 중년기, 노년기 등 5단계별로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위기대응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관련 통계자료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제6장에서는 가족생애주기이론,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시사점, 가족위기 발생유형 및 대응 욕구 등을 반영하여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수행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전체 가족생애주기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긴급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체위기가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위기직면가족 발굴·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응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생애주기 5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고찰

가족생애주기 이론,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 과업과 가족위기 발생,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검토 등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나. 사례조사

가족생애주기 5단계별로 각 3건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제위기 발생으로 개인 및 가족생활에 변화를 경험한 가족들이다.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사항, 경제위기 발생 사항, 경제위기 발생 후 생활상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 발생 후 대처방안, 경제위기 발생시 가족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토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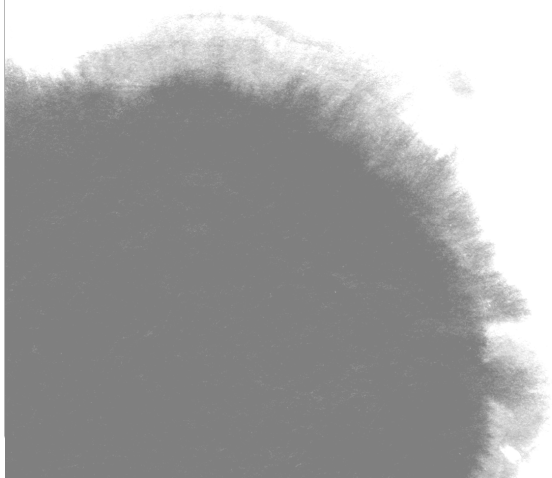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위기’ 개념은 ‘경제위기 하에 발생하는 가족위기를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수행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핵가족화, 가족구조,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가족위기 개념과는 상이함을 밝힌다. 즉, 본 연구에서의 가족위기는 경제위기라는 명제 하에 도출된 개념이므로 연구범위 또한 사회의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의 위기에 초점을 두어 협의의 위기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족생애주기이론은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둔 동태적 관점의 이론으로, 경제위기 하라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사회현상이 가족에게 미치는 위기상황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이론의 대명제를 유지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의 발달적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발달과업이 경제위기로 달성되지 못한 상태를 위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의의 위기개념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특수상황이 주어질 때 가족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동일한 문제이나 가족생애주기별로 문제의 내용이 다른지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위기 발생유형과 대응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가족관련 통계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가족생애주기별로 심층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질적인 측면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통계자료가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가구주의 연령을 가족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02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2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각 가족주기 단계상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발달과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것’을 ‘가족위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의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위기와 대처방안을 가족생애주기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통해 가족의 위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1 절 가족생애주기 이론

1. 가족생애주기의 개념

‘가족생애주기’는 개인의 발달단계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가족의 발달 단계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생애 또는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관점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며, 비슷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을 특정 범주로 구분하여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한 가족의 주기에 나타나는 각 국면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취약점과 강점을 시간적 차원과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유영주 외, 2000).

즉, 가족생애주기 이론은 ‘가족’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가족발

달이론에 해당하며, ‘가족’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전제하고, 가족의 구조가 아닌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한경혜 외, 2005). 이와 관련하여 Klein과 White(1996)가 정리한 가족생활주기의 기본가정⁷⁾을 요약하면, 첫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장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규범, 가족구조가 변하므로 발달과정은 가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가족은 개인·심리적 측면, 구성원간 상호관계·작용적 측면, 사회·제도적 측면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가족은 가족 고유의 규범이나 문화 등이 존재하지만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체제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넷째, 결혼, 출산 등 주요 가족사건은 가족발달의 지표로 이해되며, 이러한 시간개념은 물리적 시간보다 시기나 순서에 대한 규점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발달적 변화과정은 보편적으로 개인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녀로서의 성장과 독립, 결혼, 출산, 육아, 성인 자녀의 독립, 퇴직 및 노후로 구성되며, 이러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시간적 연속의 각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양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단계를 동일하게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인해 축소되면서 노년기의 사망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나 가족의 발달단계는 이동발달단계 이론과 같이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마다 순서와 시기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Klein & White, 1996; 한경혜 외, 2005 재인용).

가족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관점은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Rowntree가 개인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가족에도 주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1930년대 미국의 농촌사회학자들이 이를 개념화하였다(유영주 외, 2000; 한경혜 외, 2005). 이후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2단계부터 24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가족구성원 수,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단계 등에 따라 주기가 나뉜다. 가장 간단한 주기 분류는 ‘확대기’와 ‘축

7) 한경혜 외, 『가족발달』, 2005 재요약

소기'의 두 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확대기는 가족형성에서 자녀 출산 및 성장까지의 단계이고 축소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면서 자녀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고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0년대 미국의 농촌사회학자인 Sorokin, Zimmerman, Galpin은 가족원 수의 변화에 따라 '신혼부부 단계', '한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단계',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는 단계', '노인부부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Bigelow(1936)는 수입과 지출의 재정적 유형 변화와 자녀들의 교육상황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였고, 1948년 Hill과 Duvall은 첫 자녀의 발달단계와 은퇴기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가족',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유아기 가족', '아동기 가족', '청년기 가족', '독립기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의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가족을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가족원 개인의 생활주기 집합체로 이해하였다. Rodgers는 Duvall(1948)의 8단계를 24단계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Erickson은 가족생활주기를 구애기, 결혼초기, 자녀양육기, 중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애기는 성인사회의 구성원으로 옮겨가는 시기로 주요 과제는 성공적인 구애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혼초기는 결혼한 부부가 각자의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배우자에게 적응해가는 시기로 배우자 및 원가족과의 마찰, 성적 부적응, 배우자의 외도, 수입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양육기는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로 한쪽 배우자가 자녀와 밀착되어 부부의 문제를 아동을 통해 다루거나 자녀양육으로 부부 또는 원가족과의 갈등, 습관적인 의사소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년기에는 남편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나 아내는 자신의 야망이 좌절됨과 함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자녀독립기에는 자녀의 독립으로 부부의 공통요소가 사라져 그동안 유지해온 가족의 안정성이 깨진대거나 부모-자녀관계가 동료관계로 옮겨가지 못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이 축소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상실의 최소화가 필요한 시기이다(Haley, 1986; 김인규, 2009 재인용).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Rodgers와 White가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모델

이 서구의 중산층 핵가족 중심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입양가족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하였다. Carter와 McGoldrick(1988)은 미국의 일반적인 중산층가족들의 생활주기를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신혼부부단계’, ‘어린 자녀를 둔 단계’,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자녀가 집을 떠나는 단계’, ‘노년기 단계’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가 우리나라의 실정과 부적합하여(한경혜 외, 2005) 유영주(1984)는 한국의 도시가족 생활실태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에 적합한 모형을 6단계로 제시하였으며, 박혜인(1985)은 농촌가족의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유영주 외, 2000).

〈표 2-1〉 학자별 가족생애(생활)주기 단계

학자	기준	단계
Sorokin	• 가족구성원 수의 변화	• 신혼부부 단계 • 한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단계 •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는 단계 • 노인부부 단계
Kirkpatrick 외	• 교육제도	• 학령전기 가족 • 학령기 가족 • 고등교육기 가족 • 성인 가족
Bigelow	• 수입과 지출의 재정적 유형 변화 • 자녀들의 교육상황	• 가족형성기 • 자녀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 초등교육기 • 고등교육기 • 대학교육기 • 회복기 • 은퇴기
Hill, Duvall	• 첫 자녀의 발달단계와 은퇴기	• 신혼부부 가족 •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 유아기 가족 • 아동기 가족 • 청년기 가족 • 독립기 가족 • 중년기 가족 • 노년기 가족
Rodgers	• Duvall 8단계를 24단계로 세분화 • 첫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발달단계	• 학령전기~출가기 24단계
Erickson	• 가족생활주기	• 구애기 • 결혼초기 • 자녀양육기 • 중년기 • 자녀독립기 • 노년기
Carter, McGoldrick	• 미국의 일반적인 중산층가족들의 생활주기	•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 신혼부부단계 • 어린 자녀를 둔 단계 •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 자녀가 집을 떠나는 단계 • 노년기 단계
유영주	• 한국의 도시가족 생활 실태	• 형성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교육기 • 자녀성년기 • 자녀결혼기 • 노년기

가족생애주기 단계 구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녀가 많거나 터울이 긴 가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다른 문화권의 가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이론적 비판을 받았다.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자녀의 발달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나 단계구분이 모호해지며, 첫 자녀와 막내자녀의 터울이 길어질수록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구분이 설명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Klein과 White(1993)는 개인, 관계, 집단, 가족제도 등에 기초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나 다양한 순서의 단계를 고려한 설명을 제시하였고, Aldous(1990)는 자녀출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하는 단계로서 결혼을 가족생애주기에서 제외하였다(한경혜 외, 2005). 또한 자녀의 연령단계나 교육단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부모 혹은 조부모의 개별화된 일반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Carter와 McGoldrick(1988)은 가족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가족역동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개념은 가족항상성, 이중구속, 거짓 친밀성, 부모의 연합, 확립되지 못한 세대경계, 불분명한 성별 역할, 가족규칙, 가족신화 등이라고 하였다. 이 중 많은 개념은 개인의 문제행동으로만 가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가족관계나 가족역동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동향을 포함하는 생활주기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혼에 동반된 가족생활주기의 혼란과 그 전후에 일어나는 가족과정이나 재혼에 의해 새로운 가족형성의 문제를 예외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가족과정의 하나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생활주기의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규범적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된 시기에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한경혜 외, 2005). “전이(transition)란 가족이 가족생활주기상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한경혜 외, 2005)”을 의미하며, 각 가족이 단계마다 경험하는 사건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전이는 ‘규범적 적기’를 벗어나거나 ‘규범적 적기’와 ‘규범적 순서’를 모두 벗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들이 독립,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결혼 전의 출산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lein & White, 1996; 한경혜 외,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이론을 반영하여 자녀의 유무와 교육상황을 기준으로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무자녀)’, ‘미취학 자녀기 가족(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자녀기 가족(자녀가 초등학교~고등학교)’,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자녀가 대학생 이상의 성인, 부모가 65세 이전)’, ‘노년기 가족(부모가 65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별 특성

가.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신혼기는 결혼에 의한 가족의 결합을 축으로 하는 시기로서, 결혼은 다른 두 개의 전체 체계의 변화이며 제3의 하위체계 형성을 의미한다(Carter & McGoldrick, 1988; Goldenberg & Goldenberg, 2000; 박태영, 2003 재인용). Duvall(1997)은 신혼부부기는 상호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의 확립, 임신과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 친족망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각각의 가족으로부터 분화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며, 그 결과 새로운 부부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부부는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규칙과 유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독자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부로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간의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각자의 원가족과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혼은 성인 남녀에게 남편, 부인, 사위, 며느리 등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되며, 친인척 관계 속에서의 역할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Klein과 White(2002)는 “가족역할이란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부과

되는 규범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개인적 기대를 반영한다(한경혜 외, 2005 재인용).고 하였다. 가족역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므로 가족형성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부간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한 부부뿐만이 아니라 결혼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성인남녀에게도, 이혼한 성인남녀에게도, 미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성인남녀에게도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갈등은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거나 부부간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자신이 지내온 익숙한 생활방식 또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다른 점을 인정하거나 욕구를 수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부부갈등이 생긴다. 이 시기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경향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가정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원가족과의 분화가 중요하다(Carter & McGoldrick, 1988).

부부간의 새로운 체계 수용과 관련하여 Minuchin, Roseman, Baker(1978)는 결혼한 부부는 부부의 공통적인 삶을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러다임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들은 절충 또는 동의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체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이르게 된다(박태영, 2003).

Bowen(1978)은 부부는 자신들의 부모와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와 융합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원인은 원가족으로부터 불완전하게 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융합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와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왜곡된 의사소통을 야기하게 되고 기능적인 부부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박태영, 2003).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족의 구조는 다른 가족생애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게 된

다. 또한 부부간의 체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배우자간의 역할은 상호교환성이라는 특성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상호독립성 증대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해석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에는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부부 이외의 타인들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부부간에 생기는 사건들을 큰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다.

나. 미취학 자녀기 가족

미취학 자녀기는 첫 아이의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의 시기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응하고 부모와 자녀가 만족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태어난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본 가족주기는 출발한다. 첫 자녀의 출생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추가되고 친족관계도 3세대로 확대된다(한경혜 외, 2005).

또한 자녀의 등장은 가족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부모가 된 부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기를 돌보는 일에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양육의 부담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의 시간사용 패턴, 소비생활, 식생활, 수면시간과 양태, 부부 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가족생활의 초점이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로 전환되며 생활의 우선순위가 자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한경혜 외, 2005).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은 부부 양쪽의 정체감이나 자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아정체감의 원천이 되어 두 세대 간의 결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Carter & McGoldrick, 1988; 박태영, 2003).

가족생활단계에서 자녀가 처음으로 출생하게 되는 이 시기는 성인들에게

는 한 세대 위로 변화되는 것과 향후 젊은 세대를 돌보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부모가 이러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자녀양육책임을 상대 배우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달단계에서 부부는 각자 자신을 더 분화시키고, 친밀감과 상호의존성을 통해 양육능력을 더욱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격과 행동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단계로서 자녀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가족은 자녀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역으로 저해할 수도 있다(Kernberg & Chazan, 1991). 이로 인해 가족을 둘러싼 과제는 자녀의 성장욕구, 자녀의 자립성, 가족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자녀를 가족 안에서 구속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어 자녀가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Carter & McGoldrick, 1988).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어머니는 자녀양육, 아버지는 생계부양과 상보적인 자녀양육이 요구되며, 이 시기에 자녀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단절되기도 한다. 경제위기 발생, 약물중독, 가족해체 등 내·외부적인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보호를 단념하거나 좌절될 경우에는 자녀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이옥주 외, 1996).

한경혜 외(2005)는 본격적인 부모기로서의 전이를 부부가 잘 통과하면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부는 서로를 자녀의 부(父)와 모(母)로서 존중하고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기쁨과 보람을 공유하게 되며, 부모전이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이전 시기에 형성된 부부간 동료애, 친밀감, 의사소통, 갈등관리 전략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하였다.

다. 취학 자녀기 가족

취학 자녀기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단계로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과정이 시작된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일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내의 자녀에 대한 규범과 부모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자녀들은 사고능력이 향상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요과제는 부모-자녀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즉, 자립과 책임과 통제라는 제각기 다른 세 부분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부모는 장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특히 십대의 자녀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립과 의존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가족갈등과 불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구조·기능적인 특성은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인 강요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을 서로 체득하도록 하며, 부모가 선호하는 교육방식의 강요나 자녀의 교우관계 간섭 등은 지양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자녀양육·교육방식과 의사소통방식을 조정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도록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의 경계가 점차로 유연해지며 가족경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체계는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부의 역할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Carter & McGoldrick, 1988). 또한 자녀양육을 위해 집에 있던 어머니는 다시 새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며, 집중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녀양육 및 교육과정에서 자아성취와 관련한 내적갈등을 경험하며, 결혼생활만족도와 관련한 갈등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의 발생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만족 또는 불만족을 나타내는 배우자는 결혼생활을 재정립하거나 이혼, 별거를 결정하기도 한다.

라.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성인 단계로서 부모는 65세 미만의 연령이 해당된다. 자녀가 가정에 필연적으로 소속되지 않는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며, 심리적·물리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외부 세계에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Carter & McGoldrick, 1988). 발달적 관점에서 중년기는 자녀양육기가 끝나고, 성장한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녀 결혼으로 인해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유입되고, 배우자 또는 조부모들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시기이다(박태영, 2003; 한경혜 외, 2005).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는 부모-자녀체계에서 부부체계로서의 친밀한 협력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자녀가 자립한 성인이 되면서 어른과 어른이라는 평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는 독립, 취업, 결혼과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 구성 등의 새로운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며, 부모는 은퇴, 조부모로 위치가 전환된다. 중년기의 부모들은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의 활동을 발견하고자 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줄어들게 된다(박태영, 2003).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중년기의 부부에게 새로운 활동영역에 참여하거나 역할을 담당하면서 부부관계를 강화하거나 확장해 가는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단계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해체감, 공허감, 상실감, 우울증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정현숙 외(2002)는 부부가 자녀를 통해 연결되어 왔으나,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거나 집을 떠나면 부부가 함께 대화하거나 흥미를 나타낼 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한경혜 외, 2005). 특히 여성의 경우, 주양육자로

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대부분 완료하고 장년기 단계에서 발생한 자아정체감에 대한 공허함과 우울증이 심화될 수 있는 단계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주생계부양자로서 은퇴와 함께 사회생활에 대한 무기력감과 자신감 상실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마. 노년기 가족

노년기는 마지막 발달단계로 부부가 65세 이상인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노년기 단계에서는 부부는 3세대의 조부모가 되어 부부 둘만 남게 되어 그들에게는 새로운 관심이나 사회생활을 만들어갈 필요가 생겨난다. 반면, 자녀세대, 손자녀세대 등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게 되고, 본인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를 하는 시기이다. 동시에 중간세대가 가족 속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부모세대는 지금까지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신체는 노화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운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경제적인 능력도 저하된다. 노화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커지고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형제·자매나 친구,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Carter & McGoldrick, 1988). 이처럼 노년기에는 주로 건강문제,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문제,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 부양의 문제, 거취의 문제, 경제적 의존 문제,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감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Goldin & Mohr, 2000).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노년기의 재정적인 불안감이나 자녀에 대한 의존의 염려가 커지며, 노후보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노년기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형제·자매·친인척·친구 등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상실감은 확대된다. 특히 배우자의 죽음은 심리·정서적인 상실감과 공허함을 심화시킨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

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의 기능적 장애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능저하와 상실경험을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가 재조정되거나 노년세대 가족구성원이 최대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내·외의 지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및 대응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족생애주기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가족관계나 역할, 생활구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가족발달적 접근의 한 형태(유영수 외, 1993; 이영분과 양심영, 1999 재인용)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회지표(김영모, 1965; 이영분과 양심영, 1999 재인용)로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중요한 역할 전이와 발생하는 문제의 가능성 및 잠재성을 예측하게 해준다(Aldous, 1978; Duvall, 1971; 이영분과 양심영, 1999 재인용).

본 연구의 핵심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체 가족생애주기와 각 주기별로 어떠한 위기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가족단계별 다양한 위기 유형과 위기대응 욕구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생애주기적 관점을 적용하여 경제위기 하에서 발생하는 가족위기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우리나라의 가족생애주기의 변화는 선진 서구의 수백 년에 걸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의 단기간에 이룩하였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의 가족생애주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에서부터 자녀출산 완료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가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을 저하로 인하여 매우 단축되고 있다. 이

러한 분석은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 템포가 빨라져 가족형성기가 단축되고 결혼 후 평균 1년 이내에 신혼부부에서 부모기로 전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분과 양심영, 1999; 한경혜 외, 2005). 또한 자녀 출산완료 이후 자녀 결혼이 시작될 때까지의 자녀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하는 가족확대완료기와 자녀 결혼완료 이후 부부 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축소완료 및 가족해체기는 길어지고 있다(이영분과 양심영, 1999).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인하여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높아졌고, 이에 따라 첫째 아이의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하는 자녀의 수도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인 자녀양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축소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으며, 부모-자녀세대가 함께 생존하는 기간이 크게 연장되었다(한경혜 외, 2005).

다양한 가족유형과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전효정, 2007),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 가족특성(결혼적응도, 스트레스 대처)이 낮아지며, 신혼기, 유아자녀가 있는 가족, 성인자녀가 있는 가족은 결혼적응도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중심 시기일 때 결혼적응도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노년가 가족은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2. 가족형성의 지연 및 가족해체

송혜림 외(2009)는 경제위기로 청년실업,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결혼 준비자금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것 또한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2008년도 결혼 건수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표 2-2 참조), 출산율은 더 감소하였다(표 2-3 참조). 또한 경제위기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쳐,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이라는 개별가정의 기능의 혼란과 왜곡, 자원 배분에 대한 갈등, 세대 문제, 남녀 문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송혜림 외, 2009).

〈표 2-2〉 혼인유형별 혼인건수

(단위: 천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자료: 통계청, 「2008 혼인통계」, 2009.

〈표 2-3〉 합계출산율

(단위: 명)

1970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4.530	2.820	1.570	1.467	1.166	1.154	1.123	1.19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가족해체는 이혼, 폭력, 가족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제은(2003)은 IMF 이후 경제문제로 인한 성인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즉, 이혼이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한 북미에서도 이혼 예방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해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오제은, 2003).

김승권(2001) 역시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 하에서 구성원의 생활과 관계를 통제해왔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의 기본 골격이 흔들리면서 가족의 기능 약화와 역할 상실, 가족 구성원간 갈등증대, 심지어는 이혼·별거, 자살 등의 가족해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진미정(2009)은 19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의 실직,

고용불안정, 가계채무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족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이혼의 증가, 유기아동의 증가, 가족폭력과 아동학대 증가, 가족동반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초혼연령 상승, 혼인을 감소, 이혼율 증가, 출산율 하락 등 가족인구학적 지표들이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음을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의 누적으로 인해 부부불안정성과 결혼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며, 이혼율이 증대되고, 유기 아동 및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백진아, 2001). 송혜림(2009)은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3~4년 동안 이혼율이 늘어났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경제 위기가 가족 간 갈등과 불화 등 가족관계의 악화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경제 위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유기와 방치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가족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실업 상태일수록, 아내가 취업 중일수록 가족의 해체가능성이 높고, 아내의 권력이 남편보다 크다고 지각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이나 별거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인숙과 안병철, 2000). 한편, 실직가정일수록, 서민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에서 경제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성, 2001).

특히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가정은 고용불안정과 고용불확실성, 부인의 취업상태, 경제적 궁핍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적 궁핍 및 중압감이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병철, 1999). 따라서 실직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긴급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정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실직가족의 세대간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실업가족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현송, 1999). 경제적 결핍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족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가족의 불안정성과 가족해체를 높이게 됨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가정이 증가하고, 특히 30~40대 가정의 가족은 돌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부모의 부양으로 인하여 지출이 많은 주기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위기가 더욱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30~40대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짐작할 수 있다(송혜림 외, 2009 재인용).

3. 가정 내 성역할 갈등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문제는 주로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남게 되어 남성 가장이 실직을 하면 여성들과 가족구성원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은 가계부양이 책임 역할이 부가되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부담이 가중된다(백진아, 2001). 그러나 여성의 직업활동은 공격성, 경쟁성, 지배성을 조장하고, 지배적이고 싶어하는 남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역할의 분배는 자이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때문에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김혜선, 1976; 이은희, 2000 재인용).

외국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부부갈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발생시 경제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데, 취업주부는 직업적인 역할과 함께 주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초조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Feld, 1963).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증가에 따라 많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통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병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역할증가와 역할기대의 불일치로부터 초래되는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은 이들 부부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였다(Guelzow, Bird, & Koball, 1991).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이듯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생활주기의 맞벌이 부부들이 다른 주기의 맞벌이 부부들보다 유의미하게 보다 많은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 & Ford, 1985, Holmstorm, 1973; Rapoport, 1976; Voydanoff & Kelly, 1984; 이순형, 1991; 이은희, 2000 재인용).

특히 결혼초기에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일과 가정일의 병행에 따른 최소한의 역할긴장이 나타나지만, 자녀의 출생으로 기존의 역할에 부모역할이 더해지면 만족스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역할과중과 상호역할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은희(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신혼기 단계에서 맞벌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출산을 지연한다고 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 더 빈번하게 역할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의 수가 많아도 맞벌이 부부의 역할과중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남편들은 재정공급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형성단계에서는 경제활동, 양육과 관련한 역할 부담을 가정이 아닌 사회단위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송혜림 외(2009)는 2008년 이후 경제 위기로 취약해 진 가계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 여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침체된 고용시장은 구직 여성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소지가 크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평소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차별이 경제위기 속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여성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에 들어가기·나오기를 반복하여 이전보다 더 심화된 고용의 불안정성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가계경제에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며, 동시에 구직·취업·실직을 반복하는 기혼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가정의 공동화와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실직가정 및 빈곤가족의 증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계는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생활경험과 함께 가족원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 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재정적 요구가 달라진다(백은영과 문숙재, 2005).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충격을 가장 크고 빠르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빈곤가족이며, 이들은 가족생애단계에 따른 재정적 요구와 상관없이 긴급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정진성(2001)의 조사결과에서도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실업자가 발생한 가족 또는 저소득계층에서 더 심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족의 구조적 해체는 기능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외적인 지원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인숙, 1999).

5. 중산층의 붕괴

백진아(2001)는 IMF 이후 경제위기는 가계소득 감소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였다. 또한 중산층 가족들(4인 기준)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계지출이 감소되었으며, 부부불안정성과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갈등이 첨예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송혜림 외(2009)가 지적한 2008년 이후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발생한 금융시장의 불안정화, 수출 악화, 내수 침체 등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개별가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9년 현재의 경제위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 가족 역시 10년 전과는 다른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집단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가족인 위기직면가족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동시에 위기직면가족이 실제 위기가족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였다. 중하층에 속하는 가족을 위기직면가족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며 보유 자산이 많지 않아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복원력이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연계되므로 소위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하향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에서는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표적 집단이라고 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제도 상, 위기직면가족에게 실직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여유로운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여가, 주택마련 등에 접하며 평균치에 가까운 일상적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할 적응력이 크지 않고, 또한 포기해야 하는 삶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결핍감, 준거집단과의 괴리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빈곤과 폭력, 유기, 학대 등 문제가 발생한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해 온 정책의 패러다임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일단 빈곤층이 된 가정이 다시 일반 가정, 중산층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장기화되는 경제적 위기 속에 노동의 기회는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노인과 아동 등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취약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6. 가족의 경제위기 대응방식

IMF에 대한 가족의 대응양식에 대한 연구결과(박영희, 2004), 개별 가족이 처한 계층적 기반에 따른 보유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동일한 계층적 기반을 공유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 부부 및 가족관계의 특성, 가족주기 등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의 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가족전략으로는 지출최소화, 가족구조 조정, 가족주의 강화, 생활양식 등의 변화 등이 나타났고, 해체적 위기로는 이혼, 가족노숙자 발생, 가족유기, 자살, 생계형 범죄, 기타부적응과 폭력 현상들이 있으며, 이는 하류, 중류, 상류층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여전히 가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결속력 강화, 탄력성(Resilience) 강화 등 개별가족이 갖는 강점의 활용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일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백진아, 2001). 경제위기 하에서 전통적인 친족관계가 사회 복지 및 보험제도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직가족(27.0%)이 비실직가족(11.6%)보다 친족 및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평소에도 친족간의 상호부조 관계가 지속되나 실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정진성, 2001).

김경희(2001)는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와 가족 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인적자원의 취약성, 불평등한 노동시장, 가족 내에서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공공성, 비공식적 지원망, 그리고 주거문제의 해결 등이 고려되어야만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특수성 및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시사점

가족위기와 관련하여 가족생애주기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애주기를 적용한 맞춤형 가족위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생애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단위이며 특유의 단계와 전이를 가진 가족 개개인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가족의 주기 상에 나타나는 각 상황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장단점을 시간적 차원과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가족정책은 능동적 복지정책으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연구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가족위기와 관련한 연구들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는 가족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주체로서의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셋째,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방안으로서 가족의 역량 및 탄력성(Resilience) 강화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현 가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가족의 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가족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 모색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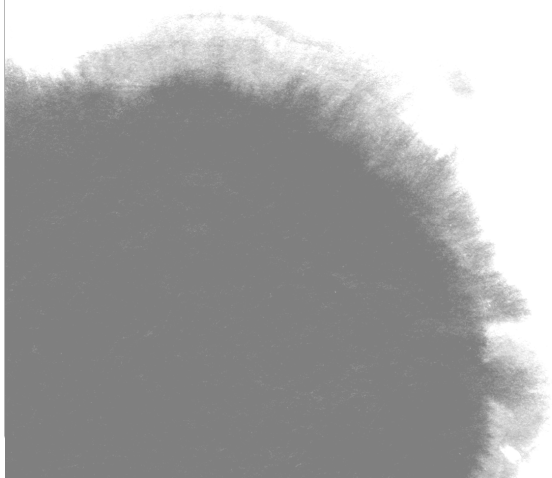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넷째, 중산층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기가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의 위기와 해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을 파악하고 통합·예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족의 초점은 경제적 위기와 관련성이므로 실직기간, 최근 2년간 가계소득 감소하거나 계층이 하락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조직 및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위기로 인

하여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여성가장의 증가로 인한 돌봄기능(자녀, 노인 등)의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자녀 유기 및 방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03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제3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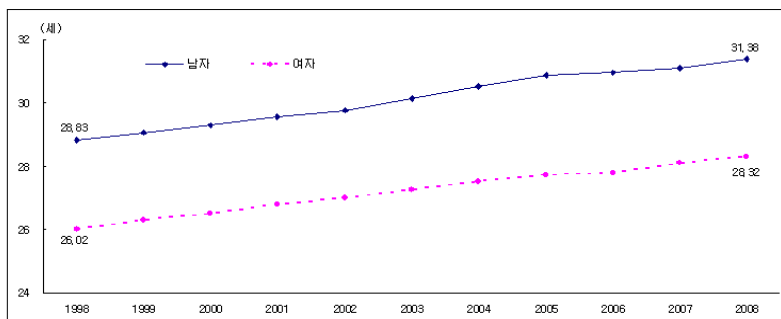
제1 절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가족이 각 가족생애주기별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⁸⁾은 다음과 같다.

1.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부모기로의 전이가 빨라져 가족형성기가 단축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형성기의 단축은 결혼 후 부부간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기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가족생활 유지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결혼 후 3년 이내의 이혼율이 높은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한경혜 외, 2006 재인용).

[그림 3-1] 성별에 따른 초혼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 「2008 혼인통계」, 2009.

8)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를 인용함.

동 시기는 초기 가족형성으로 인해 부부간 적응이 우선적인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족으로 부터 독립하여 배우자와 새로운 애정관계 및 친밀감을 발달시키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이나 이해방식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는 각자의 가족 내에서 형성되었던 개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암묵적 규칙, 습관, 언어·비언어적 전달양식 등을 상호간 적응을 위해 새롭게 발달시켜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족형성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과 가정 내의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분담에 대한 발달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은 일과 가정을 분리시켜 주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전업주부로,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과 가족부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생계부양자로 사적 가부장제⁹⁾ 체제가 구조화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고 이중 역할부담으로 연결된다. 여성에게 역할과중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신혼기에 이루어지는 과업 중 하나는 자녀, 일과 가족의 양립,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이다. 따라서 부부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녀에 대한 공유된 목표와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일과 양육에 대한 우선순위와 부부간 분담, 단계별 재정계획·분배·관리에 대한 철저한 목표 수립과 부부간 공유가 수행되어야 한다.

2. 미취학 자녀기 가족

미취학 자녀기의 발달과업은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9) 가구생산에 기반을 두며,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남(Walby, 1998).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일과 가사의 업무 부담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하므로 자녀양육과 가사·근로 활동에 대한 가족내 역할 분담과 상호 지지가 필수적이다.

발달과업 중에서 일의 부담은 가족형성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생긴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자녀양육만을 담당할지라도 출산 후 산후조리과정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집안일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심적·육체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녀양육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가정내 성별 역할 분담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되면, 이는 곧 가족갈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동 시기에는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역할 분담, 경제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 등 부부간에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업무 부담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3. 취학 자녀기 가족

자녀교육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시작은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교육·학습, 청소년 자녀의 자아감 발달 등이 있다.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학교 적응·학교생활, 선생님과 관계, 또래관계, 학습 적응-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자녀가 단체생활에서 필요한 규칙, 규칙, 역할수행을 배우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예·복습을 통해 학습내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선생님 및 또래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은 자녀의 행동, 정서, 발달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게 되어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가 낮아지거나, 가족구성원간 위기 및 갈등, 폭력, 가족해체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지 못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와의 밀착된 신뢰를 통해 자녀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가족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 균형 잡힌 통제와 애정이 전제된 자녀양육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학교 적응과 사회화 발달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변화와 성숙, 자아정체감 발달, 독립적인 가치관 형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부모의 발달 과업은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부모가 본인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모는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자녀의 심리적·물리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자녀의 결혼이 주요 사건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존 및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전·출입이 잦아진다. 또한 자녀 양육이 거의 완료되어 부모-자녀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새롭게 부각이 되어 부부를 중심으로 삶의 계획이 재정립된다.

자녀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던 부부는 자녀 양육의 종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된다. 또한 부부만의 자유와 독립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부부 중심의 거주환경, 건강대책, 노후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부부가 함께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쉬면서 집안일을 하는 등의 공동의 활동과 각자 취향대로 즐기고 몰두할 수 있는 독립된 취미생활이나 관심사가 늘어나게 된다.

은퇴를 통해 남편의 활동이 가정 안으로 좁혀지고 부인은 가정 밖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게 되어 부부간에 상호보충적인 역할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가정 안팎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자녀에 떠나는 것에 대해 공허함, 은퇴 후의 상실감 무능력함, 자녀에 대한 의존 또는 사망에 대처 등 다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

5. 노년기 가족

노년기는 신체·정신적 기능이 약화되고,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게 되는 시기로서 주요 발달과업은 경제적인 대책 마련, 정신적·육체적 건강 유지, 거주환경 선택, 새 생활방식 시도, 부부관계 유지개선, 친인척과의 유대감 발전, 죽음의 수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계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노년기 경제대책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체적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이므로 건강에 대한 경제적 대책을 세워두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 선택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년기 적응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특히 노인 자살이 급증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건강이 유지되도록 긍정적이고 밝은 생활태도를 갖고, 친구와 가족, 친인척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도록 한다.

노년기의 부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동반자로서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배우자를 통한 지지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배우자의 죽음이 그 어느 시기보다 막대한 충격과 상처, 슬픔을 야기한다. 스스로 본인, 배우자, 가족, 친구, 지인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2절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환경의 변화와 가족위기의 발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 및 가족위기

발달과업		가족위기
•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형성, 의사소통, 일의 분담, 장기계획 및 관리	경제 위기 발생 →	• 신혼 및 자녀출산기: 자녀출산 지연, 부부갈등, 부채 부담
• 미취학 자녀기: 자녀양육 및 일의 분담		• 미취학 자녀기: 양육비용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문제
• 취학 자녀기: 학교적응, 교육·학습지원, 청소년 자아정체감 향상		• 취학 자녀기: 교육비용 부담, 자녀와의 갈등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자녀의 완전한 독립, 부부체계로의 전환, 노년 준비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지연, 중년 일자리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 노년기: 노후대책, 거주환경 선택, 부부·가족 유대관계 증진, 죽음의 수용		• 노년기: 노년빈곤, 경제적 자원 부담,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

1.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가족

경제위기는 초혼 연령 상승을 가속화시켜 가족형성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정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므로 자녀 출산을

자연하고 있다. 즉, 장기 가정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초혼 연령의 증가, 출산 연령의 증가, 평균 자녀수 감소, 자녀출산기간의 축소로까지 연결된다.

물론 초혼연령의 상승은 30~34세의 미혼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가 청년실업,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결혼준비자금 마련이 더 힘들어져 결혼을 미루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 가족형성기에 상호간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온전히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소한 생활방식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까지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화방식, 성생활, 자녀 가치관, 자녀양육방식, 자금관리, 소비성향, 위기관리 대응방식 등에 대해 서로가 수용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부부간의 위기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이라는 가족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는 모든 가족 주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 초기에 일과 가사에 대한 부부의 불평등한 분담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미취학 자녀기 가족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출의 증가는 경제위기 하에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소득의 보완을 위해 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맞벌이 부부는 특히 가족 내에서의 업무 분담이 반드시 조정되고 협의되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정내 성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부 합의하에 맞벌이를 결정한 경우, 자녀의 보육방식을 결정하고, 보육시설 또는 대리양육자를 구하는 일은 동 시기의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보육방식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의 가정생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양육 문제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안정을 잃고 맞벌이가 큰 부담과 부부간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퇴근 후 및 주말에의 가사 및 자녀양육 역할 분담, 자녀를 맡기고 찾아오는 역할 분담, 자녀양육비용 부담 방식 등이 협의되어야 한다.

3. 취학 자녀기 가족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여 미취학기부터 사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취학 자녀기 단계의 가족생활은 자녀의 교육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다. 가계 전체 생활비에서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하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가정 내에 자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투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모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엄청난 교육열과 학벌위주의 경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를 점점 더 증대시키고 있다.

경제위기라는 부정적인 상황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이나 사회화 발달보다는 가계 경제의 안정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가족내 갈등요인과 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진지한 방식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의사소통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족관계에 부적응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경제적 위기의 발생은 새로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간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체계를 지연시킨다. 자녀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독립하기보다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역할을 역으로 감당하게 된다. 부모가 더 이상 생계부양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생계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녀의 독립은 그 시기가 다소 지연된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의 완전한 독립이 어려워진다. 반면, 자녀가 취업을 통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함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동시에 부모들은 자신의 중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해진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허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정체나 가족간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가족구성원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외에도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5. 노년기 가족

일반적인 부부 중심의 중산층 노년기에서는 본인, 부부, 자녀, 친인척,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노년기 발달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존에 마련한 경제적인 대책이 모두 포기되거나, 경제 대책 자체를 세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일차적으로 가족의 지지가 없을 경우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지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기 빈곤을 맞이하게 되어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만족할만한 거주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거주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부부 또는 가족, 친인척과의 유대관계도 단절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갈등 또는 가족해체로 인해 지지 기반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위험도 있다.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노년기에는 발달과업을 가장 취약하게 수행하게 될 확률이 높다.

제3절 시사점

가족이 각 가족생애주기별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¹⁰⁾을 경제위기로 인하여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위기의 발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위기는 각 가족생애주기 단계의 발달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가정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미쳐 특정 발달단계에서 발달과업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체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발달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 내 위기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해당 가족주기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발달과업이 단순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족가치관에 대한 변화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각 가족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도 존재하나, 특정 문제들은 전 주기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족주기와 위기대응 자원에 따라 야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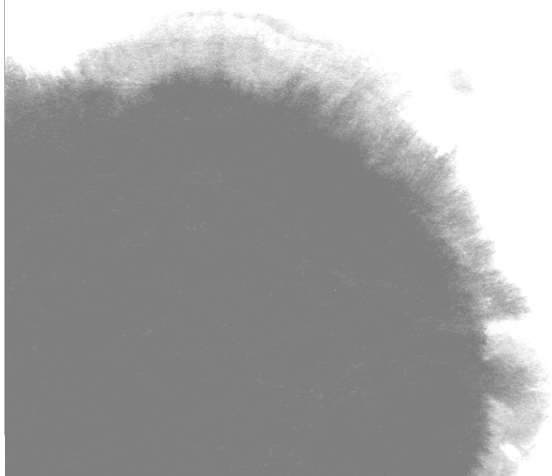
10)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를 인용함.

는 문제점이나 대응방식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다. 즉, 가족갈등이나 가족 해체의 위험요인인 이혼, 폭력, 자살 등은 어느 시기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의 응집력, 친밀도, 부부간 유대관계, 부모-자녀간 신뢰도 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기능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 위기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과업수행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론 검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가족생애주기 이론은 일반적으로 부부중심의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발달과업이 전개되고 있어 한부모가정, 무자녀가정, 재혼가정 등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실례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부담을 언제나 안고 있는 것이다.

04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제4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본 장에서는 가족생애주기별로 도출된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가족위기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1 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

1. 전체 가족생애주기의 가족위기와 정책

가. 관련 법

경제위기는 가족간 갈등과 의사소통 장애 등을 야기하고, 이는 가정폭력, 이혼,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진다. 가족해체는 여성가장의 빈곤화, 아동유기 및 방임의 우려, 조손가족의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차원에서 해체위기를 맞은 가족 또는 개인을 예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족구조의 해체위기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지원의 근거 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다(부표 3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에 자녀양육을 위한 수당지급, 부(父) 혹은 모(母)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정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은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 남녀 평등적 문화 확산 등으로 이혼 관련 「민법」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 일부 개정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동 법 제836조의 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지급 등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이혼 전에 자녀양육에 대해 부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이 결정된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이혼조정이 내실화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혼의사가 확정된 경우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은 이혼예방과 이혼 후 개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해체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건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이혼가정 혹은 이혼위기가정의 18세 미만 자녀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한 아동은 즉각 보호조치를 위해 연고자를 발굴하거나 생활시설로 인도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 전·후로 아동이 방임되거나 유기, 혹은 폭력의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법적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고를 통해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안은 「민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부표 4 참조).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 부부강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폭력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다수의 사건들은 약자인 아동,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부부간의 폭력은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자 및 피해가정의 보호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법안이며,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의무자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설치하고, 외국인 여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 받은 기관의 역할, 피해자 및 관련 시설이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조치와 폭력재발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아동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규정과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설치와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와 양육비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차선자, 2005; 2006)’는 움직임 속에서 자녀 의무부양 집행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성미애, 장윤희,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가족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이혼 전·후 상담, 이혼양육협의서 작성 등 이혼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사업평가(라휘문 외, 2007)에 의하면,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 전·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통사업으로 이혼 전·후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혼 전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 수가 이혼 후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위기가족지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체적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혼 전·후 상담을 계속적으로 무료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센터들이 이혼 후 적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 위기가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담인력을 배치시켜 운영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전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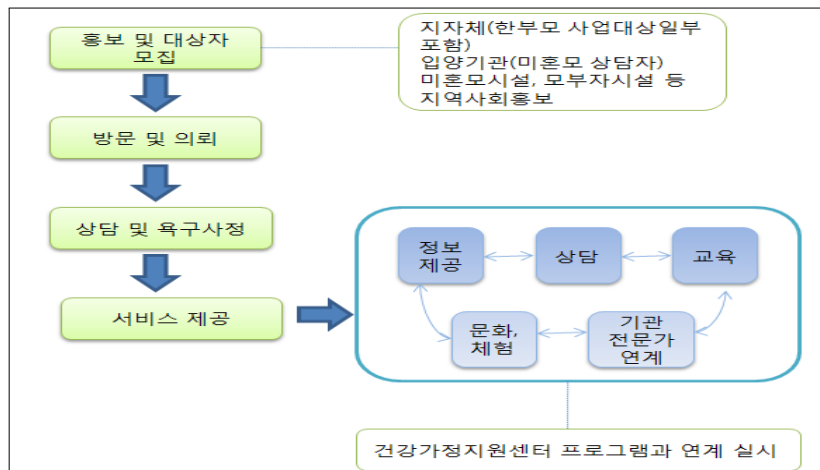
번호	상담개입시기(명)		번호	상담개입시기(명)		번호	상담개입시기(명)		번호	상담개입시기(명)	
	이혼전	이혼후		이혼전	이혼후		이혼전	이혼후		이혼전	이혼후
1	53	9	11	176	11	21	11	32	31	173	10
2	243	9	12	55	0	22	18	4	32	27	3
3	17	4	13	24	5	23	39	22	33	176	96
4	31	17	14	204	136	24	76	15	34	39	30
5	32	5	15	201	31	25	23	36	35	33	6
6	134	6	16	2	0	26	88	0	36	138	22
7	60	19	17	42	2	27	79	66	37	314	23
8	56	0	18	0	0	28	247	154	38	43	0
9	85	38	19	38	82	29	904	53	39	15	68
10	213	12	20	1,061	56	30	23	22	40	486	112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는 소외계층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은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가족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림 4-1]과 같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재가 미혼모(부)를 위한 위기관련 정보 제공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출산·양육시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시 아이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운영으로 자립의 경험을 논의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다.

[그림 4-1] 2009년 미혼모·부 가족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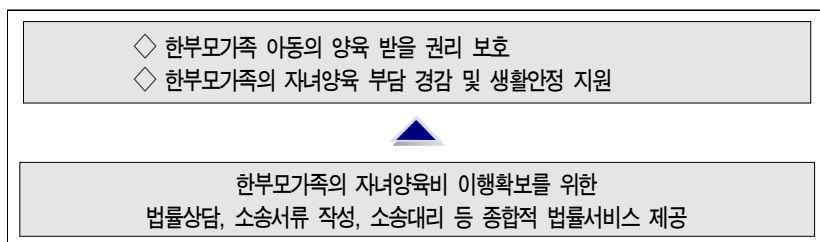


‘한부모가족의 통합지원서비스’는 한부모가정의 심리적·사회적·생활적 지원을 위해 지역내 관련복지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모·부자가정 상담·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개별 가족단위로 진행되는 사례관리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간접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의 자활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조정, 지역통합 사례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30%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 및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10세 미만의 아동은 월 5만원, 고교생의 경우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가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창업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2] 2009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목표



한편,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노인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제도는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 예방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으로 아동학대 사전예방교육, 현장조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2008년 6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아동보호기관은 2000년 17개소에서 2008년도 44개소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확충시키고 있으며, 실종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아동찾기센터를 개소하여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82콜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역 상담(8개 국어)과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해 쉼터(외국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를 2008년 4개소에서 2009년 18개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본국으로의 송환 희망을 대비하여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마련하여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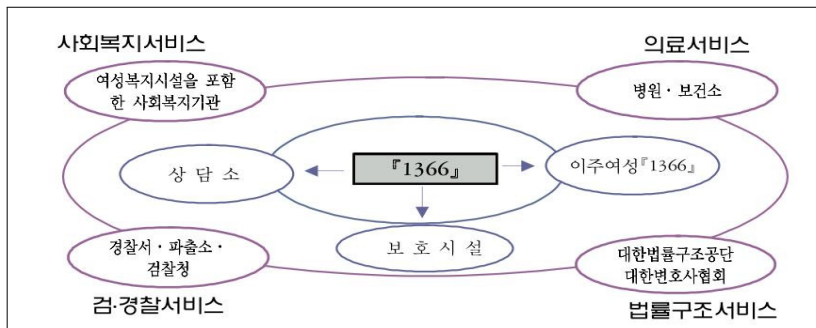
2) 여성부

여성정책발전계획안을 통해 여성가장신규고용장려금(여성가장실업자를 채용한 경우 6개월간 60만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의 여성가구주, 재취업 희망 여성, 유휴고령 여성 등이다. ‘여성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 또는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능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가정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인권보호 팀에서 관련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시·군·구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무료 법률구조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가정폭력 one-stop,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 전화 서비스, 긴급피난처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예방과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그림 4-3]과 같다. 가정폭력사건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이주여성은 이주여성 전담상담기관 및 상담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보내진다. 또한 개입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검찰 및 경찰서,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거처가 없거나 불안정한 거처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쉼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4-3] 가정폭력 네트워크 시스템



자료: 여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08.

3) 기타 부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혼가정(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의 우선 입주를 제공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한부모가정 및 해체적 위기가족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

용을 상승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성급한 이혼의 예방과 이혼 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올 10월부터 이혼한 부부가 법원의 자녀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담보 제공을 기피하는 양육비 부담자를 위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역시 마련하여 양육비 부담 의무의 불이행을 제한하고 있다(한국뉴스 2009. 4. 21).

2.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위기와 정책

가. 관련 법

결혼은 가족생애주기 상으로 보았을 때 2인 이상의 가정을 구성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현재 국내 혼인율은 만혼현상과 결혼기피현상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조희금 외, 2008). WHO의 ‘세계보건통계 2009’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현재 1.2명이며, 몇 년 전에 비해 조금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93개 국가 중 가장 하위권에 있었다. 이러한 비율이 지속될 경우 경제를 이끌어 갈 생산가능인구수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족형성기에 해당하는 출산과 결혼에 관련된 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을 들 수 있다(부표 1 참조).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편화시키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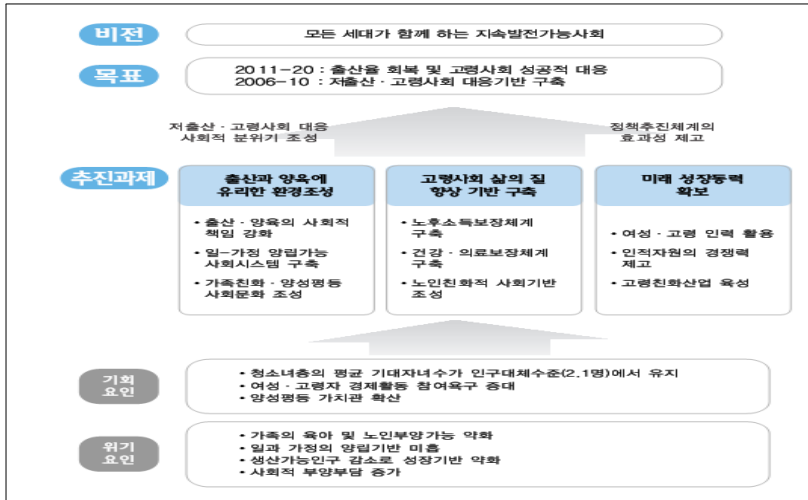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가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기관의 설치 및 위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결혼기피현상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불임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성 기념일을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법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는 건강검진상의 이유 혹은 출산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산 혹은 사산한 임부를 위한 보호조치안도 제시하여 취업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2006년 8월에 새로마지 중장기 플랜이 발표되었다. ‘새로마지플랜 2010’의 시행을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이 공동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림 4-4] 새로마지플랜 2010



주: 새로마지 플랜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을 통해(2008. 12) ‘2009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이 발표된. 2008년에 비해 29.7%의 총 투자규모(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지원)를 증가하여 총 218개의 신규과제를 통해 저출산을 예방하고자 한 것임.

1) 보건복지가족부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비자발적 불임부부인 난임부부를 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전검사료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자녀보육료를 차등지원하기 위해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 100여개 이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 및 건강한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방지와 관련된 예방적 특성을 갖고 있다(표 4-2 참조). 또한 ‘생애전환 가족교육’을 실시를 실시하여 가족형성기의 가족문제예방과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생애주기별 시민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가족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가칭 ‘e-family’ 구축(생애주기별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정법률교육과 가족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구분	공통사업	선택사업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신혼기부부 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 자녀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등 기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상담	가족상담, 이혼 전·후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자녀문제상담, 상담봉사자 양성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찾아가는 아버지교육 포함)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 축제, 지역 내 이웃간의 나누기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공동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놀토·임시휴교·방학 중 가족돌봄지원 사업	가족봉사단 멘토·멘티, 가정봉사원 파견 등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및 연계사업	중앙 협약기관과의 연계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2009.

또한 ‘부채클리닉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시범사업, 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MOU), 민관공동 저소득금융소외자 지원 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기타 부처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병사 대상의 결혼·출산·육아관련 교육확대를, 농림부는 농촌지역 취학 전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한 양육비 지급 등 부처별로 다각적인 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3. 미취학 자녀기 가족위기와 정책

가. 관련 법

경제위기 하의 부부를 포함한 미취학 자녀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법은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되며,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으로 자녀양육 관련내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육아부담의 경감을 위한 법 안들이라 할 수 있다(부표 2 참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정이 돌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과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와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특히 국·공립보

육시설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권고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국가의 지원과 보육시설의 우선이용권을 부여하거나, 가계 경제력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대상이 6세 미만 취학전 아동과 그 양육자로 한정되어 있어 돌봄지원에 대한 보편성이 낮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을 단행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2008년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의 ‘경력단절여성 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 법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 여성이 사회로 재진입하고,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의 수준으로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돌봄 관련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통합지원망의 구축, 일·가정 양립의 추진 및 다양한 자녀돌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현재 시설을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지원은 현재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육시설이 운영비·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보육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시설의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모의 선택권은 제한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바우처 방식의 지원으로 지불·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실태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오·남용, 공공재정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¹¹⁾.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5개 영역의 19개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차상위 이하, 5세아, 장애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전체 영유아 283만명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인 126만명(44%)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요자 욕구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정 영유아, 장애아동, 저소득층 아동,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인증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는 평가 인증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보육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

11)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7. 12. 4.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한 가칭 ‘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보육시설의 건강, 영양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보육의 공공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중장기 보육발전인 ‘아이 사랑플랜’을 마련하였는데, 2006년 수립된 제1차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09)’을 저출산 심화, 보육수요 다양화 등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으로 국가책임제 보육, 수요자 중심의 철학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사랑플랜’은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추진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양육수당, 보육전자바우처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4-5] 아이사랑플랜 추진방향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외에도 <표 4-3>과 같이 가정보육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통합적으로 제시, 다문화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7월에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을 개편하였다.

〈표 4-3〉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만원)

소득수준 \ 가족 수	지원율 ¹⁾	3인	4인	5인	6인 ²⁾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주: 1) 지원율: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산정; 2) 7인 이상은 가족 수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 2009.

일·가정 양립과 아동발달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시설 이용 관련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육아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수준은 조금씩 경감되었으나, 지원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설 이용 영유아의 약 80%가 다양한 형태의 비용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나, 간접지원 방식으로 인해 부모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서지원, 2007).

돌봄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양육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족돌봄통합지원망’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내 ‘품앗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여 보육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과 함께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가사를 제외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8년 1월에서 11월까지 총 336,713명의 아동(27,392가구)에게 248,97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2,511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성되어 유휴인력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하반기에 예비비 11억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100개 이상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의 탄력성(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내 남성 직장인과 학교의 남성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4-4〉 육아지원시설 이용 관련 예산 지원 현황

연도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단위: 억원)		육아지원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여성가족부, 단위: 백만원)		유치원관련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단위: 억원)	
	소요액	산출근거	소요액	산출근거	소요액	산출근거
2006	4,384	차등보육료:2,716 만5세 무상보육료:1,284 두자녀 이상 보육료:91 장애아 무상보육료:246 입양아 무상보육료:10	50,741	국공립:15,048 장애아전담:1,806 중개촉:20,979 개보수:12,000 장비비:909	2,008	만3,4세 교육비 지원:775 만5세 무상교육비:1.168 두자녀 교육비 지원:29 장애아 무상교육:32 입양아 무상교육:4
2007	6,301	차등보육료:3,777 만5세 무상보육료:1,554 두자녀 이상 보육료:161 장애아 무상보육료:792 입양아 무상보육료:17	54,320	국공립:16,553 장애아전담:1,986 중개촉:22,132 개보수:12,600 장비비:1,050	2,441	만3,4세 교육비 지원:703 만5세 무상교육비:1,640 두자녀 교육비 지원:47 장애아 무상교육:47 입양아 무상교육:4
2008	7,085	차등보육료:4,585 만5세 무상보육료:1,387 두자녀 이상 보육료:166 장애아 무상보육료:924 입양아 무상보육료:23	57,037	국공립:17,380 장애아전담:2,086 중개촉:23,238 개보수:13,230 장비비:1,103	2,582	만3,4세 교육비 지원:808 만5세 무상교육비:1.658 두자녀 교육비 지원:49 장애아 무상교육:62 입양아 무상교육:5
2009	8,219	차등보육료:5,238 만5세 무상보육료:1,623 두자녀 이상 보육료:227 장애아 무상보육료:1,107 입양아 무상보육료:24	59,889	국공립:18,249 장애아전담:2,190 중개촉:24,400 개보수:13,892 장비비:1,158	2,967	만3,4세 교육비 지원:872 만5세 무상교육비:1.937 두자녀 교육비 지원:74 장애아 무상교육:79 입양아 무상교육:5
2010	8,576	차등보육료:5,395 만5세 무상보육료:1,661 두자녀 이상 보육료:235 장애아 무상보육료:1,260 입양아 무상보육료:24	62,900	국공립:19,150 장애아전담:2,245 중개촉:25,713 개보수:14,400 장비비:1,216	3,053	만3,4세 교육비 지원:895 만5세 무상교육비:1.978 두자녀 교육비 지원:77 장애아 무상교육:98 입양아 무상교육: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 2009.

2008년에는 동네 품앗이 육아망 및 행복한 놀이터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 10여 개소를 선정하고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지역사회 내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신청’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맞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실시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외국인가정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등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 및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과정을 신설하였다.

긴급전화운영, 긴급생계급여지급, 일시주거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정서지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가정을 일시·긴급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긴급전화(1688-1004)를 운영하고, 지역통반장 및 지역 내 학교를 이용하여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위기가정의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일시주거보호서비스, 아동급식, 아동방과 후 교육, 아동보호서비스, 일자리제공, 상담서비스 등의 정서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위기유형별 예방 및 조기개입서비스를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단위로 제공되기보다는 실직자, 아동 등 개별지원체제로 시행되고 있어 위기로 인해 가족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 노동부

노동부의 자녀 돌봄 관련 정책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육아기의 여성노동자의 양육부담 완화 및 급여, 육아휴가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가족친화환경마련, 일-가정 양립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표 4-5 참조). 이는 향후 5년간(2008~2012년) 추진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주요 정책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출산·육아비용의 사회화 확대, 모성보호 확충 추진, 모성보호제도의 조기 정착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체제의 보강 등이 있다.

〈표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

5대 핵심 전략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합의에 기반한 고용 인프라 확충
	↑	↑	↑	↑	↑
20대 핵심 추진 과제	①여성 적합형 일자리 확대 ②여성 특화 실업자훈련 시스템 강화 ③여성재직자 능력개발 강화 ④여성 취업 지원서비스강화 ⑤여성고용 촉진형사회 보험제도개선	①일하는 여성 보육부담 완화 ②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육아부담 완화 ③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④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①실근로시간 단축 ②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③재택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④자발적 단시간근로 확대	①모집·채용 차별해소 ②임금차별 해소 ③승진 등의 차별해소 ④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⑤차별구제효과 성 확보	①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②여성고용 인프라 강화

자료: 노동부, 『제4차(2008~201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2007.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관련 다양한 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육아휴직의 미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였고,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근로형태를 다양화하여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며,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모델을 개발·보급하고, 2009년에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운영 개선을 위해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08년도 1월 출생아부터 현재 만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이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4-5>에서와 같이 전체 인원 중 기혼여성 신청자가 남성의 5배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남성 중 육아휴직 신청자는 1.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급여수준은 40~50만원이며, 혜택을 받을 경우 업무공백과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정영금, 2008)¹²⁾.

〈표 4-6〉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연도	지급액(백만원)	인원(명)			1인당월지급액(만원)
		전체	여성	남성	
2005	28,242	10,700	10,500	200	40
2006	34,521	13,670	13,440	230	10
2007	61,000	21,185	20,875	310	50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2009.2.13.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중고 실태 파악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책 개발, 육아휴직의 활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등), 사회보험에서 여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인정 및 우대(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고 1자녀 가족에게도 적용)해주고 있다.

가족친화 가치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홍보, 사례 발굴, 포상 등), 정시 퇴근제 및 육아데이 캠페인¹³⁾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건립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을 공동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¹⁴⁾.

자녀 돌봄으로 인해 여성이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출산 혹은 양육으로 일을 포기하여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등 유희여성인력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를 활용하고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 등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을 채용하

12) 정영금,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14, 2008.

13) 국립국어원, 「매월 6일을 이르는 말로, 어린 자녀를 가진 직장인들이 정시에 퇴근하는 날」, 2005.

14) 시설비는 최고 5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로 각각 최고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고용 후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여성취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제시되고 있는 재취업지원 3단계 특화 프로그램은 ‘재취업 성취 프로그램(Home to Work) 개발(2008)’, ‘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2008)’,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도(2009)’ 등으로 진행된다.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와 남성의 자녀 돌봄에 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여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저녁모임을 추진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아버지 교육 및 부성역할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기업 내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3) 여성부

여성부에서는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모델의 개발,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 평등적 인사관리, 편의시설 설치(수유실 등), 근무환경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여성친화지수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 근로자 고용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임신 및 출산 후 여성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을 활성화시키고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기타 여성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산전·후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모성권 보호는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제도와 산전·후 휴가 추가

부여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요 정부부처 서비스에 따른 여성참여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학생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Wee(We+Emotion+Education) Project’를 실시, 해당학교에 ‘We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대학은 Wee Class(친한 친구교실)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과 복지시설 및 자활, 의료기관 등은 Wee Center를 담당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Wee School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상시 배치하거나 고학력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상담자로 파견하고 있다.

4. 취학 자녀기 가족위기와 정책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은 취학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은 사춘기 특징으로 인한 가족관계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가출, 학교폭력, 약물복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일탈로 인한 문제와 성에 대한 관심과 일탈행동의 증가로 학령기 아동관련 성폭력, 청소년기 한부모 출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 관련 법

학령기가족의 자녀를 위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국내법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주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근간에 가장 이슈화되었던 점은 아동과 청소년관련법안의 통합 제정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아동의 영역에서 청소년이라는 범주를 세분화하여 제

정되어진 법안이며, 청소년에 관한 정의, 청소년을 위한 가정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매체물에 대한 금지, 고용에 관한 범주 및 약물판매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친권자 등에 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19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폭력 등에 대한 처분과 예방교육의 시행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최우선 권익제를 포함하여 이해관계 및 가족의 권리보호를 제시하여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정책, 아동정책 및 보육정책 담당부처가 통합되면서 맞춤형 통합정책이 생애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빈곤취학기 아동지원과 비행취학기 아동, 새터민이나 다문화취학기 아동,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빈곤취학기 아동지원은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빈곤취

학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가정위탁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부모의 빈곤·실직, 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건전 육성토록 지원·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세습화를 막고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현상 속에서 취약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75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보건복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조기진단·치료,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으로 운영되는 시·군의 드림스타트 센터는 0~12세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및 조정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2007년 16개 지역에 4,891명을 지원하다가 2009년에는 75개 지역 22,500명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브랜드로 2009년부터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0~17세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동의 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이 가능하다.

빈곤층의 방과 후 아동의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해 2009년 현재 3,400여 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표 4-7〉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활지원(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 급식을 실시함)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 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취학기 아동의 위기상황과 직결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를 실시,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로 통해 소외취학기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하고자 ‘문화예술강사 발대식’ 행사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09.3.3). 이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주체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학기 중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나 홀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등을 실시하여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아젠다를 위해 기

초학력미달제로 플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및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관 주도에서 탈피,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한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무회의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함께 ‘학원비경감대책’이 발표되었다. 지역 내 학원을 특별지도 단속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하의 교육청을 통해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마련하여 97개 특별지도·단속팀을 구성한 바 있다.

5. 성인자녀 및 중년기 가족위기와 정책

경제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곧 결혼시기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박경숙 외, 2005 재인용). 그리고 경제위기는 결혼적령기의 청년층 실업을 양산하고, 임금하락과 같은 현상과 연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미혼자들이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혼인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년기 부부 혹은 중년세대들은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 역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세대이다. 게다가 성인자녀의 결혼을 치룬 가구의 혼수 및 예식비용으로 인한 이 시기의 가정의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은 가계부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여기에 경제상황의 악화는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구주의 실직증가와 시장소득감소로 연계되어 많은 중산층을 극빈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기에 해당된다.

가. 관련 법

국내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법은 <부표 6>과 같으며, 이를 사전예방적 차원과 사후개입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적 차원의 법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들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두 경제구조적인 위기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한 빈곤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후개입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법안이다.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위기가정을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매5년을 주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가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지원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 역할과중을 겪을 수 있는 위기직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근본적인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2005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적인 구조와 관련되어진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로 정의된다. 일시·긴급적으로 금전 혹은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기관연계 등의 간접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지원,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

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아동의 교육지원 및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관련된 기관을 통해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대상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화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민법」에서는 가장의 파산 등 경제적 위기가 닥쳤거나, 부채 등의 채무가 있는 가장이 자살하거나 실종됨으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이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산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법적상속인이 급작스러운 빈곤 상황에 처했을 경우 부채로 인한 가족의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빈곤층 혹은 빈곤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의 절대적 기준을 선정하여 수급자를 지정하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본 법안에서는 개별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이거나 비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등 생활이 어려운 자를 일정기간동안 동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지정하고 있어 긴급지원의 형태로 경제위기 하의 차상위 또는 빈곤층을 부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후처리적 지원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6개 개별 하위복지 관련사업법을 포함하여 법안 내에 경제위기로 인한 긴급지원에 대한 조항이 대상별로 명시되어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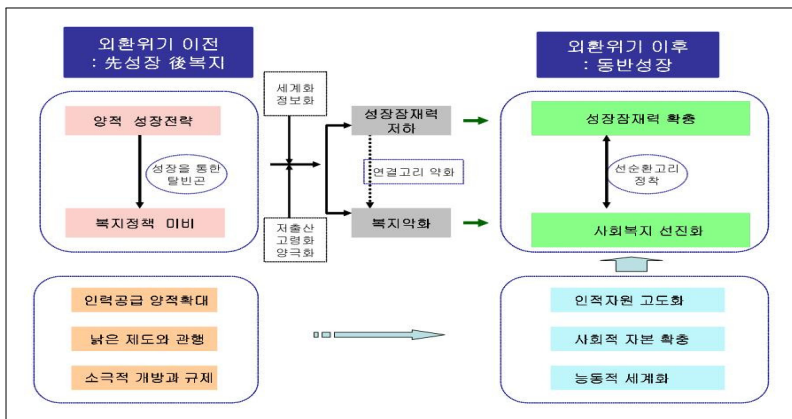
내용은 대부분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강화를 위한 자활, 직업교육 및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들로 매우 유사하게 명시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로 인해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된 자와 가족들이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국내 청년실업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정부 및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방지하거
나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인 제안이 담겨져 있으며 2013년까지 유효하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경제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당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등 위기가
족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되었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위기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한 근
거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선성장 후복지 시스템’에서 외환위기 이
후에는 ‘동반성장체계’가 도입되어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
그리고 능동적 복지체계 마련을 중점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6] 비전 2030의 패러다임 구축 체계



이후 현 정부는 ‘신규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소득에 근거하여 한시생계구호(현금지급), 희망근로프로젝트(현금 및 쿠폰 제공), 재산담보부융자(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긴급생계지원 서비스와 실직가정·채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시키는 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실직 또는 퇴직 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를 통해 의료복지를 확충시키고 안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표 4-8〉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급형태
① 한시생계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능력 50만 가구(110만명)	평균 20만원, 6개월	5,385억원 (국고 4,181억원)	현금
② 희망근로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능력 40만 가구(86만명)	월 83만원, 6개월	2.6조원 (국고 2조원)	현금 50%, 상품권등 50%
③ 자산담보부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2보유 20만 가구(44만명)	평균 5백만원 (상한 1천만원)	1,300억원(국고) 이자보전 등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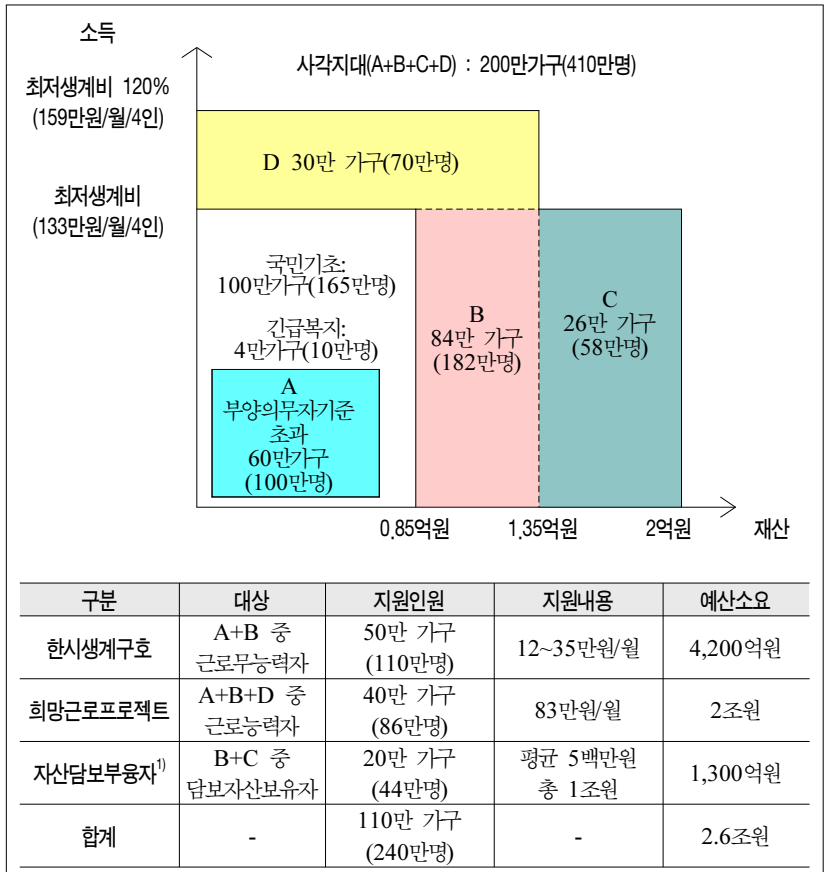
또한 경제적 위기에 가장 민감해질 수 있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원가를 인하하는 등 단기대응과 함께 가격 모니터링 T/F를 구성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외 정부합동부처간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세출 구조조정, 증세, 부동산대출 관리 강화, 외채구조 건전성 관리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09년 3월에는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6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팀이 구성되어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¹⁵⁾.

15)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 20차 회의 안건」, 2009. 6.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¹⁶⁾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춘 다양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7]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준 및 현황



주: 1) 재산 0.85~2억원 토지·주택·전세보증금 등 보유자 대상,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상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3. 12.

16)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예는 ‘서울시의 희망드림프로젝트’, ‘경기도의 무한돌봄지원사업’이 있음.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은 가정을 위해 긴급일시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위기구호 대책’을 통해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하여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이라는 정책추진 방안 하에 신빈곤층의 계속적인 증가를 막고 위기가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희망키움뱅크사업’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은 빈곤예방 및 조기 빈곤 탈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자활기금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자활기금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부채클리닉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시범사업, 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MOU), 민관공동 저소득금융소외자 지원 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등 다양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가족발생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 및 운영, 소득보장 상담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의료급여지원, 국민연금제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업무 등), 복지서비스 상담반(푸드뱅크 이용방법, 의사 상사 선정기준 및 절차, 모자보건사업 등)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100여개의 ‘희망 상담 창구’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된 전자바우처 서비스는 가

죽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예가 된다.

2) 노동부

일자리 창출, 근무능력향상, 자영업자 지원 등 실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일 수 있는 ‘실직고령자 희망드림 창업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노동부 외 9개의 협력부서 간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마련과 자영업자의 생업지원,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교육과 보육지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위기가정인 실직가정지원을 위해 일자리 마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훈련 및 연수지원 등과 자영업자의 생업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 폐업자영업자 전원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실직자를 위한 지원인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등의 지급과 실업자직업훈련, 체불근로자 체불임금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 신규실업자 등의 생계비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이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¹⁷⁾와 실직여성가장¹⁸⁾,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¹⁹⁾

17)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직하여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18)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자)를 1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운영하는 전세점포 지원 원칙이나, 월세점포의 경우에는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월 임대료 150만원 이내(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에서 지원한다. 또한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여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예산 범위 내)되며, 지원업종은 생계형 창업만을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 정책²⁰⁾’이 있다. 자금의 원활한 융통이 어려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실업자의 자영업대부노동부직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을 위해 경제적 위기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현물 및 현금의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한 직업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지속을 예방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장기실업자자영업대부(250억원), 실직여성가장(150억원), 중고령자 고용연장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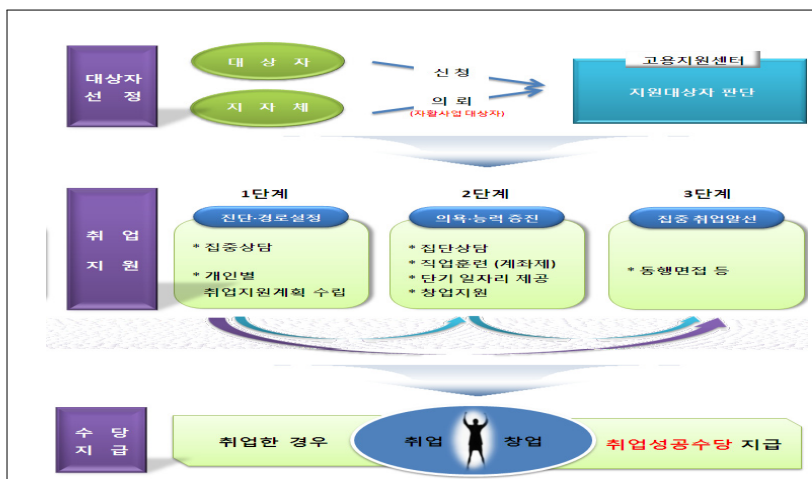
- 19)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단순노무조차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임.

-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2009. 7.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를 설정하고,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을 지원하며, 1단계인 진단, 경로 설정단계에서는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다. 2단계 의욕, 능력 증진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²¹⁾, 경과적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이 실시된다. 마지막 집중 취업알선단계에서는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실시된다.

[그림 4-8]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취업패키지지원 개요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2009. 6. 15.

21)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적용하되 자부담을 면제하고,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예정임(’09.3월 계좌발급 → ’09.4.1일부터 훈련 실시 예정).

그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재직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3/4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에서는 구직 및 창업을 원하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자활관련자금대여,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의 구제, 유휴노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모색하여 민생안정에 투자하고 있다.

3) 기타 부처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인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랜드마크사업이라 불리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 자전거 인프라 개선, 공장 진입로 확장 및 포장 주민환경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실체가 남는 생산적 사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통합정부부처에서는 휴·폐업 자영업자 혹은 실직가정을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해 유휴인력의 재고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6. 노년기 가족위기와 정책

가. 관련 법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명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세대 간 단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孝) 의식의 저하와 개인주의 가치관의 상승 등이 맞물려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즉, 노인 돌봄의 사안은 더 이상 개별 가족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거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부표 7 참조).

게다가 국내의 노년기 가구는 자녀교육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노년기 빈곤으로 연결된다. 노인부양의 회피로 인한 단독노인가구의 증가와 유기노인의 증가 등은 결국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노인부양부담은 매우 커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 내에서 부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전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노인 돌봄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의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책임자의 순위에 따라 부양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받는 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정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노인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강제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이거나 연령과 상관없이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를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서비스 혹은 현금이 지급되도록 지정하고 있다. 동 법은 노인부양의 가족 돌봄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노인 돌봄에 관한 가족가치관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돌봄에 관한 가족부양의 의무를 명시하여, 국가와 가족 및 개인의 돌봄의 가치관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돌봄의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나. 부처별 정책 및 제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가족내 노인돌봄제도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견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신변의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 안전 확인이나 사회적 접촉기회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부양가능여부)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필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바우처 지원액을 월 202,500원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인 월 36,000원을 선납 받아 월 3시간 9회 이용(월 27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며, 추가 구매시 서비스가격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립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노인부양가족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외부 돌봄지원이 요구될시 활용 가능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일반질환 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에게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신체적 수발 및 일상생활 지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혜대상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무료로 제공되며 200,000원 한도 징수 가능(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필요)하도록 하였다.

노인돌보미 관련 사업은 정부주도인 경우 평일만 이용 가능하므로 저소득층이 아닌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의도와는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긴급 상황시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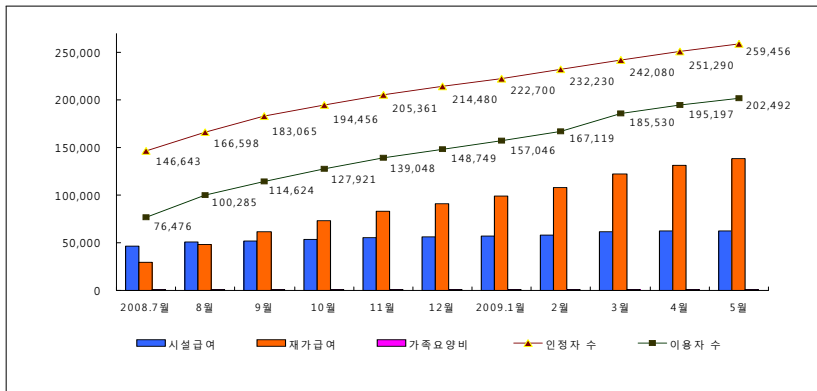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은 2009년 5월말 현재 전국 2,016개소(정원 76,216명)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7월 1,271개소 정원 56,140명으로 급여를 시작하였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수혜기준은 <표 4-9>와 같으며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은 2008년 7월 52.2%에서 2009년 5월말 현재 7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기준

등급판정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55점 이상 75점 미만

급여종별 이용자 추이를 볼 때, 재가급여 이용자 수는 2009년 5월 현재 138,811명으로 급여개시 시점인 2008년 7월 29,874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설급여 및 가족요양비 이용자 수는 2008년 7월 대비 시설급여 1.4배, 가족요양비 2배 증가로 소폭 증가에 미치고 있었다.

[그림 4-9]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현황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를 확대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정경희 외, 2009). 의무적 자격급여 형태인 동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²²⁾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초기 시작 단계인 2008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를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추가 확대하였다. 향후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에서 1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7년 33.6%에서 2008년 74.4%로 높아졌으며, 노인전체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도 2007년에 비해 각각 5만 2천원, 3만 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9).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조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22) 2008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64만원 이하임.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외 법·제도

국외의 가족위기와 정책은 국내와는 차별화된 가족생애주기별로 진행되기 보다는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의 사회화 영역, 출산장려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교육과 보육정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취학과 취학 자녀에 관한 정책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국외의 법·제도는 가족생애주기 단계를 신혼 및 자녀출산기, 미취학과 취학 자녀기, 성인 자녀·중년기 및 노년기 가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전체 가족생애주기의 가족위기와 정책

경제위기 하에 이혼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1) 이혼 관련 정책

미국은 이혼 관련법으로 38개의 주에서 가정의 해체적 위기와 관련된 가족조정을 규정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재판에 앞서 조정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주에서도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Cohen et al., 2000; 이명신, 2007에서 재인용). 이혼당사자를 위한 조정서비스는 1961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5년 Coogler에 의해 이혼조정모델이 소개된 이후 이혼소송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명신, 2007)

이혼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혼부모와 아동의 관계증진 및 양육

자와 면접교섭권 적응을 위한 PEACE 프로그램(오하이오 주 메론 카운티), 이혼한 부부와 자녀의 관계향상을 지원하고 위한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프로그램(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이혼부모를 위한 훈육방법안내를 하기 위한 법원조정프로그램(일리노이 주의 법원),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ACT) 등을 들 수 있다(김재연, 2004).

또한 정부, 법조계, 대학 상담전문기관과 민간시민단체들이 협력적 가족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정부의 예산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 상담기관에 재정이 지원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인력이 양성된다. 또한 법원은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혼예방을 위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오세은, 2003).

수감된 아버지를 위해서서는 자녀멘토링하기(Mentoring Children), 가족의 역할과 아버지의 책임, 교도소에서 가정으로 복귀하기(From Prison to Home)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동안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및 출소 후 가족과의 적응법을 제시하고 있다(박정운 외, 2008).

2) 가정폭력 관련 정책

미국의 여성폭력 행정체계는 보건복지서비스부의 아동가족국에서 전담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8). 가정폭력 규제입법은 1976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민사보호명령제도의 창설로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오레곤 주에서 최초로 의무적 체포를 명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 경에는 경찰관의 의무적 체포에서 적극적 체포정책(pro-arrest policy)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더욱 가혹해지는 차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박선영 외, 2007).

1984년 여성폭력관련 법률인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가 제정되었다. 여성폭력 지원과 관련하여 1990년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 Rights and of Crime Act)」,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

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이 제정되었다(김승권 외, 2008). 이후 1994년 연방차원에서 「폭력범죄방지 및 집행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폭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4편 여성폭력방지법과 11편 공공의 안전 및 여가용총기사용법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박선영 외, 2007).

1994년 전국가정폭력방지협의회(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NCADV) 등의 입법운동으로 199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이미정 외, 2008).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여성피해자에게 쉼터, 상담서비스 제공과 가정폭력 연구 및 대중교육과 캠페인 등이 지원되었고, 여성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검사들은 피해자에 의한 고소 철회를 막기 위해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다(김승권 외, 2008).

미국의 가정폭력피해자는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 전환기의 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al housing), 주거지원 정책(HUD,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의 3단계로 나뉘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쉼터와 중간의 집 대부분은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간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지원, 숙식, 아동보육, 교통 및 취업알선을 제공한다. 중간의 집은 자립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저렴한 비용의 혜택과 피해여성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 주거비부담이 어려운 피해여성에게는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지불기간 연장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대다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사회개발공사)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피해여성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CDC의 일부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CDBG, LITHC 등의 공적프로그램에서 보조되고 있다. CDC에서 공급하

고 있는 저렴한 주택들 중에는 한부모가정 중 여성 한부모가정을 위한 자립지원 임시주택이 있다(이태진 외, 2005).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 홈리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1980년대 홈리스입법은 가정폭력여성지원을 위한 여성보호기구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폭력피해여성을 가해남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틀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이태진 외, 2005). 2003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가정안전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법』은 2008년까지의 한시적 법안으로서 아동 및 여성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모아 지원하기도 하였다(김승권 외, 2008). 건강한 결혼(Healthy Marriage)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가족의 해체적 위기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한 예로 가정폭력정보망(Domestic Violence Resources)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발생하였을 때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는 정보망이다(박정윤 외, 2008).

나. 영국

1) 이혼 관련 정책

영국은 가정의 해체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 ‘별거’를 규정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설계의 시간으로 1년이라는 별거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Ireland의 경우, 부부 양자의 별거동의에 대해 판사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수정·권신영, 2001).

『아동(기본)법(The Children Act)』 조항 중 특히 ‘교섭 명령(Contact order)’은 아동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다른 부모의 아동 방문이나 아동과 함께 머무는 행위를 허용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교섭 명령은 대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이와 합리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등의 간단한 표현으로

발부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명령도 있다(진미정 외, 2008).

‘거주 명령(Residence order)’ 제도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때로 두 사람 이상의 성인에게 부과되는데 이 경우 아동이 각각의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규정한다. 대개 어머니에게 거주명령이, 아버지에게 교섭명령이 내려진다.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라는 사회복지의 노동연계 경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부모가정을 위한 신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이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 의하여 진행되면서, 가계소득 보조를 받는 모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일련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상담은 물론 자녀보육 및 양육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술의 개발과 취업알선 등을 상담원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2) 가정폭력 관련 정책

1974년 최초 핫라인인 여성보호기관(Women's Aid)이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쉼터서비스, 폭력전화상담서비스, 웹서비스를 이용한 가정폭력피해여성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이 계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발견될 경우 ‘지역알람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빠른 대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김승권, 2008). 1975년 의회 소 위원회를 대상으로 폭력피해여성에게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BWS(Battered Women's Shelter)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폭력피해여성성은 1976년 홈리스를 위한 주거법에 따라 저리임대공공주택의 이용, 보육수당 및 주거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상숙, 2007).

1976년에는 『The Domestic Violence and Matrimonial Proceeding Acts』가 제정되어 폭력여성을 지원하는 최초의 법안이 마련되어졌으며, 1977년 『Housing Acts』에는 폭력에 대한 여성조직의 업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1978년 「Domestic Proceeding and Magistrates' Court Act」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안전한 주거 제공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이태진 외, 2005). 1996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폭행죄, 폭력남 편집근금지 등 형법, 민법상의 조치들이 취해졌다(김승권 외, 2008).

여성폭력 관련 행정체계에는 여성문제담당 장관과 여성청(The Women and Equality Unit)의 여성폭력대응팀(Violence Against Women Team)이 주 업무를 담당하여 여성관련폭력에 집중지원하고 있다. 2002년 「홈리스법」은 지방정부가 우선보호대상자와 비의도적으로 홈리스가 된 가구주 외 폭력피해 여성 등에 대한 임시거처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한 주택이 부족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태진 외, 2005).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는 영구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HA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연계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이태진 외, 2005). 또한 「Family Act(1996)」와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1997)」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력보다 넓게 정의하여 정서적인 것과 재정적인 박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폭력을 치료하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 호주

호주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은 197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이 정책 참여를 시작하면서 매우 두드러졌으며, 페모크라트(femocrat) 혹은 페모크라시(femocracy)라 지칭되는 관료들이 페미니스트의 이상을 정부정책에 반영시켰다. 그리고 산하 여성단체들은 보건센터, 여성쉼터, 강간위기센터 등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및 정부 지원을 통해 피해자 시설 등을 설립할 수 있었다(이미정 외, 2008).

1987년 형사법으로 「Family Violence Law(가정 폭력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폭력의 재발을 근절의 일환으로 남성 행동변화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빅토리아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네트워크의 설립을 지원해 지역의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교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1997년 ‘Partnerships Against Domestic Violence(PADV)’에 5년간 예산을 지원하여 가정폭력대처와 예방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폭력피해자는 ‘Domestic Violence Women Crises Services’를 통해 위기전화, 숙박제공, 안전보장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Lynne McPherson Manager, 2006).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리실과 내각부에 여성지위청을 두어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여성지위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운동 개선이라는 명제 하에 여성폭력담당기구와 법률구조, 호주의 모든 사법 관할지역의 사법종사자와 치안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주와 특수구역에서 체포권장 정책(pro-arrest policies)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위민기자열전, 2009.1.30).

2. 신흥 및 자녀출산기 가족위기와 정책

가. 미국

미국의 아동·가족관련 정책은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높은 아동 빈곤률과 혼외출생아 증가라는 부정적 가족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과 같은 직접적·보편적 현금급여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정책이 아닌 조세제도의 혜택을 이용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간접적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김경신, 2007).

모성, 부성 또는 부모 휴가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가족휴가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5개 주(캘리포니아 주, 하와이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10~12주까지 장애수당을 이용,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장애의 한 범주로서 보호받아 왔다(김경신 외, 2007).

미국은 결혼장려와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가족국 산하의 국립 건강결혼정보센터(National Healthy Marriage Information Center)²³⁾를 설치, 운영하면서 건강한 결혼에 관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기초로 건강한 결혼(Healthy Marriage)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굳건한 가족만들기(Building Strong Families)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소득층 커플이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이들이 건강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기(Supporting Healthy Marriage) 프로젝트의 목적은 프로그램 관리자나 정책 개발자들에게 커플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들의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건강한 결혼 운동(Community Healthy Marriage Initiative: CHMI)의 목적은 결혼하기로 결정한 커플이 건강한 결혼을 성립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박정윤 외, 2008).

나. 일본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소자녀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더 이상 개별적인 가족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에 관한 사회적 대응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도록 변화되고 있다. 가족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의 행정부서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아동가정국’과 ‘노인보건복지국’으로 고용균등·아동가정국에서는 고용균등, 직업과 가정의 양립, 가정 복지, 보육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하며, 노인보건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와 개호보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1994년의 앤젤플랜(아동양육 지원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 1999년 신엔

23) <http://www.healthymarriageinfo.org>

펠플랜(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일과 이동양육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부담완화와 소자화대책을 통해 이동양육의 제반환경을 우선 정비할 것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 2006). 소자화대책은 2006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임신 출산수유기에서 미취학기까지의 연령별 육아지원은 시·정·촌에 출산신고 후 모자건강수첩의 교부와 무료건강검진으로 지원되며, 산전휴가로 6주간(다태 임신의 경우 14주간), 산후 휴가 8주간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시의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출산육아 일시금 지불 수속의 개선, 임신 중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치료에 대한 공적 조성의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의료체제의 정비 및 확보로 관련전문의사의 확대와 의료 시스템의 충실화를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가정방문 등 출생 후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첫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수료 전까지 지급되며, 아동의 출생순위와 가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가정방문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정·촌의 직원이 각 개별가정으로 파견을 나가 육아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실태파악, 상담 및 지원서비스 알선 등을 제공하며 육아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일조한다.

지역 육아지원거점의 정비를 위해 ‘아동육아 응원 플랜’에서는 2009년까지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지역육아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대기아동제로작전’을 통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육아방식의 지원(병아·병후아 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장애아 보육, 만남의 광장, 일시 위탁시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성육아참가의 확대를 위해 육아휴가 및 휴직의 이용촉진과 ‘차세대 육성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행동계획의 실시 등 기업의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육성대책 추진법’에서는 육아휴업제도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의 단축, 근무시간의 다양화 등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을 실시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 2006).

그 밖에 저출산 예방을 위해 저출산 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의 협력 하에 학령기 이동을 위한 ‘방과 후 아동플랜’, 육아지원 세제혜택으로서의 부양공제제도, 양부모-양자 인연 맺기 제도 등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 2006).

다. 프랑스

프랑스는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경기변동(실업률)과 상관없이 각종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보육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가족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 정부기구 중 하나인 고용연대부는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및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행정 부처로 여러 개의 하위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단위 소득지원정책인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지원 등은 부양자녀의 수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대다수 출산장려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즉, 모성의 대가가 아닌 출산으로 인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며, 셋째아 정책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들의 지속적 추진 및 취학자녀를 둔 가족, 미혼모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가족단위로 제공되는 돌봄 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녀 관련수당으로 영유아수당·자녀입양수당·자녀간병수당·자녀교육수당·특수교육수당·편부모수당 및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등 다양한 방식의 수당지급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경신 외, 2007).

특히 양육정책은 1970년대 이후 시설보육 우선정책에서 개별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개별가정지원정책으로는 유급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및 보육인고용지원금 지원, 등록보육사 고용보조

금 지원 등이 있다.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양육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을 차등지급하고, 등록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다. 또한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현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가족 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장혜경, 2008).

프랑스는 2004년 다양한 기존 출산장려제도가 일원화된 'PAJE(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라는 유아환경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PAJE를 통해 기본지원금인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의 지원, 보충지원제도, 양육시스템 개선, 쌍둥이 출산 장려, 입양장려, 출산휴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9).

임신지원금은 가계당 소득이 월 4,600유로 이하인 중산층 이하 대상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으로서,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임신 7개월에 889유로를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자녀 1인당 월 177유로씩 3세까지 지급된다. 보충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0~6세 자녀에게 탁아소(10% 내외) 또는 baby-sitter(20% 내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과 부모 중 한 명이 자녀(0~3세)양육 목적으로 직업포기시, 월 374유로를 지급(1자녀: 6개월간, 2자녀 이상: 35개월)하는 '직업활동 보전지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후휴가후 보조금'은 첫 자녀에 한해 산후 휴가 후 6개월간 374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양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사업장내 사립 탁아소 창설 지원, baby-sitter 자격증 발급, 정규직 근로자 지위 부여, 관련회사 창설 지원, 기업의 직원용 보육시설 투자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유아환경체제(PAJE) 쿠폰 발행으로 정부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쌍둥이 출산 장려정책은 2명 이상이 동시 출산되었을 때 기본지원금과 보충지원 제도를 자녀별로 지원하여 주는 혜택을 말한다. 입양 시에도 유아

환영제도(PAJE)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출산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원 하며, 입양시에는 1,770유로 입양보조금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입양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자녀 이상의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며, 3자녀 이상의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월 161유로를 추가 지급 한다. 임신 6개월 이후에는 의료비·입원비·치료비 및 불임치료(인공수정 등)의 제반 치료경비를 전액 사회보장체제 내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하여 의료지원혜택을 공영화하고 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소득세·주거세를 경감하고, 그 외 법정 출산휴가 제도를 실시하여 남성은 최대 11일, 여성은 최대 26주간(쌍둥이 출산시 최대 46주간)을 보장하고 있다. 기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가비 지원, 교통비 할인, 이사 특별수당,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퇴직연금 할증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2세 아동의 50% 가량이 공공보육시설(Crèches)이나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개별보육으로, 3~6세 미만의 아동은 대부분 유치원(Ecole Maternelles)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받고 있어(장혜경 외, 2008)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라. 기타 국가

스웨덴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아기를 입양한 부모에게 부모휴가제도를 제공하는데, 정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48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급여 수준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최대 90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父)할당제도 및 부성휴가제도 등을 통하여 60일의 휴가는 반드시 남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영국의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연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전 11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산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출산전·후로 최장 29주까지 산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6주 동안은 통상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거나, 자영업자, 또는 최저소득 한도 이하의 극빈 여성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소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김경신 외, 2007).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보육을 통한 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분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가족위기와 정책

가족의 위기상황 및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감당하여야 하는 가족의 탄력성을 가장 많이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발생시 가족 내의 유대관계 약화는 가족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체적 위기상황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사후처리적인 방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미국

미국의 자녀돌봄 관련 행정체계는 보건복지서비스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아동·가족관련 정책의 주무 부서이다. 산하에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이 서비스 관련 중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취업모의 가족간호휴가 보장 등에 관련해

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함께 나서고 있다. 요보호아동 및 유족에 대한 급여 및 연금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아동·가족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아동 및 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아동 부양강제 사무소(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는 자녀 비양육 부모 찾기, 부성확립, 자녀양육명령, 자녀양육수당지원금의 수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찾기 위해 아동부양강제 사무소는 컴퓨터 정보망인 ‘연방 및 주립 부모 찾기 서비스(State and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s: FPLS)’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위치, 그들의 소득 및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둘째, 부성을 확립·인지시키기 위해 아동의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혼인의 출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사회보장서비스, 퇴직금 및 연금, 의료보장, 양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및 관계의 수립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자녀양육 명령을 통해 담당부서나 법원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자녀양육수당을 결정하고 친부를 통해 자녀양육수당을 급여에서 차압 지불하도록 한다(김경신 외, 2007).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제정을 계기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가족의료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의료휴가법」은 전년도 노동시간이 총 1,250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12주까지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한 가족 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장혜경 외, 2006).

특히 영유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과 조기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고 있다. 출생 직후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와 4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대표적인 공보육 프로그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가정방문과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부모교실의 제공,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어 빈곤가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미국의 자녀 돌봄 제도는 ‘자녀부양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및 ‘부성 강화(Fatherhood Initiative)’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녀부양강제 제도는 아동의 부모를 찾거나, 부성을 확립·인지하여 자녀양육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아동에게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006년에 새롭게 주창된 ‘부성강화’는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고, 부모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조장하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건강한 ‘부성’ 증진 및 격려를 목표로 건강한 결혼, 효율적인 부모역할, 경제적 안정, 자녀 방문 및 양육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자녀 돌봄의 예방적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효율적인 부모역할(Effective Parenting)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nfluence)’은 생부와 함께 사는 아동의 높은 부적응과 발달지연을 위해 아버지에게 자녀양육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녀의 생활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와 ‘자녀의 복지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 Welfare)’는 자녀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헤드스타트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를 통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유아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건강(Father’s and Children’s Health)’에서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박정운 외, 2008).

사회서비스 일관교부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은 빈곤계층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제도이며, 보육서비스나 구매권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성인시설 식품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은 빈곤가족에게 제공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보육기관에서 전달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빈곤가정지원을 위해 식품권(Food Stamp)을 발행하였고,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²⁴⁾)는 무주택 빈곤가정에 월세지원과 공공주택 보급정책 및 저소득 가정의 전력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t Program)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경신, 2007). 또한 교육 및 의료부문의 혜택과 WIA(실직자와 젊은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노숙자예방기금(Homeless Prevention Fund: HPF) 등이 각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다(김영민, 2009).

최근 경제위기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2009년 2월 ‘미국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Stimulus Bill)’이 승인되었다. 경기부양법안은 사회안전망, 사회정책 특히 실업자나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위험에 처한 가구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의 소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높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정책으로 세액공제혜택, 현금이전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및 기타현물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다(김영민, 2009).

세액공제혜택인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세금혜택으로 소득의 6.2%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공제한다. 최고 상한은 1인당 400달러이지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 가능하다(김영민, 2009).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여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 이하일 경우,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조선주 외, 2008). 이 정책은 유자녀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소득 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복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2007). 결국

24) <http://www.fns.usda.gov/fsp/>, <http://www.hud.gov>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증가율이 달라지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3인 이상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김영민, 2009).

양육비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더 낮은 소득계층 중 1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여 준다. 이 중 기혼부부는 추가소득의 5%비율로 공제액이 감소된다.

이 중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프로그램은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가족의 소득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기능을 보장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가족소득지원정책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부 산하 아동가족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빈곤가족 한시부조(TANF)는 수혜 대상 가족들의 노동참여를 유발하여 자활능력을 고취하고 자녀부양의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생애기간 동안 5년 이상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규제처리가 되어 있어 취업이 불가능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수혜자들의 자활을 위한 한시적 성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김경신, 2007).

나. 영국

영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990년대 OECD 국가 중 가장 극빈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개혁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공급중심의 예방차원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탈빈곤정책, 사회부조의 강조,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제공으로 규정되었다(김경신 외, 2007). 1999년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제도를 제정, 2001년에 아동세금환급(Children's Tax Credit)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의 세금공제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책을 강구하였다(김경신 외, 2007).

2003년부터 아동수당(Child Benefit)제도,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FTC)제도, 소득지원 및 구직자수당(Income Support/Jobseeker's Allowance), 아동세금환급(Children's Tax Credit)제도의 수급조건을 단일화하여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김경신, 2007). 즉, 기존의 조세제도에 통합되면서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통해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제도로써 연금급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가족수당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노령연금(Old-age Pension), 주택급여(Housing Benefit) 등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주택급여(Housing Benefit)는 저소득층 가족들의 공공 또는 민간 주택거주에 필요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서 가족원이 일정한 주거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저소득층 가족의 가족수당(Family Credit)제도는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FTC: Working Family Tax Credit)의 형태로 전환되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당 16시간의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자활시키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다(김경신 외, 2007).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FTC)는 자녀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도 포함하고 있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 자녀수, 주당 근로시간, 양육비 부담정도, 그리고 부모의 장애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김경신 외, 2007). WFTC는 2003년에 WTC(Working Tax)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조선주, 2008).

또한 국민가족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생 자녀 모두가 어린이편드를 가입하여(18세 이후 금액사용가능) 유년시절부터 교육비 및 주택자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경신, 2007).

영국의 자녀돌봄 관련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내에 위치한 근로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사회보장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후신)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중심으로 가족지원정

책이 진행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위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아동학대나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서비스(Prevention Services)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의 대리적 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영국의 주요 자녀 돌봄은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²⁵⁾, ‘부모센터(Parents Centre)’²⁶⁾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박정윤 외, 2008). 예방중심의 적극적 자녀 돌봄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계획(The Children’s Plan)’은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목표와 동일하게 영국을 아동이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으로, 부모와 가족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적 잠재력을 구현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의 최후 안전보루로 간주된다(박정윤 외, 2008).

아동을 위한 계획 중 하나인 ‘아동과 청소년의 진학과정에서 이탈 방지(Leadership and Collaboration)’는 교육과정 및 진로 추구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위기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상교육 및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부모센터에서는 부모를 위한 정보들이 자녀 연령별로 안내되어 있다. 이외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 및 훈련·교육을 통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기구와 단체들이 있다(박정윤 외, 2008).

영국의 자녀 돌봄은 실시기관 및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대상의 영역에 차이가 있다. 취학 전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은 Sure Start의 실시와 함께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녀 또는 장애아동, 학대받는 아동, 및 유기된 아동에 대한 보호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SLP)은 영유아교육, 아동보육, 보건, 가족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4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Barlow et al., 2007).

25) <http://www.dcsf.gov.uk/index.htm>

26) <http://www.parentscentre.gov.uk/>

1998년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ren Strategy)”이 발표되어 아동투자확대가 진행되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캠페인 및 도전기금 등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10년 보육전략(10-years strategy for children)”이 발표되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 일과 가족의 균형 및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장혜경 외, 2008).

「영국고용관계법(British Employment Relations Act)」은 가족친화적인 고용·노동정책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과 취업을 병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이 각종 복지후생제도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동적인 근로시간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가족이 필요로 할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돌봄을 위한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Work and Families)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직장에서의 임신·모성권(Pregnancy and maternity rights in the workplace) 제도를 통해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규정 등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임신한 근로자는 52주의 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 등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고용인은 장시간 근무, 차별 및 해고 등을 할 수 없다. 임신을 한 근로자는 52주의 산전·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일정조건이상 근무를 한 경우 모성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SMP)’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 대한 정보(Maternity leave: returning to work)를 제공하여 출산관련휴가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 관련 정책까지 안내하고 있다. 임신근로자는 1년 이상 지속근무시 입양증명서를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Parental leave)과 탄력근무(Flexible working)가 가능하다(박정운 외, 2008). 육아휴직제도는 유럽연합(EU)의 출산휴가제 보완 권고에 의해 시작되어 최소 13주에서 최장 1년까지 무급여 고용보장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김경신 외, 2007).

다. 스웨덴

스웨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족 돌봄정책의 업무가 분장되어 실시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를 통해 제공된다.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의료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방사무소(Local Government)에서 제공하는데, 지방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보험 사무실(Social Insurance Offices)에서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독립적인 행정체제로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주택, 아동보호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한다.

가족업무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가 주요 부처이며 사회서비스, 연금, 부모보험, 아동수당, 주택수당 및 유지보조, 아동과 이동의 삶의 여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보육관련 정책의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 교육부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보육시설에서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강화시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영역이 개인과 가족보호 영역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보호영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원조, 지지한다는 맥락에서 가족상담, 보호, 치료, 재정적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에 속하는 집단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들고 있다.

돌봄 관련정책은 아동과 가족수당,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양질의 보육이 포함되며, 이 중 부모보험은 건강보험의 한 종류이며, 임신수당, 부모수당, 임시부모수당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임신수당은 임산부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수입의 80%를 받는다. 부모휴가수당은 480일간 지급되며 390일간의 부모수입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간 매일 9천원(SEK60)씩 지급된다. 임시부모수당은 병간호휴가, 임신출산급여, 아버지휴가 등이 있으며, 병간호휴가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1년에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김경신 외, 2007)²⁷⁾.

특히 저소득 부모나 수입이 없는 부모의 경우, 최소한 매일 22천원 (SEK150)을 받고, 480일간의 수당지급기간은 부모가 공평하게 나눠서 받는다. 아버지는 240일, 어머니는 나머지 240일간 지급이 되나 휴가를 사용한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240일중 180일까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보육료의 책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소득의 1~3%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원칙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가정의 시설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일부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우선권 부여되어 부모의 유급노동을 지원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27) 휴가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지급,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

〈표 4-10〉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 및 내용

구분	정책유형	정책유형별특성
노동시간 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노동시간을 25%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	• 근로시간 단축법(2002)
휴가 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 출산휴가: 14주 별도의 제도적 명칭 없이 부모휴가제도 내에서 운영 • 부모휴가: 16개월, 8세 미만의 자녀의 부모, 정률/정액 급여, 탄력적 사용 - 아버지 할당: 2개월 - 성평등 보너스: 부모 중 높은 임금소득자가 휴가 사용시 낮은 임금 소득자에게 보너스 제공 • 임시 육아휴직: 60일, 아픈 자녀 돌봄, 소득 80% • 부성휴가: 10일, 유급 • 휴가사용: 1/2, 1/3, 1/4, 1/8로 분할사용 가능
보육 정책	대상	• 1~6세 아동에게 보육에 대한 권리보장 • 3~7세 아동에게 유아교육 권리보장 • 6~12세 아동에게 방과후 서비스 권리 보장
	서비스 형태	• 취학전 아동: 유아학교, 가정보육, 개방형 유아학교 • 학령기 아동: 레저타임센터, 가정보육, 개방형레저타임센터
	비용	• 부모부담금 상한제; 지자체 자발적 선택제이지만 모든 지방정부 채택 • 소득연예이용료 • 이용시간별 가격구조
조세정책 및 현금지원 정책	정책특성 및 내용	• 양육수당 도입(2008): 1~3세 자녀 둔 부모의 육아휴직 후 가정에 머무르는 선택, 월 최고 3,000SEK • 성평등보너스: 부모 중 높은 임금소득자가 휴가 사용시 낮은 임금 소득자에게 보너스 제공, 월 최고 3,000SEK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데이터뉴스, 2009. 7. 10.

라. 호주

호주가 실시하고 있는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 및 토착민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호주 부모역할 웹센터(Rai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박정윤 외, 2008).

이들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서비스(family relationship services)’, ‘부모

교육프로그램(parenting education programs), ‘가족갈등예방을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s to young people and families experiencing conflict)’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돌봄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된 정부 기구 및 전문기관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를 강화시켜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부모지원센터와 달리 ‘호주 부모역할 웹센터’에서 자녀의 임신, 출산 전에 성인 남녀의 건전한 결혼관계 유지를 위한 가사업무, 일·가정양립의 문제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별거, 이혼에 따른 분리 문제 등을 안내하여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으로서 가족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과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돌봄의 사회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전략(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SFCS 2004~2009)’을 공포하였다. 이는 5년간 진행되는 호주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세 가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SFCS 중 돌봄지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Communities for Children): 아동 보호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 중재 및 예방사업으로 가정방문, 조기 교육 및 문해력 프로그램,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지원,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아동영양 등 5가지 핵심 사업이 있다.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이를 위한 부모와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목표로 하며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 발달을 지향하고 있다.
- 소외지역 배려(Local Answers):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한다. 지역별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 사업의 예로는 ‘탄광지역 가족지원 프로그램’, ‘십대 모성을 위한 부모교육’,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카페’, ‘가족 감성력 키우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호주는 가족주무부서인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 및 토착민부’의 주요 정책 서비스 중 하나로 ‘가족관계 서비스 프로그램(The Family Relationships Services Program: FRSP)’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아동, 청년 및 성인들이 어떠한 가족형태에서도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도움이 되는 가족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가족상담(Family Counselling), 청소년 중재 및 가족치료(Adolescent Mediation and Family Therapy), 가족관계 교육 및 훈련(Family Relationships Education and Skills Training)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의 정책집행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기구는 일대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족관계 센터(Family Relationship Centres)’, 전화 서비스인 ‘가족관계 조언 전화(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인터넷 서비스인 ‘가족관계 온라인(Family Relationships Online)’ 등이 있다(진미정 외, 2008).

마. 기타 국가

독일의 가족정책 담당부서는 가족부(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통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아젠다 2010’을 통해 가족의 출산과 돌봄지원을 위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8).

독일은 자녀 돌봄을 위한 소득보장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른 현금지원, 가계소득에 따른 자녀양육세금의 공제, 사회주택임대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유계숙, 2007). 특히 독일의 소득지원정책 중 가족

의 돌봄부담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족성과 보상’은 부양자의 수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실시되고 있으며, 유자녀 가족인 경우 주택수당, 실업수당 등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위한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자녀양육기간에 비례하는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또한 연방부모수당법과 부모시간법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8).

스위스는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연방사회보험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내의 가족센터(Centre for Family Affairs)에서 가족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업무는 내무부의 남녀평등연방사무국(Federal Offic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족 돌봄 정책은 크게 가족센터운영을 통한 가족수당지급과 출산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센터(Centre for Family Affairs)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농업분야(agricultural sector)에 있는 가족수당시스템의 수행을 관리하나 그 외 다른 모든 가족수당은 주(州)당국의 책임 하에 있다. 가족센터는 연방정부내의 가족업무에 대한 조정하며 가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스위스 전역에 가족 및 아동정책과 연관된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원)에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한다. 출산보험은 여러 법안에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신부, 분만중인 여성,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하는 규정들은 노동법에, 고용주에게 여성출산휴가동안 3주간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법에 명시되어있다(김경신 외, 2007).

핀란드는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돌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1948년 도입된 가족정책지원시스템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 가족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돌봄 정책으로는 수당지급과 휴가 제도를 들 수 있으며 모든 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며

휴가기간은 주말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부모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은 핀란드의 사회보장기관의 지역 사무국에서 지급된다. 또한 휴가제도는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로 나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30~50일, 출산 후 55~75일로 총 105일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휴가는 158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는 18일간을 부성휴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가 출산휴가를 받는 동안 아이의 출생을 같이 지켜보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반면, 부모휴가 후에 자녀가 취학할 연령인 7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 종류의 육아지원방법 즉 무급육아휴가를 받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육아수당을 받거나,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혹은 시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김경신 외, 2007).

노르웨이는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의 가족보육서비스 및 양성평등국(Department of Family, Daycare services and Gender Equality)에서 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지원 가족수당은 유자녀 가족을 위한 매우 중대한 사회보험지원이며, 국가보험행정국과 지역사회보험국에서 운영되면서 가족수당계획에 따라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김경신 외, 2007).

부모휴가는 부모가 아이 출생 후 1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52주가 제공되며, 15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가족은 아이가 출생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부모수당은 52주 동안 임금의 80% 또는 42주 동안 100%를 받으며, 입양수당은 49주간 임금의 80% 또는 39주 동안 임금의 100%를 받는다. 임신부는 출산 전 부모휴가를 3주 받을 수 있으며, 부성할당제(paternality quota)에 따라 출산 후 첫 6주는 어머니가 받고 전체 부모휴가기간 중 4주는 아버지가 받아야 한다(김경신 외, 2007). 또한 노르웨이의 특별현금수당계획은 돌봄선택의 자유를 위해 시작되어 국가보조금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33시간 이내로 시간제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

~3세 유아에게 지급된다(여성부, 2005 재인용).

일본의 가족단위 소득지원으로는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 지원정책 등이 있다. 이 중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장제도는 1980년대 이후 그 대상을 제한하여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적책임보다는 노동능력이나 자산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친족부양우선을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일본의 자녀양육에 대한 돌봄 지원은 소자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년에는 노동과 가족적 책임의 동시적 수행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육아·개호휴직제도가 확대·개편되었으며, 2003년에는 차세대육성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신신엔젤플랜을 중점적 시책으로 다양화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 휴게소, 아동-가정지원센터, 종합보육서비스, 지장자치단체별 육아지원 5개년 계획과 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액의 차등을 두고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보장이 아닌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돌봄지원으로서의 제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김경신 외, 2007).

일본은 2009년 3월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해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실직근로자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간 취업자와 파견근로자의 적용기준을 낮추어 1년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재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급여일수를 60일 연장시켰다. 또한 고용의 이차안전망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 구제를 위해 ‘긴급인재육성 취직지원기금’을 창설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생활지원급여금’을 지원하여 1인가구는 월 10만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월 12만엔을 최대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김명중, 2009). 일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기에 앞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의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세제제도의 개편 및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즉, 위기에 노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4. 성인자녀·중년기 및 노년기 가족의 가족위기와 정책

가.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중·노년기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금이전 프로그램으로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의 개편, 공적연금, 빈곤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퇴역군인관련 급여(Social Security, SSI, and Veterans Benefits), 빈곤가구한시지원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노인돌봄정책을 통합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저소득층 노인인 메디케이드를 대상으로 Nursing Home 입소자격대상에 해당하는 중증장애 노인들에게 포괄적인 급성 및 장기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건강유지기구’인 SHMO(Socia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는 건강유지기구의 형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메디케어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입원 및 외래)와 함께 일부 만성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7). 통합서비스 차원의 노인돌봄체계를 갖춘 예로 플로리다 주는 주노인부·지역사무소·개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전달체계가 단일화 되어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가족돌봄자가 공식돌봄노동자로 등록되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장혜경 외, 2007).

나. 영국

2008년 신노동당정부에서는 실업자만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성화

를 위해 ‘worklessness’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근로지역기금(Working Neighbourhood Fund)’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 수혜자의 수가 감소하여 고용율이 높아졌다. 2009년 5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실직에 대응하기 위해 ‘Stepping up to the Challenge’를 통해 지역고용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의 활성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최영준, 2009).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케어제공체계의 재구조화는 「NHSCCA(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의 발표와 1995년의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 제정을 통해 비공식적 돌봄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보호 및 직접 지불에 관한 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제정되어 현금을 지급하였으며(김용득, 2006 재인용), 돌봄자를 위한 전략은 1999년 “National Strategy For Carers(Caring About Carers)로 제시되었다. 이후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2000)」로 강화되었으며, 돌봄자들은 환자 퇴원 후 최고 8주까지 Intermediate care services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받거나, 휴식서비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가옥·우국희, 2005 재인용).

「Carers(Equal Opportunities) Act」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으로 돌봄자들은 돌봄 책임과 다른 역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돌봄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돌봄자 수당(Carer's Allowance)을 통한 재정적 지원, 일시휴가(Short-term Break 또는 Respite)를 통한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일이나 직장 관련 지원(탄력근무 또는 휴직, 긴급휴가), 교육 관련 지원 등이 있다.

다. 일본

일본의 노인돌봄 사회화는 1963년 구빈적 성격의 노인복지법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특별양호 노인홈의 규정으로 인해 보편적 대상까지 확대

되었다. 이러한 개호 욕구에 대응하고자 사회복지시설정비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 재가요양서비스 제도가 성립되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1989년에 책정된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로 일반화되었으며, 일명 ‘골드 플랜’에서는 홈헬퍼를 약 3배,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약 10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등, 재가요양서비스의 추진이 구체적인 목표로 결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신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new Gold plan)”이 시행되었다(장혜경 외, 2006).

개호보험법에 근거하여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시설과 재가서비스의 이용비 형평성 도모 및 지역 밀착형 재가 케어를 더욱 추진하여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개호서비스는 직접생활수발, 간접생활수발, 문제행동수발, 기능훈련관련행위, 의료관련행위 등 5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는 개호급부와 예방급부, 시·정·촌 특별급부로 분류되는 보험급부로 제공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직접적인 현금의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위에 개호환경이 미조성되었거나 가족의 개호가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는 예외적인 가족으로 판단하여 급부를 제공하며, 가족휴업급부제도를 통해 가족개호를 위해 휴업을 하는 피보험자에게도 급부를 지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라. 스웨덴

스웨덴의 노인정책은 노인들이 집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훌륭한 주거(Good Housing)와 이동식 주거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 홈헬프 서비스(Home Help Service)등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에서 시민으로: 장애정책을 위한 국가적인 액션플랜(From Patient to Citizen: a national action plan for disability policy)”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의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담고 있다.

노인 개혁(The Elderly Reform(Ädelreformen)이 발표되어 노인 돌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사 관련 일들과 대인서비스 케어를 제공하는 홈헬퍼, 식사 배달(Meals on Wheels), 홈넬싱케어(Home nursing care), 보조기구 대여(Assistive devices-OT/PT), 주간보호센터(Day Care)의 운영, 위급시 긴급연락책인 안전 경보(security alarm) 등을 지원한다. 스웨덴은 노인의 기능적 장애 정도뿐 아니라 주거조건과 사회적 네트워크, 다른 사람의 도움 정도와 개인의 적응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노인돌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마. 호주

호주는 연방정부에서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주정부의 산하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이양하고 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요원도 연방, 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전담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s)에서는 수용, 지원, 재활서비스를, 사기업(Private Enterprise)에서는 수용, 지원, 보장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양주간부과정정책연수, 2005).

최근 호주의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간호인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가 증가하고 있다. CACP는 노인의 개별욕구에 따라 돌봄의 통합적 지원과 계획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며, 세탁, 식사준비, 이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EACH는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24시간 가정에서 간호를 하는 지역사회간호체계이다(호주 보건고령화부, 2009). 또한 연방정부 User Pay System의 한 형태인 Extra Service Aged Care Facility라는 고급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다.²⁸⁾

제3절 시사점

1. 국내 법·제도

가. 전체 가족생애주기

전 가족생애주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족해체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과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지역사회 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혼예방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나, 동 법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기본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 의무화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사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여 이혼 후의 사후개입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의이혼시 자녀양육협의를 통한 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서 내용이 자녀입장에서 아동의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거나 정서적인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지 못하며, 기본양육의 책임을 협의하기에도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해체가족은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지원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취약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대다수의 해체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어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도 및 권장이 부재하여 예방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위기가정 혹은 위기직면 가정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재폭력발생 가정의 조기발견과 초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

28) 다음카페(<http://blog.daum.net/happlworldhappy1ife/8423308>)

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은 사후개입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치료보호 및 긴급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발 및 예방 측면에서 가해자의 처벌 혹은 징계, 교육에 대한 규정이나 예시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의무제의 강화, 신고자의 신분보호,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 체계의 완비가 필요하다.

나. 신혼 및 자녀출산기

신혼 및 자녀출산기의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성기의 신혼기 부부 및 출산을 앞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하며, 대다수 저출산 예방책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은 인구문제와 연결되어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은 최근의 현상에만 초점을 두는 임시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출산관련 이슈는 정부관련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므로 거버넌스적 접근인 민간기관, 기업, 지역사회, 정부 부처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결혼 적응과정 관련 정책이나 동 주기의 부채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의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대상자가 중복되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미비하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또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성격이 비슷하여 법들 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동 주기의 돌봄 노동과 관련된 법안들은 대다수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육아의 어려움 혹은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개입적 측면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봄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영역들(한부모가정의 돌봄, 맞벌이가정의 돌봄 등)을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녀의 돌봄노동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과 돌봄노동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육아휴직제, 배우자 육아휴직제 등의 실시는 ‘권고’의 성격이 높아 피고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육아휴직 등의 제도 중 경제위기시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또한 제도의 시행을 따르는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있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어 명시적인 정책만이 존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부와 여성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어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취학 자녀기 가족의 경제위기 하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비 부담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취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단위의 정책은 전무하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상담 프로그램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의 필요도에 비해 학교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동 주기 가족의 교육부담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시작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학기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성, 건강, 안전 등을 보호·예방하기 위한 One-stop Service System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취약 자녀기 가족의 특성상 부모와 자녀는 세대간의 격차를 경험하며, 특히 경제위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면, 동 주기의 가족은 위기 및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동 주기 가족 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이는 취약기 아동 및 가족관련 지원업무의 중복 혹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복사업의 통합과 협동체제 등 사업의 재편이 요구된다.

라. 성인자녀 및 중년기

성인자녀 및 중년기의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적 측면의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위기가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이용에 대한 거시적인 조항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의무 등에 관해 명시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은 성년기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안이나 서비스 제공기간이 짧고 전담인력의 부재 및 부족현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의 회생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낮다.

둘째,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 중에서 성년기 자녀의 실업상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가족 부양 측면에서 미혼 성년기 자녀가 우선 취업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년기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 위기를 맞아 저하된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성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간의 가족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개입적인 제도의 실시를 통해 위기가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에 처한 가족의 정서 및 관계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인 시스템과 사후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부처에서 경제변화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은 현금 혹은 현물을 지급하거나, 취업정보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동 서비스의 수요자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기록이 통합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인자녀의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이는 경제위기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되어 실업해소, 결혼자금 마련, 주택제공 등의 임기적인 정책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형성에 대한 미혼자들의 낮은 욕구 또는 기대이며, 가족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등의 부족에서부터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임시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미혼성인 남녀의 결혼지연 또는 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결혼문화를 고려할 때 결혼과 가족생활의 중요성,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등과 같은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식변화에 중점을 둔 제도시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노년기

노년기의 가족위기 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가족관련 법은 노인을 돌보는 지원과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그 외의 법들은 직접적으로 노인 돌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용기 회제공 및 정보의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자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법안이나 제도 마련이 없어서 위기 하에 노인 돌봄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노년기 빈곤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재정안정성,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동 주기 가족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지원만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서는 가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으며, 특히 부양을 하고 있는 기타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방식은 노인의 생활수준이나 동거가족원 그리고 부양의 주된 가족원의 돌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부재와 3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하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추 기관(Control Tower)을 설치하고, 전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국외 법·제도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외의 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가족생애주기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족해체 관련 정책으로는 이혼 전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이 있으며, 그 밖에 별거 기간제를 통한 숙려 시기지정, 가정해체위기 후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판사 혹은 경찰권의 강제적인 집행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대책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매우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주거지원을 실제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여성의 자활을 모색하였으며, 폭력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화하였다.

셋째,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관련 법·제도를 보면 미국은 인구장려차원에서의 출산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신생아출산 감소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저출산현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다량의 인구유입 국가이기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가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아동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혼자를 위한 결혼장려 정책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들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가족형성기에 가족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건강한 가족만들기를 지역사회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결혼장려를 위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

있지만,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실시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출산율이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출산장려 차원이 아닌 자녀 돌봄의 국가부담을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출산환경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저출산위기를 심각하게 맞이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기별로 보완되면서 시행되었다. 근래에 실시된 소자화대책은 앤젤 플랜, 신앤젤플랜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현상을 극복한 프랑스와는 달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저출산에 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인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쌍둥이자녀를 둔 가정, 입양가정 및 미혼모 가정 모두가 출산 및 양육에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즉,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정책이 일관성과 보편성을 갖추므로 인해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미취학 및 취학 자녀가 가족 관련 자녀 돌봄정책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의 차등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돌봄지원을 위해 가정의 건강성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제도와 부성이 강조되어진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즉, 정부부처간과 지역사회 내에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지역 내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한 돌봄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었다. 영국은 사회복지개혁 실패 이후 ‘worklessnes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예방적 성향을 강조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및 아동관련 명시적 정책은 미미하며, 어머니와 아동이 복지수혜의 주요대상이다(유럽연합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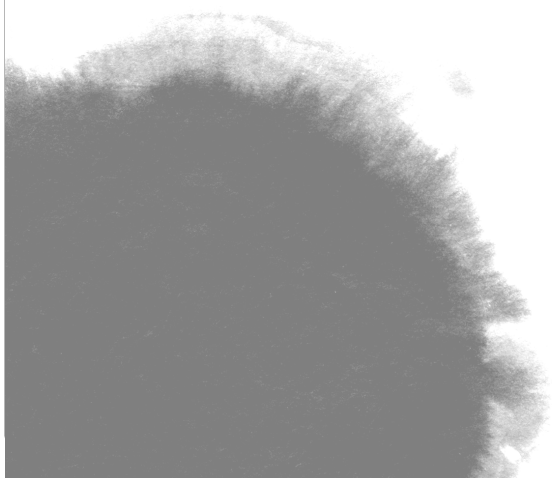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스웨덴은 중앙정부와 지방사무소의 돌봄 지원책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자녀 돌봄 등의 보호영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다. 호주는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

들기 추진전략(SFCS)’와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자녀돌봄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 출산장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출산시 현금지급, 출산휴가 등의 출산환경마련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여섯째, 성인자녀·중년 및 노년기 가족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무직자, 무거주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들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급속히 악화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복지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주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노인돌봄정책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일화, 예산재원의 다원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돌봄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담당하되,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및 통합적 서비스 기관 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자녀 돌봄이 사회화되고 있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골드플랜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으나 돌봄 지원을 위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골드플랜은 개호보험제도로 보완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보건의료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노인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반면, 영국, 호주, 스웨덴의 중·노년기 정책들은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개인욕구별 지역사회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가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05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제5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가 가족생애주기별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증적 방법으로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한 것은 기존 통계자료가 가족생애주기별로 구조화되어 산출된 통계량이 아니므로 사례조사를 통하여 가족생애주기별 접근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생활, 경제생활, 가족관계, 가족해체의 심화, 자녀양육생활, 결혼과 출산의 기피와 연기 등을 중심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를 살펴보았다.

제1 절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1. 가족생애주기별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가. 취업생활의 변화

1997년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다량 발생하였으나, 2008년 경제위기는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일자리 긴축을 야기하여 지속적인 청년실업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업증가가 예상되어 중산층이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는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 그 영향 및 파장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생활의 변화를 고용 지표인 취업률 및 실업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률은 1999년 57.5%에서 2007년 59.1%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2008년에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5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실업률은 1999년 5.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3.1%수준을 보이다 2008년에 3.3%로 0.2%p 증가하였으며, 동 수치는 2009년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은 가족생애주기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가족생애주기별 취업생활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31.7세, 여자 28.3세이므로 20대 연령층이 신혼 및 자녀출산기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률은 20대 연령층의 경우 7.4%로 2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며, 전체평균에 비해서도 2배 높은 수준이어서 청년층의 실업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30~50대의 경우 실업률은 2.1~3.4%로 동 시기는 자녀양육시기로 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등의 지출이 많아 신혼 및 자녀출산기 또는 노년기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은 그 충격이 배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 연도 및 연령별 고용변화

구분	(단위: %)									
	1999		2005		2007		2008		2009	
	취업률	실업률	취업률	실업률	취업률	실업률	취업률	실업률	취업률	실업률
전체	57.5	5.2	59.0	3.5	59.1	3.1	58.4	3.3	59.1	3.3
15~19세	10.4	19.0	7.4	15.0	6.0	11.8	5.1	19.0	4.9	13.5
20~29세	59.3	9.4	60.7	7.5	59.3	7.1	57.8	7.0	58.4	7.4
30~39세	72.4	3.6	73.0	3.1	73.4	2.9	72.4	3.1	71.8	3.4
40~49세	75.8	3.8	77.0	2.2	78.4	1.9	78.3	2.1	78.1	2.3
50~59세	65.9	3.8	67.4	2.3	69.3	1.7	69.6	2.3	71.4	2.1
60세 이상	34.5	2.2	33.6	1.1	34.9	1.4	34.1	1.7	37.6	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각 연도.

경제위기는 고용변화와 함께 근로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 형태는 1999년 67.4%에서 2007년 63.3%로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1999년 32.6%였고, 2007년 36.7%까지 증가하다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기보다는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보다 30대 연령층에서 정규직의 근로형태가 높아 안정세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분포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녀양육, 재산증식 등으로 가계지출이 급증되는 시기인 40대 이상부터는 오히려 정규직 분포가 낮아지고, 비정규직 분포가 높아지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을 보인다. 60대 이상의 노년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5-2〉 연도 및 연령별 근로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9							
정규	67.4	37.7	70.4	73.7	68.9	60.1	34.1
비정규	32.6	62.3	29.6	26.3	31.1	39.9	65.9
계(수)	100.0(14,148)	100.0(268)	100.0(3,831)	100.0(4,320)	100.0(3,394)	100.0(1,648)	100.0(690)
2005							
정규	63.4	34.7	78.3	69.6	63.7	57.2	33.4
비정규	36.6	65.3	21.7	30.4	36.3	42.8	66.6
계(수)	100.0(14,969)	100.0(259)	100.0(3,772)	100.0(4,516)	100.0(3,759)	100.0(1,869)	100.0(815)
2007							
정규	63.3	32.9	67.8	69.4	64.8	56.1	31.5
비정규	36.7	67.1	32.2	30.6	35.2	43.9	68.5
계(수)	100.0(15,731)	100.0(158)	100.0(3,669)	100.0(4,659)	100.0(4,127)	100.0(2,137)	100.0(982)
2008							
정규	64.9	33.5	68.2	72.5	65.3	58.8	32.7
비정규	35.1	66.5	31.8	27.5	34.7	41.2	67.3
계(수)	100.0(15,994)	100.0(164)	100.0(3,570)	100.0(4,757)	100.0(4,161)	100.0(2,339)	100.0(1,004)
2009							
정규	66.6	30.2	69.4	74.7	68.1	60.5	33.0
비정규	33.4	69.8	30.6	25.3	31.9	39.5	67.0
계(수)	100.0(16,076)	100.0(129)	100.0(3,438)	100.0(4,722)	100.0(4,269)	100.0(2,479)	100.0(1,04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각 연도.

나. 경제생활의 변화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를 1998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의 IMF 여파로 인해 생활여건이 ‘나빠졌다’는 비율은 45.4%로 나타난 반면,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여건의 변화는 ‘나빠졌다’는 비율이 24.8%이었고, ‘변화 없음’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분 실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또한 조금씩 회복추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5-3〉 연도 및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

(단위: %)

구분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없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모르겠음	계
1998	4.5	23.1	26.2	28.7	16.7	0.8	100.0
15~19세	2.5	17.5	45.9	26.5	5.2	2.3	100.0
20~24세	5.7	27.2	27.9	24.7	11.7	2.8	100.0
25~29세	8.8	28.2	25.8	24.4	11.2	1.6	100.0
30~34세	7.0	30.3	23.9	25.0	13.1	0.9	100.0
35~39세	6.1	28.8	22.1	26.1	16.7	0.3	100.0
40~44세	4.2	23.6	22.6	28.5	20.5	0.5	100.0
45~49세	3.1	20.3	24.7	31.8	19.5	0.5	100.0
50~54세	2.8	19.1	25.0	32.7	20.0	0.3	100.0
55~59세	3.2	19.6	28.0	31.1	17.7	0.4	100.0
60~64세	1.7	17.0	31.3	32.4	17.1	0.4	100.0
65세 이상	1.6	12.3	37.2	31.5	15.5	1.9	100.0
2009	4.7	28.5	41.9	18.0	6.8	-	100.0
15~19세	4.8	25.5	53.0	12.2	4.4	-	100.0
20~29세	4.8	31.1	43.1	15.3	5.7	-	100.0
30~39세	5.5	33.2	38.1	16.7	6.6	-	100.0
40~49세	4.9	29.3	38.6	19.3	7.9	-	100.0
50~59세	4.3	27.4	39.7	20.6	8.0	-	100.0
60세 이상	4.1	22.5	45.9	20.9	6.7	-	100.0
65세 이상	4.2	21.9	47.0	20.3	6.6	-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2009.

연령별로는 1998년에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09년에도 생활여건이 ‘나빠졌다’는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훨씬 낮았다. ‘변화 없다’는 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높았다. 이는 타 연령층에 비해서 실업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여건의 부정적인 변화는 신혼 및 자녀출산기보다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기, 성인자녀 및 중년기, 노년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시기에 경제적인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계는 소비와 지출로 구성되며, 이들 지표를 통하여 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표 5-4>와 같이 1996년 평균 소득은 약 3백 50만원에서 2005년 약 3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07년 다소 증가하다 200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출규모는 1996년 약 3백 20만원 수준으로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05년에는 지출규모가 약 190만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2007년에는 지출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규모에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IMF 이후 지출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긴축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에서 40대와 50대 연령층이 높은 편이었으며, 60세 이상 노년기에서는 소득이 절반에서 3분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출규모는 자녀출산부터 양육기인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지출이 소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부터 지출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소득 대비 지출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노년기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5-4〉 연도 및 연령별 소득 및 지출

(단위: 천원)

구분	1996		2005		2007		2008		2009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전체	3,462	3,222	2,949	1,861	3,095	1,914	3,073	1,880	3,051	1,954
30세 미만	2,846	2,750	-	-	-	-	-	-	-	-
30~39세	3,626	3,366	2,933	1,867	3,252	2,057	3,164	1,928	3,180	1,941
40~49세	3,493	3,278	3,246	2,092	3,291	2,265	3,375	2,100	3,396	2,296
50~59세	3,772	3,542	3,226	1,891	3,500	1,977	3,394	1,951	3,335	2,030
60세 이상	2,988	2,482	1,920	1,265	2,041	1,381	1,983	1,307	1,899	1,62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수지통계」, 각 연도.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경제생활 타격 여부와 가계지출 감소 여부를 살펴보면, <표 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경제생활이 타격을 경험한 비율은 70.3%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인 장·노년층이 8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연령층이 72.6%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위기가 경제생활에 미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가계지출이 감소한 비율은 76.3%로 3분 2 이상이 여기에 속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가족이 가계지출을 감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세 미만, 30대, 40대 연령의 순으로 나타나서 가계지출은 지출동기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노년기 가족의 경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등의 자녀양육기 가족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5〉 연령별 경제위기로 인한 실제적인 타격 여부 및 가계지출 감소 여부

(단위: %)

구분	실제적인 타격 경험 여부			가계지출 감소 여부		
	예	아니오	계(수)	감소	감소하지 않음	계(수)
전체	70.3	29.7	100.0(762)	76.3	23.7	100.0(761)
30세 미만	63.6	36.4	100.0(44)	79.6	20.5	100.0(44)
30~40세	68.9	31.1	100.0(283)	76.7	23.3	100.0(283)
41~50세	72.6	27.4	100.0(328)	72.6	27.4	100.0(328)
51세 이상	80.4	19.6	100.0(107)	85.9	14.2	100.0(106)

자료: 송혜림 외, 「경제위기와 가정」,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2009 재구성

주택은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택소유율은 1996년 58.2%에서 2009년에는 57.1%로 13년간 연속적인 증감의 패턴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각 연도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30세 이하, 즉, 신혼 및 자녀출산기에서는 과반수 미만의 주택소유율을 보이다가 40대 이후부터 과반수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50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주택소유율을 보이나, 자녀양육기인 40대 연령층에서 주택소유가 과반수 정도에 불과하여 가족의 주거환경과 경제수준이 상당히 취약한 정도임을 말해준다.

〈표 5-6〉 연도 및 연령별 주택소유가구 비율

구분	(단위: %)				
	1996 ¹⁾	2000 ²⁾	2003 ³⁾	2006 ⁴⁾	2009 ⁵⁾
전체	58.2	51.3	59.3	56.7	57.1
30세 미만	25.9	9.5	14.8	13.2	13.7
30~39세	46.0	35.4	43.4	42.6	42.7
40~49세	67.9	58.2	61.7	58.6	56.1
50~59세	79.6	70.8	73.8	70.6	68.2
60세 이상	80.7	69.8	75.8	71.0	68.1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수지통계」, 각 연도.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0.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4)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5)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IMF 경제위기 이후 영향을 받았던 1999년과 최근 경제위기 시기인 2009년을 중심으로 가구주의 연령별로 부채비율과 부채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비율은 48.0%로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채이유는 ‘주택마련’과 ‘사업자금’, ‘사업실패’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40대 초반에는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4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5세 이상인 노년기에는 26.3%로 가장 낮았다. 이를 가족생애주기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가족형성기인 신혼 및 출산자녀기보다 미

취학 자녀기에서 취학자녀기로 올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으로 가계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성인자녀 및 중년기와 노년기에 오면서 자녀양육 부담 해소로 가계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부채이유를 보면, 15~34세 연령층인 신혼 및 자녀출산기에는 ‘주택마련’, ‘내구재 구입’, 대출 등으로 인한 ‘이자지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동 시기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부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5~49세인 자녀양육기에는 자녀교육을 비롯하여 주택마련, 사업자금 등으로 인한 부채가 높아서 자녀양육 부담 외에 주거 및 일자리 부담도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인 노년기에는 사업자금, 질병 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연령별 부채비율 및 이유: 1999년

(단위: %)

구분	부채비율	부채이유								
		자녀교육	주택마련	내구재구입	결혼·상제비	질병·재난	사업자금	사업실패	이자지급	기타
전체	48.0	6.7	31.6	4.5	2.7	4.8	24.7	14.1	6.3	4.7
15~19세	4.2	-	29.7	21.1	-	-	-	17.0	12.5	19.7
20~24세	13.9	0.6	26.5	23.4	2.5	4.9	9.9	6.8	10.8	14.6
25~29세	32.7	0.6	32.7	16.2	6.0	2.6	14.1	11.1	8.1	8.7
30~34세	51.3	1.1	39.8	8.6	2.5	2.4	20.2	14.0	6.6	4.6
35~39세	57.2	1.4	39.7	4.4	0.5	3.4	25.0	15.8	5.9	4.1
40~44세	59.1	4.4	33.1	3.8	0.3	4.0	27.0	16.7	6.5	4.1
45~49세	57.7	11.9	27.7	2.6	0.6	4.8	26.6	16.3	6.8	2.8
50~54세	53.8	17.9	24.1	2.6	3.3	4.9	23.5	14.1	5.8	3.8
55~59세	48.4	12.6	27.0	1.1	6.6	5.6	27.2	11.0	5.8	3.2
60~64세	41.4	9.1	22.2	1.8	8.1	11.6	27.3	9.1	5.6	5.3
65세 이상	26.3	5.3	22.7	1.0	7.2	10.1	29.1	8.5	5.4	10.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수지통계」, 각 연도.

2009년 우리나라 기혼가구의 부채비율은 42.3%로 1999년 48.0%에 비해 낮아졌으나, 두 개년도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진다. 부채이유는 ‘주거비/주택마련’이 49.1%로 가장 높

았고, 다음은 ‘사업자금(15.9%)’, ‘생계비(14.9%)’, ‘기타(11.6%)’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부채비율은 15~29세를 제외하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999년과는 달리 30대와 40대에서 부채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성인자녀 및 중년기와 노년기로 오면서 부채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예상된다. 한편, 부채이유로는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30세 미만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취학연령 이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부채 발생이 높았다.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인 20대와 60대 이상의 노년기에는 ‘생계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에서는 ‘사업자금’과 ‘교육비’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부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별로 부채비율과 부채이유가 다르게 나타나서 가족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8〉 가구주 연령별 부채비율 및 이유: 2009년

(단위: %, 명)

구분	부채비율	부채이유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수)
전체	42.3	14.9	49.1	4.8	15.9	2.4	1.2	11.6	100.0(6,351)
15~29세	55.5	18.2	53.8	8.9	4.7	0.4	0.4	13.6	100.0(236)
30~39세	44.2	13.8	64.1	0.7	10.9	1.0	0.1	9.4	100.0(1,409)
40~49세	47.0	14.9	48.7	5.2	19.5	1.3	0.3	10.2	100.0(1,949)
50~59세	52.8	15.0	39.6	9.9	20.0	2.2	1.5	11.9	100.0(1,433)
60세 이상	57.8	15.3	43.4	2.6	13.4	6.3	3.6	15.4	100.0(1,325)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다.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면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비율이 55.9%로 과반수 이상

해당되었고,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경우도 33.5%이었다. 반면,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늘어난 경우는 26.2%이었고, 부부싸움이 늘었다는 경우도 21.5%로 5분 1 정도 해당되었다. 그리고 10% 미만이나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5-9〉 지난 1년간 가족관계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수)
부부싸움이 늘었다	34.2	38.6	18.8	2.7	3.7	100.0(928)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늘었다	31.0	37.7	22.5	3.7	3.4	100.0(928)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 졌다	44.5	36.7	11.2	1.9	3.8	100.0(928)
결속력이 강해졌다	12.4	38.7	42.1	13.8	5.8	100.0(928)
가족의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9.8	23.0	35.9	28.3	5.2	100.0(928)
이혼을 생각했다	70.5	18.1	5.3	2.0	6.7	100.0(928)

자료: 송혜림 외, 『경제위기와 가정』,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표 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5점 만점에 2.66점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긍정적인 변화는 30대 연령층이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세 미만과 40대 연령층이 각 2.66점으로 동일하였고 60세 이상의 노년기 가족이 2.44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정적인 변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서 가족생애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탄력도가 떨어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인자녀 및 중년기와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0〉 연령별 지난 1년간 가족관계 변화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분석수)
전체	1.73	2.66	(928)
30세 미만	1.61	2.66	(928)
30~40세	1.72	2.71	(928)
41~50세	1.75	2.66	(928)
51세 이상	1.76	2.44	(928)

자료: 송혜림 외, 『경제위기와 가정』,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경제위기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여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표 5-11>과 같이 2007년 1년간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 발생’은 33.1%이었고,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발생’은 27.1%로 다소 낮았다. 연령별로는 ‘부인폭력’은 신혼 및 자녀출산기와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에 높은 수준을 보여 동 가족생애주기에 부부간에 갈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며, 성인자녀 및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폭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폭력’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폭력 예방 및 사후개입정책은 갈등의 가능성 높은 신혼 및 자녀양육기에 집중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김승권 외(2008)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발생원인은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잘못’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경제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잘못’이 많은 반면, 40대는 ‘경제문제’, 50대 이상은 ‘성격차이’, ‘술버릇’ 등으로 나타났다.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발생원인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 성격의 폭력이 과반수이상(부인: 58.7%, 남편: 6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5-11〉 연령별 부부폭력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부인폭력		남편폭력	
	발생률	(분석수)	발생률	(분석수)
전체	33.1	(5,976)	27.1	(4,114)
30세 미만	25.7	(413)	22.9	(144)
30~39세	35.3	(2,099)	29.9	(1,254)
40~49세	36.6	(1,895)	29.6	(1,377)
50~64세	28.0	(1,570)	22.4	(1,339)

자료: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과 최근 경제위기 시기인 2008년을 중심으로 가구주의 연령별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12>와 같다. 자녀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비율은 1998년 65.2%에서 2008년 72.7%로 10년간 7.5%p가 높아졌으며, 반대로 불만족하는 비율은 2.0%p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반대로 불만족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2008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5-12〉 연도 및 연령별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1998		2008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전체	65.2	5.5	72.7	3.5
15~19세	88.3	-		
20~24세	85.6	0.1	90.2	1.1
25~29세	84.4	1.0		
30~34세	82.4	1.9		
35~39세	75.8	3.3	85.5	1.3
40~44세	67.2	5.6		
45~49세	60.5	6.2	75.3	3.3
50~54세	56.6	7.4		
55~59세	54.0	7.8	67.2	3.7
60~64세	52.3	8.1	61.0 ¹⁾	5.9 ¹⁾
65세 이상	48.0	9.7	59.9	6.6

주: 1) 60세 이상을 말함.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2008.

즉, 가족생애주기가 미취학 자녀기에서 취학 자녀기, 그리고 성인자녀 및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아져서 자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자녀연령층별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와 자녀관계 만족도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대화 정도’를 만족하는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들이 부모 의견 또는 기대에 충족하는 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순으로 높았다. 부모의 연령별로는 ‘자녀와의 대화 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들이 부모 의견 또는 기대에 충족 정도’는 15~29세와 30~39세 연령층인 미취학과 취학 자녀기에서 높았으며, 성인자녀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족생애주기별로 자녀관계 만족도는 전체와 항목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3〉 연령별 자녀관계 만족도: 2009년

(단위: %, 명)

구분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들의 부모 의견·기대에 충족 정도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전체	66.2	42.1	53.5	62.6
15~29세	68.1	49.6	55.5	71.6
30~39세	71.6	54.2	60.3	72.3
40~49세	64.2	41.4	49.5	60.6
50~59세	63.8	33.6	52.1	57.3
60~64세	64.7	35.7	53.5	57.5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라. 가족해체의 심화

경제위기는 가족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이혼, 가출, 자살 등 가족해체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연도별로 이혼율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인구 천명당 2.5명이 이혼하였고, 동 수준은 지속되다가 2005년에 2.6명으로 증가하다 2007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5-14〉 연도별 이혼율의 변화

(단위: 건, 천명당)

구분	1998	2000	2005	2007	2008
이혼건수	116,294	119,455	128,035	124,072	116,535
조이혼율	2.5	2.5	2.6	2.5	2.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연령별로 이혼비율을 보면 신혼 및 자녀출산기부터 미취학 및 취학 자녀 기인 자녀 양육기에 높은 분포를 보이다가 성인자녀 및 중년기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연도별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혼예방 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 중 신혼기와 자녀양육기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15〉 연령별 이혼비용

(단위: 건, 천명당)

구분	2006	2007	2008
30세 미만	6.8	6.4	5.8
30~39세	36.1	34.3	30.7
40~49세	37.4	37.8	37.7
50~59세	14.5	15.6	18.5
60세 이상	5.2	5.9	7.3
계(수)	100.0(124,524)	100.0(124,072)	100.0(116,53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10.3%이었고, 자살충동을 경험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8.2%로 과반수가 해당되었고, ‘가정불화’도 22.2%로 높아서 경제위기가 자살과 관련이 높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가족을 형성한 시기에 해당되는 30대에서 중년기인 50대에 이르기까지 10.5~12.7%로 높은 편이었으며, 주된 이유로는 20대 연령층은 ‘직장문제가’ 높은 데 반해 30대는 ‘가정불화’, 40대와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서 가족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5-16〉 연령별 자살 충동여부 및 이유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경제적 어려움	질환·장애	직장문제	가정불화	기타	
전체	48.2	8.2	6.0	15.4	22.2	89.7
15~19세	6.2	1.4	1.0	15.5	75.9	89.9
20~29세	32.5	3.5	18.6	11.0	34.4	91.9
30~39세	5.3	4.4	6.6	19.2	64.5	89.5
40~49세	62.4	4.7	4.5	17.2	11.2	87.3
50~59세	58.6	11.0	3.8	14.5	12.1	88.4
60세 이상	41.1	26.5	0.9	11.2	20.3	91.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망원인통계」, 2008.

자살건수는 1997년에 6천 건에서 2005년에는 12천 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13천 건에 이르고 있다.

〈표 5-17〉 연도별 자살 통계

(단위: 건)

구분	1997	2005	2007	2008
전체	6,068	12,011	12,174	12,858
남성	4,198	8,026	7,747	8,260
여성	1,870	3,985	4,427	4,59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마. 자녀양육의 변화

우리나라 가계경제 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김승권 외(2003; 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에 전체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용은 46.8%이고, 소비대비는 57.4%로 전체 가계지출 중에서 자녀양육비용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6년의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8〉 연도별 평균 자녀양육비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자녀양육비율	소비대비 자녀양육비율	(분석대상수)
2003	290.2	236.5	135.8	46.8	57.4	(8,190)
2006	341.4	282.2	158.5	46.4	56.0	(6,787)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3.
 2)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3)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이와 같이 가계경제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양육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출감소 품목으로 1순위에서는 대다수가 외식비, 여가비, 식비이었고 자녀교육비는 7.2%에 불과하였으나 3순위에서는 12.0%로 지출감소 대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또는 사교육부터 기본교육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인구자질 측면에서 자녀양육기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9〉 지출감소 항목별 순위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식비	15.2	12.7	19.4
여가비	24.8	32.9	14.9
자녀교육비	7.2	5.0	12.0
의료비	0.9	3.7	3.1
주거비	4.2	6.8	9.2
교통·통신비	3.5	7.1	14.6
경조사비	3.8	7.3	11.1
외식비	39.4	22.1	13.9
기타	1.0	2.4	1.9
계(수)	100.0(709)	100.0(675)	100.0(65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통계』, 각 연도.

한편,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자녀양육형태는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54.4%로 과반수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은 학원이 39.5%로 높았고, 이외에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 등에서 일부 아동이 양육되었다. 특히 집에서 돌보는 형태 중에 어른에게 보호를 받는 비율은 78.4%이었으나 혼자 방치

되는 비율도 21.6%나 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취학자녀기의 자녀양육형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30~39세 연령층은 전체보다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에 보내는 비율은 높은 반면, 40~49세 연령층은 학원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 집에서 혼자 방치되는 자녀는 40~49세 연령층에서 많았다. 이는 경제위기 하에서 모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혼자 방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취학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방과후 자녀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0〉 연령별 방과 후 자녀양육형태: 2007년

(단위: %, 명)

구분	집					학원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	기타	계
	소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가사도우미 · 이웃사람	아동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전체	54.4	(61.0)	(16.2)	(1.2)	(21.6)	39.5	5.8	0.3	100.0
가구주 연령									
30~39세	53.8	(67.2)	(12.9)	(0.9)	(19.0)	38.8	7.2	0.2	100.0
40~49세	54.0	(61.1)	(12.7)	(1.6)	(24.6)	40.9	4.7	0.4	100.0
50~59세	53.0	(52.7)	(26.0)	(-)	(21.3)	41.5	5.5	-	100.0
60세 이상	64.8	(13.2)	(74.7)	(-)	(12.2)	28.7	6.0	0.5	100.0
65세 이상	66.0	(11.8)	(72.6)	(-)	(15.6)	26.7	6.7	0.5	100.0
모의 취업여부 및 형태									
전일제	41.7	(21.2)	(32.4)	(3.1)	(43.4)	50.3	7.4	0.5	100.0
시간제	54.7	(59.5)	(14.6)	(0.6)	(25.2)	37.3	7.9	0.1	100.0
전업주부	66.6	(92.4)	(2.3)	(0.1)	(5.2)	29.9	3.4	0.1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육통계」, 2007.

모의 취업여부 및 형태에 따른 자녀양육형태는 모가 전일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집에서 보호하는 형태보다 학원이 높았고,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에 보내는 비율도 전체보다 높았다. 한편, 시간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집에서 보호하는 형태가 높았고,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에 보내는 비율 또한 높았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경우는 집에서 보호하는 비율이 전체를 상회하였으며 학원과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에 보내는 비

율은 전체보다 저조하였다. 특히 자녀 혼자 방치되는 비율은 모가 전일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시간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순으로 높아서 취학 자녀가 가족의 경우 경제위기 발생은 자녀 방임이 주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아동양육상의 어려움으로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77.6%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10% 미만이나 방과후 지도,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30대 연령층에서는 정서, 행동지도의 어려움과 방과후 지도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주거공간의 협소와 성격 또는 학습부진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전체 가족생애주기별로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취학 자녀기부터 취학 자녀기의 경우 그 정도가 높았다. 또한 미취학 자녀기에는 정서·행동지도, 방과후 지도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나, 취학자녀기 또는 성인자녀기로 오면서 주거공간 협소 또는 성격·학습부진이 주요한 어려움이었다.

〈표 5-21〉 아동양육의 어려움: 2007년

(단위: %, 명)

구분	사교육비·양육비용 부담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성격·학습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	정서·행동 지도 어려움	자녀돌봄 및 사회생활병행 어려움	기타	계
전체	77.6	5.1	2.8	0.9	3.7	9.3	0.5	100.0
30~39세	78.5	4.6	1.9	0.8	4.1	9.7	0.4	100.0
40~49세	77.9	5.2	2.9	0.9	3.4	9.1	0.6	100.0
50~59세	75.8	5.7	5.3	0.7	2.6	8.8	1.1	100.0
60세 이상	68.2	8.1	8.4	1.3	5.2	8.3	0.5	100.0
65세 이상	68.1	6.1	10.5	1.8	3.0	10.5	-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육통계」, 2007.

바. 결혼과 출산의 기피와 연기

경제위기는 결혼과 출산의 기피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 조혼인율은 인구 천명당 7.0에서 2005년에는 6.5로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7.0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인구 천명당 6.6으로 감소하여 2007년의 경제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삼식 외(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녀가 결혼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등이 많았다. 출산 또한 2000년에 인구 천명당 13.3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감소하다 2007년에 1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인구 천명당 9.4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5-22〉 연도별 혼인율 및 출산율의 변화

(단위: 건, 천명)				
구분	2000	2005	2007	2008
혼인건수	332,090	314,304	343,559	327,715
조혼인율	7.0	6.5	7.0	6.6
출생건수	634,501	435,031	493,189	465,892
조출생률	13.3	8.9	10.0	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 살펴본 가족생애주기 이론을 근거로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주기별 발달과업이 각 단계에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가족위기로 전제하여,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15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근의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유배우 부부이다. 이들을 가족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 미취학 자녀기 가족, 취학 자녀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의 각 3가구를 직접 면접하였다.

가.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특성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5-23>과 같다.

<표 5-23> 사례조사 대상자 일반특성

가족생애주기		일반특성			
		연령	학력·취업	월소득·주거	자녀수
신혼 및 자녀 출산기	가족 1	• 남편: 36세 • 부인: 34세	• 남편: 대졸, 개인사업 운영 및 외국회사 근무 • 부인: 대졸, 포털사이트 회사 근무	• 소득: 500만원(비고정) • 전세(아파트)	• 임신 중
	가족 2	• 남편: 30세 • 부인: 28세	• 남편: 대졸, 통신기기 판 매업 종사 • 부인: 대졸, 항공사 근무	• 소득: 450만원 • 전세(아파트)	• 없음
	가족 3	• 남편: 31세 • 부인: 30세	• 남편: 대졸, 구직활동 중 • 부인: 대졸, 모자 디자이너	• 소득: 180만원 • 월세(다세대주택)	• 없음
미취학 자녀기	가족 4	• 남편: 35세 • 부인: 32세	• 남편: 대졸, 사진관 운영 • 부인: 대졸, 통신회사 근무	• 소득: 300만원(비고정) • 자가(아파트)	• 1명
	가족 5	• 남편: 34세 • 부인: 34세	• 남편: 대졸, 대기업 근무 • 부인: 대졸, 주부	• 소득: 350만원 • 전세(아파트)	• 2명
	가족 6	• 남편: 38세 • 부인: 36세	• 남편: 대졸, 식당 근무 • 부인: 고졸, 주부(구직활동 중)	• 소득: 100만원 • 월세(다세대주택)	• 1명
취학 자녀기	가족 7	• 남편: 46세 • 부인: 44세	• 남편: 대졸, 아동복매장 운영 • 부인: 대졸, 아동복매장 운영	• 소득: 170만원(비고정) • 전세(다세대주택)	• 2명
	가족 8	• 남편: 45세 • 부인: 42세	• 남편: 대졸, 중소기업 근무 • 부인: 대졸, 주부	• 소득: 300만원 • 전세(아파트)	• 2명
	가족 9	• 남편: 48세 • 부인: 47세	• 남편: 대졸, 은행 근무 • 부인: 대졸, 주부	• 소득: 500만원 • 자가(아파트)	• 2명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10	• 남편: 63세 • 부인: 61세	• 남편: 대졸, 중고차매매소 근무 • 부인: 고졸, 주부	• 소득: 150만원 • 전세(아파트)	• 4명
	가족 11	• 남편: 66세 • 부인: 62세	• 남편: 대졸, 은퇴 • 부인: 대졸, 주부	• 소득: 250만원 • 자가(아파트)	• 2명
	가족 12	• 남편: 59세 • 부인: 53세	• 남편: 대졸, 자영업 • 부인: 고졸, 주부	• 소득: 170만원 • 자가(아파트)	• 1명
노년기	가족 13	• 남편: 71세 • 부인: 64세	• 남편: 대졸, 은퇴 • 부인: 고졸, 주부	• 소득: 230만원 • 자가(아파트)	• 2명
	가족 14	• 남편: 73세 • 부인: 71세	• 남편: 고졸, 주차장 관리원 • 부인: 중졸, 산후관리원 근무	• 월소득: 180만원 • 월세(다세대주택)	• 2명
	가족 15	• 남편: 67세 • 부인: 62세	• 남편: 대졸, 은퇴 • 부인: 고졸, 주부	• 월소득: 200만원 • 자가(아파트)	• 3명

대상자들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23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졸(6명)’, ‘중졸(1명)’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세대주인 남편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중 노년기의 1명만이 고졸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주로 중·노년기에서 고졸 수준의 학력을 보였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총 15가구 중 6가구이었으며, 주로 신흥 및 자녀출산기에서 맞벌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268.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인 6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3가구)과 300~400만원 미만(3가구), 500만원 이상(2가구), 400~500만원 미만(1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는 이러한 월평균 수입도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총 15가구 중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특성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무자녀 맞벌이 부부, 고학력의 안정적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였다. 주거소유여부는 자가(6가구), 전세(6가구), 월세(3가구)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월세 가구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유형

1) 신흥 및 자녀출산기 가족

신흥 및 자녀출산기 가족이 겪는 가족내 위기 중 하나는 자녀출산계획의 지연이었다. 이러한 점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족형성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출산시기도 연기되어 저출산율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저출산율의 증대는 단순히 경제위기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실업,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결혼준비자금 마련이 힘들어져 결혼을 미루게 되거나, 결혼 후 양육에 대한 부담과 출산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노산으로 출산자녀수를 1명으로 제한시키는 현상을 더욱 가

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소득 감소의 원인을 제공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을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남편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월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인이 소득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하여 출산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있었다. 이는 당장의 자녀 출산보다는 가계가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주기의 가족보다 높았다.

“연애를 5년 정도 했어요. 일찍 결혼하려니까 직장도 아쉽고, 애기도 일찍 낳는게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작년에 결혼했고, 둘이 계속 직장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좋아서 오히려 사업하는게 안좋아지긴 했는데 불안하긴 해도 제 월급하고 오히려 직장월급으로 매꾸게 되니까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이런 느낌은 덜해요. 문제는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애기 낳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되요. 일반회사는 육아휴직 쓰는게 눈치 보이잖아요. 애 낳고 오면 책상이 다 치워져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냥 심적으로 부담이 생기네요. (가족 1)”

“결혼한지 3년정도 되긴 했는데 아기는 시간을 두고 가질까 생각 중이에요. 둘이 별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기가 자꾸 나빠져서 남편 수입이 고정적으로 좋은게 아니니까 제가 일을 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승무원으로 일하는데 임신하게 되면 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려고요. (가족 2)”

“남편이 원래 카레이싱을 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경제는 계속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가게를 차릴 수도 없고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시장에서 모자 디자인어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버는데, 요즘은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남편도 무직이고, 저도 수입이 고정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출산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생각을 못하죠. 지금 아이를 가지면 저희도 애기한테도 좋지 않아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최소한 전세로 이사를 가야 애기를 갖기 않을까요? (가족 3)”

또한 결혼 초기 단계에는 소득 이외에 잉여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포함한 결혼비용 마련으로 인해 부채와 이자 부담의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나 구직활동자는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부부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형성기에는 초기 적응과정이라는 특징상 상호 의사소통과 개인 및 가족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경제위기는 부부갈등 유발에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남편이 금방 직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놀 줄은 몰랐죠. 결혼하면서 집이랑 결혼비용 때문에 대출받은게 있는데, 혼자 얼마 안되는 돈을 벌면서 대출 갚고 이자 내고 생활비까지 대러니까 남편이 한심해 보이고 몸이 지치면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요. 남편도 미안하니까 서로 미안하고 화나는 마음에 자꾸 싸우게 되요. 그냥 저도 모르게 돈, 돈 하게 되고... 신혼때는 원래 서로 적응하느라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해해도 되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왜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가족 3)”

2) 미취학 자녀기 가족

미취학 자녀기 가족은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생활비 중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기이다. 본 주기는 양육이 주요 발달과업으로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1~2명의 최소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양육 및 조기교육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즘엔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예전처럼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지금 애가 하나인데 더 이상은 낳지 않으려구요. 경제위기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산층이나 그 이하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애 한명 양육비에 보통 몇억이 들어간다는 뉴스도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그냥 지금 딸 애한테 최대한 투자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가족 4)”

“애가 혼자면 외로우니까 하나 더 낳을까 했는데 일단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구요. 애

를 두 명 정도 낳고 애들 어릴 때는 제가 집에 있으면서 키우고,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데 부담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그런지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솔직히 먹고 사는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요. (가족 6)

미취학 자녀기 가족은 공통적으로 부인의 양육 및 가사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녀양육을 담당하던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시도하면서 일과 가사라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족 내 성역할의 경계가 많이 완화되고 남편들이 일부 도와주는 것은 하지만 여전히 부인들은 양육과 가사업무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직장에서의 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남편의 근로활동의 증가로 인해 전업주부도 모든 양육 및 가사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나라에 경제위기가 와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다 그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거 같은데요. 어린애들 있는 집은 애들한테 돈 들어가는게 워낙 많으니까... 저희도 제가 애기 키우다가 남편 사진관이 예전만큼 안되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런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전 일을 하는거죠. 급하게 퇴근해서는 밥하고 애 보고, 빨래나 청소 뭐 다른 살림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면 출근하고. 몸이 너무 시달리죠. 집에서도 이려고 직장 가서도 시달리니까. (가족 4)”

“남편이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회사상황이 순간순간에 많이 민감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체 직원한테도 영향이 있죠. 소득이 크게 줄거나 뭐 이런건 없는데 남편은 더 바빠지고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챙기고 하다보면 사는 게 여유가 없어져요. 전에는 남편이 시간이 있어서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됐어요. (가족 5)”

“저희는 작년에 경제가 안좋아져서 지방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누님이 여기서 식당을 하셔서 올라와서 일 도우라고 하셔서 그냥 올라왔죠. 그나마 일은 하는데 누님 식당도 장사가 잘 안되서 남편이 월급 못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최소한 월세는 밀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끔 부업이나 알바같은 일을 해요. 그러다보면 집안일도 신경 못쓰고 직장일도 겨우 시간에 쫓겨 하게 되고 마음만 부담되고 제대로 양쪽일도 못하고 그러네요. (가족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해 가정내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된 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정해진 수입 내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과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정내 경제위기에 큰 타격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비용 감당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집 월세내고 남는 돈으로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돈벌이가 수월치 않아서 지금 수입 내에서 애한테 필요한 것 위주로만 생활비가 나가고 있어요. (가족 6)”

“저희는 남편이 바빠지고 제가 살림이랑 애기 보는 시간이 늘긴 했어도 경제위기 때문에 우리집에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다거나 수입에 큰 변화는 없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수준에서 저축하고 지출하고 그래왔는데 소득지출에는 크게 달라질 건 없네요. 대신 생활비를 조금 더 아껴쓰는 정도?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제가 다 데리고 있고 주변에서 필요한 건 물려받고 하니까 부담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가족 5)”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 친인척 등과 같이 가족을 통한 부모 역할 대리 수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었지만, 다른 가족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돌봄에 대한 경제적·양육적인 부담이 있었다. 특히 영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맞벌이는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자녀가 3세 정도 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맞벌이를 할 경우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염려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직장 다니면서 제일 괴롭고 힘든게 아이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제가 데리고 살다가 갑자기 엄마랑 떨어져서 어린이집 다니려니까 처음엔 애가 적응을 못해서 저도 괴롭고 애도 힘들고 그랬죠. 그나마 친정 엄마가 급할 땐 가끔 봐주시는데, 엄마 건강이 안좋으니깐 맡기는 것도 미안하고 부담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엄마가 봐주면 좋겠다 하는게... 남편수입이 예전만큼 없고, 사진관 인건비하고 임대료도 지금 내는 등 마는 등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돈도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가족 4)”

“일 하느라 제가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요. 아빠도 또 일이 있으니까 종일 나가 있고 요새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아서인지 애 하고도 예전만큼 잘 안놀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같이 있어 주는게 중요한데, 애기가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염려도 되고, 엄마아빠가 돼서 애한테 잘 못해주니까 늘 미안하고 걸려요. (가족 4)”

“지금 제가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어떻게 더 나으리 생각중이에요. 아직 애를 봐줘야 할 나이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돈이 들고, 일을 안하고 집에 있자니 수입이 없고. 친정이나 시댁이 다 지방에 있어서 마음 편히 애를 맡길 곳이 없어요. (가족 6)”

3) 취학 자녀기 가족

취학 자녀기 가족은 자녀양육과 함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전체 생활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은 자녀의 사교육 지원과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으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부모들은 최대한 자녀의 교육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조기유학 열풍으로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낸 가정은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가족해체 상황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 마련을 위해 교육비 중심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문화여가비, 외식비 등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희가 지금 아동복 가게를 하는데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웬만하면 애들 공부시키는데는 최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힘들어져서 학원비 내기가 부담되죠. 지금은 애들이 원하는 과목만 한 두개 다니게 하고 있는데도 부담이 되네요. 다른 애들은 몇 개씩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부모가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주는게 아닌가 하고 미안하고. 또 너무 학원 보내는 걸로 우리나라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교육이 이런가 짜증도 나고 그래요. (가족 7)”

“중학생이니까 학교 공부 외에도 일부 과외같은게 조금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아빠 회사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애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학원 필요없다고, 자기들

끼리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원다니는 수를 줄였어요. 그런 점에서 애들이 기특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가족 8)”

“애들을 초등학교때부터 미국을 보냈어요. 떨어져 산지 한참 됐는데 제가 계속 돈을 보내고, 애들 엄마도 왔다갔다하고. 요즘은 솔직히 돈 보내는 게 힘들어요. 달리가 올라가면 한숨이 폭폭 나오고 떨어지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일단은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지원을 해주고, 이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가족 9)”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정의 가계 불안정이 야기되는 경우, 가족 내에서 미묘한 갈등이 증가하고 부모-자녀간, 부부간 대화가 많이 줄어들어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끼리 방과 후에 방치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가정 내에서 교육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교육의 기능과 함께 부모 부재시의 돌봄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학원이 가장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기러기가족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공허감, 심리·정서적 가족해체감이 가중되고 있었다.

“솔직히 돈처럼 사람 예민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되고 돈 나갈때는 많으니까 걸핏하면 싸우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자꾸 애들한테도 괜히 짜증나게 되고, 가족끼리 있어도 말도 안하고 각자 자기 할일 하거나 방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돈 문제로 날카로워지면서 더 그러는거 같아요. 또 저희는 9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오니깐 그때까지 애들끼리 있어야 하고,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학원 보내면서 애들 공부시키는게 다인거 같아요. 미안하죠. (가족 7)”

“애들이 사춘기인데 길으로는 어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기특하긴 한데, 가족끼리 대화가 많이 줄었어요. 아빠도 술 많이 마시고 애들도 저도 웃음도 없고 서로 말도 없어지고 그러네요. 애들도 자꾸 집이 기울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가봐요. (가족 8)”

“저는 가끔 돈 버는 존재인가 할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집사람 미국 보내놓고 여기서 절절 매면서 외롭고 애들하고 뭐 공유되는 것도 없고, 애들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나 있을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이란게 같이 힘들어도 아웅다웅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경제위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

한테만 느껴져요. 애들은 제가 계속 돈 보내니까 저만 힘든거죠, 이러다가 돈 보낼 능력이 안되서 한국 들어오라고 하면 원망이나 듣는게 아닌가 걱정도 되요. (가족 9)”

4)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부모들이 개인사업 또는 투자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성인 자녀가 있는 중년기 가족은 다른 가족주기에 비해 경제적인 손실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인 충격과 재정적인 부담감 역시 심각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되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박탈감이 매우 크고, 중년의 나이라는 점에서 재기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동 주기에서는 노년계획, 건강대책 마련, 부부 역할 및 사회적 역할 수행, 인생관 재확립 등 다양한 발달과업이 존재함에도 중년기 가정에 미친 경제위기는 이러한 발달과업의 수행을 모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는 회사다니다가 은퇴하고 저 사람(부인)이 작은 식당 하나를 하게 돼서 같이 식당을 했는데, 망하려고 했는지 가게 차리자마자 미국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우리도 더 떨어졌잖아요. 처음 오픈할때부터 손님이 자꾸 줄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한그릇 판 적도 있어요. 그러니 장사가 왜? 인건비, 관리비, 월세 다 못내게 생겼으니 가게를 내놓아도 또 나가질 않고. 권리금 안주고 그냥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주듯이 가게 넘겼어요.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가게를 차린 건데 그거 다 손해보고 오히려 빚만 안고.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했어요. 지금은 마침 아는 사람 통해서 중고차 판매소에서 일하는데 내가 나이가 있으니 젊은 사람하고 경쟁이 되나? 이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요. (가족 10)”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갑자기 경제위기 오면서 주가가 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날렸어요. 난 노년 앞두고 안정적으로 살 게 될 줄 알았더니 있는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다 잃었네요. 이 나이에 어디가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가족 11)”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기혼 자녀들은 주로 부모의 부채, 이자와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자녀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진로에 변화를 주어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근로를 통해 본인의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었으며, 생계비 지원도 일부 가능하였다. 부모들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자녀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피해를 봤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중년기 가족은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비해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성인 자녀의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취업에 대한 심적 부담이 많았다.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빚 갚는다고 결혼을 미루고 있어요. 서른이 넘었는데 애 둘을 우리가 끼고 있으니 남 보기도 부끄럽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딸은 지금 계약직으로 일 하는데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부모는 이러고 있고 우리가 못아서 애들한테 짐만 주는 것 같아요. (가족 10)”

“우리 딸 결혼할 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고 모아둔 걸 주식으로 날렸으니 애들이 내가 원망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다 큰 자식들 얼른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일단은 좀 더 있다 하겠다고 주변에서도 결혼 안한 여자들 많다고 자꾸 저러네요. (가족 11)”

“우리 딸이 곧 졸업을 하는데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요새. 아빠 사업이 잘 안되니까 자기라도 벌어서 도움이 되고 싶은가 본데, 마음처럼 안되니까 애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자격증도 많고 인턴 같은거 해서 경력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12)”

5) 노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은 개인이 노후보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거나 가족들로부터

터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경제적 위기대응 자원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락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사회적 돌봄을 통해 본인의 생계보장과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빠르게 저하되는 시기이므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은 치료와 건강유지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난 은퇴한지 한참 됐죠. 재산은 거의 다 애들을 줬는데 애들이 사업한다면서 하나씩 빼가더니 거덜나버렸지. 우린 지금 부부끼리 살고, 애들한테 얹혀 살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연금 나오는 거하고 일부 저축한 돈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크게 아프기라도 하거나 다치면 애들한테 부담을 지울거 같아서 걱정이예요. 애들도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지금 집하나 있는 걸로 겨우 살고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 일부는 그냥 애들 주지 말고 돌걸 그랬나봐요. (가족 13)”

“우린 위밖에 형편이 좋지 않기도 했는데, 돈 모아 둔 것도 없고 애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부부가 소일거리 하면서 먹고 살아요.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할 아버지는 한달에 100만원 받는 주차장 관리원하고 나는 산후관리원 근무하면서 80만원 받고... 그걸로 방세내고 뭐하고 우리 둘이 알아서 살기에는 충분하니까. 나는 몸이 자꾸 안좋아져서 이제 일은 더 못할 거 같긴한데... (가족 14)”

또한 중산층으로서 은퇴 후 사위의 권유로 거액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주가폭락으로 인하여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가족도 있었다. 이들 가족은 특히 가족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노년기의 아버지는 부채상환을 조건으로 큰 딸에게 집을 양도하기로 하여 키워준 자녀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고, 작은 딸과 사위에 대한 분노가 공존하였다. 주식투자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감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였고, 가족간 불화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노부모는 본인들에 대한 자녀들의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며, 좌절감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는 요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자살 생각이 들고... 회사 다니다가 은퇴 하고 연금 나오는 거, 또 판데서 돈 나오는 걸로 별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둘째 사위가 주식투자 얘기를 해서 큰 딸 10억, 나 20억 해서 그걸 다 투자했다고. 지금 보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그냥 사위만 믿고 있었는데 주식이 자꾸 떨어지면서 돈이 없어지더니 결국엔 다 날려버리게 된거야. 우리 딸이 자기 돈 갚는 걸로 집을 달라고 해서 그냥 넘기고 말거예요. 친척들 보기도 창피하고, 애들도 꼴보기 싫고... (가족 15)”

제2절 가족생애주기별 차별적 대응 욕구

1. 가족특성별 대응 욕구

2007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가족특성별로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은 생계비 지원 욕구가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자녀교육비지원 욕구가 높았고, 이외에도 40대는 취업훈련 및 알선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51세 이상은 취업훈련 및 알선, 생계비 지원, 문화·상담 등 다양한 욕구를 보였다.

〈표 5-24〉 가족특성별 대응 욕구

(단위: 점, 명)

구분	취업훈련 및 알선	생계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상담	기타	계(수)
연령						
30세 미만	29.6	43.2	13.6	4.6	9.1	100.0(44)
31~40세	25.1	25.8	26.2	10.4	12.5	100.0(279)
41~50세	39.6	28.2	22.7	7.1	2.5	100.0(326)
51세 이상	37.4	35.5	11.2	14.0	1.9	100.0(107)
취업형태						
맞벌이	36.7	27.3	18.8	8.3	8.9	100.0(483)
홀벌이	34.6	29.3	23.5	8.7	6.5	100.0(422)
자녀 유무						
무자녀	26.0	29.9	2.6	19.5	22.1	100.0(77)
유자녀	36.3	28.2	21.2	8.6	6.4	100.0(852)

자료: 송혜림 외, 『경제위기와 가정』,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따라서 자녀양육기에는 자녀교육비 필요도가 높았고, 중년기 및 노년기에는 직업불안정이 예상되어서 취업과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동일한 가족주기 내에서도 맞벌이 가족보다 홑벌이 가족이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취업부터 생계비, 자녀교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는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욕구가 차별적임을 말해주므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족위기 유형별 대응 욕구

가. 실업의 대응 욕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2007년 경제위기에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응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직업훈련 기회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자리 확대 유도로 나타나서 재취업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실업에 대한 예방적 성격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공공근로사업 확대,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특히 20~39세 연령층인 신혼 및 자녀출산기에는 실업대응 욕구로 구인구직정보망 확충이 높았으며, 15~54세와 20~59세 연령층인 신혼 및 출산자녀기부터 성인자녀 및 중년기에 이르기까지는 직업훈련기회 확대와 일자리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30~49세 연령층인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기에는 일자리 보장이 높았고, 노년기에는 실업수당제고와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실업의 대응욕구는 가족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여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5〉 실업자를 위한 대책: 1998년

(단위: %, 명)

구분	실업수 당 제고	직업 훈련 기회 확대	공공 근로 사업 확대	일자리확 대 유도 (민간자 원 활용)	일자리 보장	저소득자 생계비 보조	구인구직 장보망 확충	기타	모르 겠음	계
전체	7.8	27.0	13.4	21.2	14.8	1.8	10.8	0.1	3.1	100.0
15~19세	9.6	27.2	16.1	16.5	13.2	2.1	10.4	0.1	4.8	100.0
20~24세	7.0	26.3	13.8	23.0	14.6	1.6	12.8	0.1	0.8	100.0
25~29세	6.7	27.1	12.2	24.3	14.5	1.2	13.3	0.1	0.6	100.0
30~34세	6.3	27.6	10.7	23.7	16.6	1.4	12.9	0.1	0.6	100.0
35~39세	6.6	29.0	11.2	22.8	16.4	1.4	11.9	0.1	0.8	100.0
40~44세	6.5	29.2	12.2	22.2	16.7	1.3	10.8	-	1.0	100.0
45~49세	7.6	27.6	14.0	21.3	15.9	1.7	10.2	0.2	1.5	100.0
50~54세	7.6	28.8	13.5	22.8	14.4	1.9	9.4	-	1.7	100.0
55~59세	9.6	25.7	16.3	21.9	13.2	2.2	8.1	-	3.1	100.0
60~64세	10.6	25.4	16.1	18.2	13.3	2.1	7.8	-	6.4	100.0
65세 이상	10.4	20.9	14.9	15.2	11.7	3.3	7.5	-	16.0	100.0

주: 일자리 보장은 감원 대신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말함.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나. 자녀양육부담의 대응 욕구

자녀양육부담의 대응 욕구는 1순위로 사교육비 경감이 2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안전한 자녀양육환경조성, 공교육 강화, 경기활성화, 질 높은 보육·육아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자녀미취학기 가족과 자녀 취학기 가족에 따라 차별을 보여 30세 미만과 30대 연령층은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보육·육아시설 확충 등을 지적하였고 40대 이상 연령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표 5-26〉 연령별 자녀양육 대응 욕구(1순위)

(단위: %, 명)

구분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경기 활성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 원 시설 확충	복지수준 향상	기타	계(수)
전체	11.4	25.2	10.3	18.4	10.0	5.5	19.2	100.0(10,058)
30세 미만	7.7	21.8	6.2	24.1	16.8	6.3	17.1	100.0(726)
30~39세	10.3	26.8	6.6	23.4	11.6	4.9	16.4	100.0(3,266)
40~49세	13.1	26.1	10.1	15.9	7.6	5.1	22.1	100.0(3,492)
50세 이상	11.6	22.9	16.5	13.9	9.2	6.6	19.3	100.0(2,562)

자료: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자녀양육에 대한 대응욕구는 2순위로 보육·육아지원 시설확충이 2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비 지원, 아동양육수당 지급, 직장여성 휴가 제공, 근무시간 탄력적 제공, 아동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욕구를 보였으며, 특히 30세 미만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30대는 방과후 보육비 지원, 50세 이상은 직장여성 휴가제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5-27〉 연령별 자녀양육 대응 욕구(2순위)

(단위: %, 명)

구분	직장여성 휴가제공	근무시간 탄력적 제공	보육·육아 지원 시설 확충	영유아보 육비 지원	아동 양육수당 지급	아동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	기타	계(수)
전체	8.6	8.6	22.8	12.0	9.1	5.0	33.9	100.0(10,050)
30세 미만	7.6	9.3	18.3	17.4	9.3	2.1	36.0	100.0(728)
30~39세	7.8	9.6	23.1	12.7	9.3	7.0	30.5	100.0(3,260)
40~49세	10.0	9.3	21.5	9.4	8.0	5.6	36.2	100.0(3,495)
50세 이상	7.4	6.4	25.6	13.0	10.5	2.5	34.6	100.0(2,553)

자료: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다. 가정폭력의 대응 욕구

가정폭력에 대응하여는 가해자의 법적조치 강화가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시설확충도 21.6%로 높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상담서비스 제공, 주거시설 마련 등이었다. 부인 및 남편 연령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8〉 연령별 가정폭력 대응 욕구

(단위: %, 명)

구분	시설 확충	가해자 법적 조치	상담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체적 ·정신적 치료	주거 시설 마련	직업훈련 ·직장 알선	자조 모임 지원	기타	계(수)
부인연령	21.6	24.5	8.7	4.9	16.5	4.9	11.4	0.7	6.8	100.0(6,641)
39세 이하	17.1	28.1	8.2	5.6	19.6	4.6	9.1	0.8	6.9	100.0(2,565)
40~49세	23.1	20.9	9.3	4.9	15.3	5.3	12.6	0.7	7.9	100.0(2,067)
50~64세	25.9	23.5	8.8	3.9	13.8	4.9	13.3	0.5	5.4	100.0(2,015)
남편연령	20.4	25.6	9.6	7.8	14.2	3.9	8.6	0.8	9.1	100.0(4,255)
39세 이하	18.6	28.5	8.4	8.6	15.3	3.6	6.7	0.9	9.4	100.0(1,396)
40~49세	19.3	24.6	10.0	8.1	14.0	3.9	9.1	0.8	10.2	100.0(1,426)
50~64세	23.3	23.5	10.3	6.8	13.3	4.3	9.9	0.7	7.9	100.0(1,433)

자료: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라. 결혼 및 출산의 기피의 대응 욕구

결혼지연 또는 기피에 대응하여 청소년 실업해소가 36.0%로 나타나서 경제위기가 결혼 기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용자, 건전 혼례문화조성, 결혼자금 용자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가치관 확립과 주택용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40대 이상은 청소년 실업해소를 지적하여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29〉 연령별 결혼 기피 대응 욕구

(단위: %, 명)

구분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건전혼례문 화조성	서민층 주택용자	청소년실업 해소	결혼자금용 자확대	기타	계(수)
전체	18.6	5.8	15.5	36.0	3.8	20.3	100.0(9,998)
30세 미만	23.7	4.4	18.0	21.8	4.2	27.9	100.0(721)
30~39세	22.5	5.7	17.3	26.5	3.2	24.8	100.0(3,246)
40~49세	17.3	6.1	14.5	40.1	3.9	18.1	100.0(3,477)
50세 이상	14.1	5.7	13.7	46.7	4.4	15.4	100.0(2,538)

자료: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출산기피에 대응하여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85.4%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이동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연령별도 전체와 비슷한 욕구를 보였다.

〈표 5-30〉 연령별 출산기피 대응 욕구

(단위: %, 명)

구분	출산지원금 지급	자녀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 확충	기타	계(수)
전체	2.1	85.4	7.4	4.5	0.6	100.0(336)
15~24세	-	92.3	-	7.7	-	100.0(13)
25~29세	1.3	86.3	8.8	2.5	1.3	100.0(80)
30~34세	2.0	85.6	7.8	4.6	-	100.0(153)
35~39세	1.3	87.0	6.5	3.9	1.3	100.0(77)
40~44세	15.4	69.2	7.7	7.7	-	100.0(13)

자료: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대응 욕구: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가. 신혼 및 자녀 출산기 가족

신혼 및 자녀출산기는 가족형성기로서 안정적인 주거보장 지원과 임신·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신혼가정은 주거마련, 결혼식, 신혼여행, 예단 등 초기 결혼비용에 많은 지출이 있었고, 자금 마련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 결혼 이후 몇 년 동안은 월평균지출에서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 형태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조사대상 응답자들은 결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의 월세 또는 전세 주택이 지원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저희는 월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 대출을 좀 더 늘려주면 결혼적령

기에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용이 나빠면 또 대출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걸 좀 완
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면 애 갖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가족 2)”

“요즘 취업도 안되고 다니던 직장도 짤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잖아요. 일단은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자금 대출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금리면 더 좋구요. 결혼비용
마련이 어려워서 결혼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희도 결혼할 때 고민 많았어요.
(가족 3)”

또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많
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부부의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지연할 계획
을 하거나, 특히 자녀에게 부모로서 충분히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안감과 경제적인 불안정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중첩
되어 있었다. 또한 임신·출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 부담
도 많았다.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비용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은 애기 갖기도 힘들겠더라구요. 저도 지금 병원다니다 보니까 이것 저
것 돈 들어가는 게 많은데 만일 제왕절개라도 하면 수술비용도 만만치 않고 산후조리
비용도 그렇구요. 물론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임신출산 단계에서 지원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애기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지 않을까요? (가족 1)”

“아이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생기면 애기 보느라
제가 일을 그만 뒀야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요.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애기를 낳아도 되겠다 싶을 때 낳을 거예요. 나라에서 저출
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가족 2)”

나. 미취학 자녀기 가족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족의 경우에는 우유값, 기저귀값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가구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희망하였다. 특히 자녀의 의료비에 대

한 부담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고가의 다양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맞아야 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제 경험상으로 우리 애 보니까 개월수마다 예방접종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맞으라는 걸 계속 맞췄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애기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깐 안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애기 의료비는 진짜 부담이 되요. 어릴 때는 자주 아파서 입원도 하게 되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건강보험에서 애들 의료비 지원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가족 4)”

다음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부부가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은 근로활동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늦게까지 어린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양육시설 지원과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희망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보육료 시설 이용료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부담이 다소 높아 이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아 방치되거나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가족들이 애를 봐주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야 하는데, 보통 6시 전후로 애들을 데려가야 해요. 그 이후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구요. 그나마 저는 6시 퇴근이 가능하고, 남편도 사진관을 운영하니까 야근이 많지 않지만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되게 난감해져요. 마음 편히 일을 할 수도 없고, 애 걱정도 되고. 24시간 보육시설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 가장 큰 바람은 직장보육인가? 왜 직장 내 보육시설 있는거요. 그게 많으면 엄마들이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빠도 좋고, 애기도 좋구요. (가족 4)”

“애들을 하루종일 제가 끼고 있을 수 없고, 친구들도 만들어야 하니까 큰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요. 요새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서 엄마들은 좋은데 보내고 싶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한테 투자가 엄청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아이들 보육료 지원이 좀 있으면 부모들 부담이 줄 거 같아요. 자꾸 애낳으라고 하는데 애 키우는 비용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경기는 안좋아지는데 부모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기니까 애들도 같이 격차가 생기는거 같아요. (가족 5)”

다. 취학 자녀기 가족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취학 자녀기 가족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방과후교육과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한 교육지원 욕구가 높았고, 자녀가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일수록 입시교육과 관련한 교육지원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취학기 자녀 역시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인 시기이나, 자녀가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 하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적인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방과후 교육을 통해 교육과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희망하였다.

“부모가 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보내는 거 외에는 애들을 봐줄 곳이 없어요. 방과후 학교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미지가 가난한 애들 가는 곳으로 찍혀서 애들 보내기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기능이 안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학원 보내는 것도 무리잖아요. 학교에서 연계같은 거 해서 애들 문화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여가생활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나 하지 여유가 없으면 안하게 되잖아요. (가족 7)”

“사교육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모들이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해요. 다른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다 보면 살림이 엉망이 되죠. 애들 교육비에만 돈이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교육제도를 좀 바꾸던가 아님 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좀 덜 하도록 지원 해주던가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형편은 자꾸 나빠지는데 애들 교육비는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게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가족 8)”

또한 이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춘기의 청소년 자녀를 위해 성, 진로, 고민상담, 교

우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상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향후 대학입학을 위하여 대학등록금 대출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예민하고 감수성도 한창 높을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위축되거나 나쁜 길로 나가지 않고,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학교 같은 곳에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애들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애들한테 공부만 해라 하고 애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저도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집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못해주는 게 많아요. (가족 7)”

“앞으로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하는데 대학등록금이 천만원 시대라는데, 등록금 지원이나 대출이 쉽고 많아지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애들 대학도 못 보내면 안되잖아요. (가족 8)”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거예요. 일부 빼고는... 지금 우리때가 애들한테 교육비 가장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가족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족 상담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좋죠. 우리나라는 그런게 시스템이 잘 안잡혀서 상담받는다고 하면 무슨 정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참 그래요. (가족 9)”

라.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의 경우에는 중년기 부모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특히 중산층이었다가 사업 또는 투자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뜻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자리 마련의 차원으로 재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는 일부 가족의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 있거나 부채가 있어 은행대출이 어려웠고, 현재의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러한 부채해결을 위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출은 창업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 결혼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천만원대의 대

출을 포함한다. 또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노후보장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희망하였다.

“벌써히 사업들하다가, 회사들 다니다가 이렇게 주저 앉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애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것도 안되고... 결국 내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나이는 어디가서 취직이 안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취직이 안되서 난리인데, 미국처럼 나이들어도 전화받고, 월마트 같은데서도 일할 수 있게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꼭 무슨 저소득층 지원같은 잡일 말고요. (가족 10)”

“사업하던 사람들이 경제위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게 사업자금 대출이 되면 좋겠어요. 다 큰 자식들이 부모들 빚 갚느라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이젠 국가적으로도 손해일거 아니예요.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대출이 어려워서 오히려 이자만 더 안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족 12)”

마. 노년기 가족

노후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노년기 가족은 노년기 빈곤을 경험하기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이들은 노년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지원에 있어 수발과 가사도움이 가능한 도우미의 지원을 희망하였다. 고령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이야 뭐...건강이 제일 문제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못가잖아요. 아프면 그냥 죽어야지. 기댈데는 주로 애들인데 애들도 지금 돈벌이가 쉽지 않은데 나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고 말 못해요. 병원비 대 줄 형편들도 안되고, 제일 필요한건 병원비지 뭐... (가족 13)”

“앞으로는 지금보다 건강이 더 나빠질 일만 남지 않겠어요? 애들한테 부담 안주려면 누가 나 와서 수발들어주고 해주면 제일 좋지. 지금도 경기가 안좋아서 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야 노인네들 먹고 살수 있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고쳐주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가족 14)”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유형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사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유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해 전 가족생애주기에 걸쳐서 가족의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경제위기는 가족 간에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며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7년 1년간 발생한 폭력은 약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5점 만점에 2.66점으로 저조한 반면,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점수는 가족생애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아서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위기는 취업을 감소와 실업을 증가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생계와 주거 등 기본생활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위기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둘째,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적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출산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수용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동 시기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마련, 취업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자녀출산이라는 과업을 지연시키며, 결혼 적응과정에서도 부부갈등의 심화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시기는 결혼자금, 주택마련 등으로 부채 부담이 높아서 경제위기는 생활안정을 위한 계획 및 준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결과, 조출생률은 2007년에 인구 천명당 10.0명으로 증가하다 2008년에는 9.4명으로

감소하여서 경제위기 요인을 반영하며, 이혼비율은 신혼기와 자녀양육기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중년기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혼 예방 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 중 신혼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는 자녀양육 및 교육이라는 발달과업에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가계경제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동 시기의 발달과업을 위축시킨다. 다른 관점에서 경제위기는 가장의 실직 또는 비정규직화로 인하여 모의 취업동기를 유발하나 자녀양육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일과 양육의 병행에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동 시기는 부부의 경우 중년기를 맞이하고 자녀는 청소년기로 전이하면서 세대 간의 상이한 발달적 욕구와 관계에 대한 기대로 부모와 자녀간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한경혜, 2006). 본 연구결과, 동 시기는 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의 교육비 및 양육비 등으로 가계지출이 급증되는 시기임에도 정규직 분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분포가 높아지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을 보인다. 취학자녀기로 올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으로 가계지출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동 시기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청소년기에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위기 하에서 모의 취업가능성으로 자녀의 방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방과 후 자녀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성인 자녀기 및 중년기의 발달과업 단계는 성인자녀는 사회진출, 결혼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이고, 중년기의 부부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빈 등우리를 맞이하면서 심리적·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노년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한경혜, 2006). 그러나 경제위기는 성인자녀의 결혼과 취업이라는 발달과업을 지연시키며, 이로 인하여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업을 지체시킨다. 본 연구결과, 2007년 이후 조혼인율이 낮아졌는데, 미혼남녀가 결혼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등이었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실업률과 비

정규직의 증가로 일자리문제가 심화되며, 또한 역할 갈등, 사회소외로 인한 우울감, 상실감 등으로 심리·정신적 문제가 노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동 시기는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탄력도가 떨어지는 시기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섯째, 노년기는 노화와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해야 하고, 자녀관계에서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이는 성인자녀의 부모지원, 정신적·육체적 건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노인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인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자원을 축소 또는 박탈하여 노인의 경제적 준비와 육체적,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의 취업률은 타 시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폭도 높은 편이었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2배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럼에도 노년기에는 소득 대비 지출규모가 높아서 다른 가족생애주기에 비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인 “경제위기는 가족생애주기별 과업 수행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여건의 부정적인 변화는 신혼 및 자녀출산기보다 자녀 양육기, 성인자녀 및 중년기, 노년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시기에 경제적인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 심리·정서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 가족, 친인척, 지인, 친구,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어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혈연 및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은 가족의 안정성과 응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경제적인 위기의 발생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며, 가족관계에서의 부조화와 갈등 및 싸움을 증가시키면서 가족의 응집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혜경, 1998 재인용).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및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족자원은 가족의 문제해결 또는 욕구충족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유대, 가족에 대한 긍지와 일치감, 양육지원 및 행동 등은 가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때로는 일과 양육으로 인한 역할정체감의 혼란과 부담이 생기고, 가족부양 기능이 저하되거나 가족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대처자원 및 반응에 따라 각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위기는 각기 다르게 경험되며 대응방안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가족생애주기별 차별적 대응욕구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사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생애주기 및 가족위 기유형별로 대응욕구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취업훈련과 일자리 알선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직업훈련 등의 기회가 보장되나,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둘째, 신혼 및 자녀출산기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녀출산과업이 지연되고, 결혼생활의 적응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며, 결혼초기의 부채 부담은 생활안정을 위한 계획 및 준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결과, 자녀출산의 대응욕구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이동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그리고 결혼생활 적응과 부부갈등 해소를 위해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채부담해소를 위한 지원과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상담 등 지식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미취학 및 취학자녀기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발달

과업을 위축시키고, 일과 양육의 병행에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부모와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자녀가 보호 없이 방치되는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 자녀양육의 대응육구로는 미취학기 부모는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보육·육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육구가 높았고, 취학 자녀기에는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한 육구가 높았다. 그리고 동일한 가족주기 내에서도 맞벌이 가족보다 홑벌이 가족의 경우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한 육구가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취업부터 생계비, 자녀교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대한 육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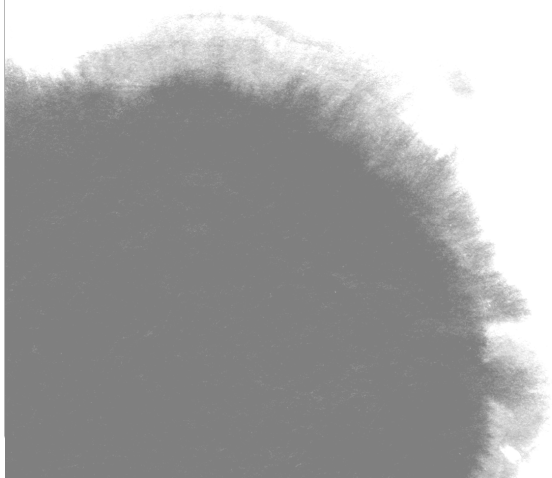
넷째, 성인 자녀 및 중년기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성인자녀의 결혼과 취업이라는 발달과업을 지연시키며 이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업을 지체시킨다. 본 연구결과, 결혼 기피에 대응하여 청소년 실업해소에 대한 육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경제위기가 결혼 기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융자, 건전 혼례문화조성, 결혼자금 융자 등의 순으로 육구가 높았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일 자리마련과 사업지원에 대한 육구가 높았고, 부부관계 증진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섯째, 노년기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인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자원을 축소 또는 박탈하여 노인의 경제적 준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취업과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육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프로그램, 가사 또는 간병 지원 등이 필요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육구는 차별적으로 나타나서 가족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06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제6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제1절 기본방향

19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지 10여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IMF 당시에는 국내 경기의 문제에 국한된 것에 비해 현재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경제위기가 부상되면서 개인이나 가족에 미치는 경제적 난국의 파급효과는 더 장기적일 수 있다. 가정 외적인 문제는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가족이 강력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가족기능의 약화와 병리적인 가족기능이 표출되면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의 가족은 가족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가 전 생애주기별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위기 하에 전체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에게 발생하는 위기의 다각적 해결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체 위기 가족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경제적 위기가족을 위해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계 및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력을 제고한다. 넷째, 위기 직면가족을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응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섯째로 가족생애주기 4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한다.

제2절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1. 전체 가족생애주기별 사회적 대응방안

가.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1)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위기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국가차원의 경제위기는 개별가족의 위기로 직결되며,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거나, 가장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가족은 상대적으로 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족위기는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관계 문제, 가족 기능 수행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담보, 채무 등의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중산층 가족이나 가계경제가 영세자영업을 통해 순환되었던 가정, 돌봄 비용의 지출이 큰 가족의 경우는 위기 체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단절, 갈등의 내재화, 1인의 경제담당자 집중을 경험하는 가족 등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위기에 대응하여 가족탄력도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세분화하여 마련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경제위기 관련 법의 사후개입 및 지속성 강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가정기본법’과 사후개입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적 조항의 모호함과 비지시적인 성

격으로 인해 제도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추상적일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가족을 긴급·일시적으로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가족의 위기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들은 중산층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과 한시적인 지원책, 제도실시체계의 유명무실화 등으로 인해 정책적인 효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경제위기 직후 ‘경기부양법안’을 즉시 발효하여 예방적 측면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후개입적 측면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세금공제 및 수당지급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일시긴급지원책을 예방적·사후개입적 측면에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한 뒤, 위기가족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위기가족의 지원을 위한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수정 및 보완은 우리나라 실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경제위기 하의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경제위기 발생 후 가구의 경제적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이미 발생한 경제적 위기해결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비용과 가족 내의 부담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가족구성원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동일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가족의 경우 가족생애주기별로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애주기별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후적 문제 해결과 치료, 이를 통한 최소한도의 생활 유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가족생애주기별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여 가족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들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선행적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 해체위기 가족의 대응 방안

1) 숙려제도 및 자녀양육 관련법의 강제성 강화

우리나라 이혼정책과 관련된 큰 변화로는 ‘숙려제도’의 도입과 ‘호주제’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숙려제도’는 이혼숙고의 기간을 통해 이혼을 고려하거나 혹은 이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별거제’와 유사한 정책이지만 강제력과 제도실천의 측면에서 ‘숙려제도’의 강제성이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서구의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제재가 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해체 위기를 경험한 가정의 자녀가 다시 위기를 경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 이행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확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체위기 가족의 주거지원 강화

우리나라의 해체위기 가족을 위한 정책은 대체적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후개입적이고 다발적인 지원에 치우쳐 있으며,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폭력을 경험한 가족피해자 지원 또한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할 및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사례로 미국, 영국 등은 폭력피해여성과 해체가족을 위해 주거지원 및 자활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가족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 측면

에서 해체위기 직면가족과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제적 위기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해체가족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폭력 대응방안

경제위기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여 폭력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족해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은 신혼 및 자녀출산기와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에 높은 수준을 보여 가정폭력은 가족형성기부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자를 돕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선행적으로 폭력허용적 문화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친인척, 친구·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자원을 확보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부부간, 가족 간의 갈등을 공유하고 해결하도록 정보교환과 친교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며, 전문가와의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취업 및 치료를 통한 자립·자활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경제적 지원 강화

1) 경제위기 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선진국에서는 위기가족에 대한 개입으로서 대부분 일시부조를 위한 현금 급여제도, 세제혜택 등이 지원되어 모성유지를 위한 빈곤가족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현금급여 지급, 실업자의 회생을 위한 한시부조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장기적인 세제혜택과 통합적 서비스 체제의 개편 및 지원체계의 단일화 등을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긴급지원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절대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위기가족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지원의 제공 기간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위기 가족의 생계 지원 강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은 2007년 3.1%에서 2008년 3.3%로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로형태도 비정규직은 2008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는 고용상태와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 2008년 1년간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비율은 46.9%이었고, 위기직면가족의 경우 소득원 상실시 현재 자산으로 생활유지 가능기간은 3~6개월이라는 응답이 53.0%로 나타나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빈곤가족으로의 진입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직면가족 및 경제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애주기별로 포괄적·예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외에 양육서비스를 강화하며, 중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중산층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을 보완하고 긴급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 가족 대상으로는 생계보장 외에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위기 가족의 주거 지원 강화

경제위기 하에서는 소득과 고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도 적절한 주거보장 없이는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주거안정망 정책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족과 임대료보호제도의 부재 그리고 주거복지의 연계미흡으로 금융위기의 대응기제로 실효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위기하의 주거빈곤 대응전략으로는 주거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빈곤의 예방에 있다. 주거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거수준이 미흡하거나 주거비부담 능력이 취약한 해체가족, 신흥 및 자녀출산기 가족 그리고 자녀양육기 가족을 대상으로 시급한 주거안정 즉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

마. 위기직면 가족 지원

1) 잠재적 위기직면 가족의 발굴·지원 시스템 도입

경제위기로 인해 개별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위기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족주기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서비스 유형은 대부분 획일

적, 긴급적, 선별적인 사후처리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포괄하기에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가족구성원의 어려움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도들로 인해 가족생활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어려움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원대상 범위는 대부분 국민기초수급 계층이나 일부의 차상위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적인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차상위 계층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빈곤계층지원에 비해 자활의 모색과 정서적 측면이 강화되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서비스 대상범주의 확대의 필요성은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지원이 요구되는 (동반)자살가족, 조손가족, 일시적 분거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되는 점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 생애주기별로 위기직면 가족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살가족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의 강화가 요구되며, 가정폭력이나 여러 중독예방센터의 운영과 같이 공식화된 기구 마련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었을 때 저소득층으로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기직면가족을 위한 제도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체위기 직면가족의 위험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망 마련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가족의 해체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될 확률과의 연계성도 높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관련 법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체위기 직면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외적 요소에 의해서 가정폭력 및 유기와 방임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거나 안전망을 마련하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전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화, 중복과 누락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 예측될 때, 투입비용의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실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 가족서비스 제공 시설과 기관을 연계하고 중개함으로써 서비스의 체계화 및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위기에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존에는 없었던 위기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킹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에 예방적·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설립하고, 지자체별로 거점센터를 확충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설계와 모니터 활동,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지원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들 즉,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중·고등학교, 민간 상담기관, 폭력 및 중독예방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직이나 위기직면가족 등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달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2.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가. 부부갈등 완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통한 결혼 적응력 제고

동 가족주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새로운 삶의 형태인 결혼에 적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하에서 경제생활의 불안정, 심리·정서적 갈등, 의사소통의 불안정 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이혼이라는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혼비율은 신혼 및 자녀출산기에 30.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이혼예방프로그램이 신혼 및 자녀출산기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부부갈등 완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부부간에 또는 부부·가족 간에 적절한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부부관계 교육,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치료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심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출산제고 방안

동 주기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자녀출산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수용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고용의 불안정과 가계경계를 위축하여 자녀출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출생률은 2007년에 인구 천명당 10.0명에서 2008년에는 9.4명으로 감소하여 경제위기가 출산을 저하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저출산율은 가족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의 부족에서도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제고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가족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강화, 가족생활의 중요성 등 비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식변화에 중점을 둔 제도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생활의 양성평등

적 가치관 확립으로 합리적인 가사와 양육분담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결혼으로 인한 고용상 차별 철폐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다. 부채부담 해소로 가계재정의 건강성 제고

신혼 및 자녀출산기는 앞으로의 결혼생활, 즉, 주택마련, 내구재 구입 등의 가계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 시기는 결혼자금, 주거마련 등으로 다른 가족주기에 비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채는 경제적 신용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의 위기를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의 상담과 관리를 통하여 부채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가계재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전문가의 피드백 장치를 통하여 실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취학 및 취학 자녀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가.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

동 가족주기는 자녀양육 및 교육이라는 발달과업에 집중되는 시기이나, 경제위기는 가계 경제의 긴축을 가져오고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발달과업을 위축시킨다. 특히 동 시기는 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등으로 가계지출이 급증되는 시기임에도 가장의 실직과 비정규직 분포가 높아지면서 직업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가계지출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에서 동 주기의 가족은 타 주기의 가족에 비해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미취학 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시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실직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 지원을 적용하고,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셋째,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취학 자녀기 가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교육수준 및 프로그램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EBS,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보험료 지원 등 직접적, 간접적인 소득지원을 병행하며, 저소득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용 경감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나. 맞벌이 가족의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

자녀양육기의 경제위기는 자녀양육이라는 과업을 위축시키는 한편, 가장의 실직 또는 비정규직화로 인하여 모의 취업동기를 유발하나, 자녀양육환경의 미비로 인하여 동 주기의 가족은 일과 양육의 병행에 갈등을 유발한다.

맞벌이 가족의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으로 위기가족 대상의 돌봄지원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위기가족들의 돌봄은 위기 이전보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돌봄지원 제도는 위기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이 매우 추상적이고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기가족의 돌봄 관련 이용 가능한 자원 확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나 서비스는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위기직면 가족과 위기가족이 빈곤층에서 회생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자녀장학금제도 및 양육비 전액지원, 위기가족의 기업보육우선제공, 양육돌보미 지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방안

동 주기는 부모의 경우 중년을 맞이하고 자녀는 청소년기로 전이되면서 세대 간의 상이한 발달적 욕구와 관계에 대한 기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경혜 외, 2006).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는 부모의 실직,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와 함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체계가 열악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출, 비행청소년으로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세대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족간의 유대는 반사회적 하위문화에 빠져들 위험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회복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였던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기회를 회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실직, 경제적 어려움, 직장 및 학교적응문제, 건강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을 제고해야 한다.

4. 성인자녀 및 중년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가. 성인자녀의 결혼 제고 방안

동 가족주기의 성인자녀는 사회진출, 결혼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회적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축소, 물가상승 등으로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조혼인율이 낮아졌으며 미혼남녀가 결혼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인자녀의 결혼지연에는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미혼자들의 낮은 욕구 또는 기대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남녀의 결혼지연 또는 기피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장기적·체계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해소는 경제위기 하에서 결혼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 제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경제위기가 심각한 중년기 가족의 사적인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 제도를 통한 자기개발을 증진하며, 청소년 취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화 방안으로는 인턴사원제를 확대하고 상용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학금 환수기간 및 이자율은 장기저리로 확대하고, 결혼지원을 위한 주택 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

나. 중산층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최근의 경제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직면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중산층으로부터의 탈락 방지 및 중산층 진입 촉진을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 그 중에서도 서민층의 빈곤 예방, 탈빈곤화 기능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 가정의 생활유지와 가정의 역량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 그리고 가계지출감소가 필요하다. 가계소득 증대는 고용, 노동 등과 관련되지만, 가계지출감소는 직접적인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므로 취약한 가정경제의 현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며,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장기적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경제위기 직면가족의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제도 도입

선진국은 예방적 측면에서 실업 등 위기상황에 처하기 직전의 위기직면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 여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장 세제, 예방기금마련 등 세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가족을 단위로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경제구조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된 가족에게 세제부담을 낮추어 주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이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가 가족의 예방 측면에서 경제적 위기직면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각종 세제 및 수당제도 도입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중년기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경제위기 하에서 중년기의 부모역할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업이 지체된다. 이와 함께 실직과 역할갈등, 사회소외로 인한 우울감, 상실감 등으로 심리·정신적 문제가 노출되는 시기이다.

특히 동 시기는 가족위기에 대응하는 탄력도가 저하되는 시기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각종 실업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년기 실직자를 자조집단으로 조직화하여 집단적으로 실업대책에 참여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차선적으로는 중년기 실직자의 우울감, 상실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노년기 가족의 사회적 대응방안

가. 노인돌봄 가족의 경제적 지원 검토

노년기 가족의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긴급구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 주기의 욕구는 취업과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며, 경제위기 하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감소되므로 공적이전소득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노년기 가족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능력과 회복하는 탄력도가 떨어지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축소로 인한 심리·정서적 위축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2008).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운(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가족지표개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김경희(2001). 경제위기와 실직여성가장가구. *사회발전연구*, 9, pp.233-244.
- 김명중(2009). 최근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과 정부대책등에 대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등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 pp.44-81.
- 김수정, 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pp.41-76.
- 김승권(2001). 경제위기에 표출된 한국 가족의 취약성. *가족과 문화*, 7, pp.79-109.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이건우, 곽배희, 박소현, 신연희, 정춘숙, 채구만, 현혜순, 김은경, 전영실, 강은영(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이삼식, 김유경, 송인주(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9).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통합·예방·맞춤형 정책 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p.3-29.
- 김연명(2007).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 pp.111-139.
- 김영민(2009). 경기부양법안과 사회정책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7, pp.51-60.
- 김영범(2000).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과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비교. 한국사회학, 35(1), pp.31-57.
- 김인규(2009). 일반인이 지각하는 가족 내 역할 발달과업 연구. 사회과학논총, 24(2), pp.47-74.
- 김인숙(1999). 저소득 실직여성가정의 여성복지 강화방안. 성평등연구, 3, pp.95-112. 가톨릭 대학교 성평등연구소
- 김재연(2004). 이혼재판절차 중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이혼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혼조정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희(2002). 주요 사회복지정책론의 가족 위기 대처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 14(6), pp.75-95.
- 박영희(2004). 위기가족의 유형과 가족복지 서비스제공 방안. 사회복지통권, 161, pp.28-41.
- 박정윤, 송혜림, 이완정, 성미애, 진미정, 서지원(2008). 부모역할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연구. 서울: 대한가정학회.
- 박찬임, 박성재, 김화순, 김종일(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박태영(200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백은영, 문숙재(2005).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본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16(2),

- pp. 87-109.
- 백진아(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pp.27-50.
- 삼성경제연구소(2009).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성미애, 장윤희(2008).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쟁점 고찰: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161-195.
- 송혜림, 성미애, 박정윤, 진미정(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족의 일상과 대안.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pp. 8-49.
- 안병철(1999). 경제위기와 가족관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298-306.
- 안병철, 임인숙, 정기선, 이장원(2001). **경제위기와 가족**. 서울: 미래인력 연구센터.
- 오제은(2006). 가정해체의 원인 및 실태파악과 가족정책 개선방안. *진리* 논단, 13, pp.505-526.
- 유경준(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 유계숙, 장혜경, 전해정, 김운정, 민성혜, 박은미, 안재희, 장보현, 한지숙 (2007).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 프레스.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가옥, 우국희(2005).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85-204.
- 이명신, 김유순(2005).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서울: 한국여성정책개발원, pp.35-91.
- 이영분, 양심영(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pp.117-148.
- 이은희(200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 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pp.99-119.
- 이진숙(2002). 한국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22, pp.191-218.
- 이현송(1999). 실직자 가족의 복지욕구와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학회지*, 9, pp.155-176.
- 임병우(2004).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례연구: 한국의 노인보건복지통합서비스 개발에 주는 시사점. *대한케어복지학*, 10, pp.5-31.
- 임인숙, 안병철(2002).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2(2), pp.1-23.
- 장혜경, 김영란, 김필숙(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1) :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경근, 차선자(2005). 적절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정경희, 이윤경, 최현수, 김태완, 이현주, 이소정, 손창균, 강성호, 권혁진, 이은진, 윤지은(2005). 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 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pp.1-14.
- 전영준(2007). 비자발적 실업위험 존재시 근로촉진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공공경제*, 12(1). 한국재정학회. pp.1-37.
- 전효정(2007).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5(5), pp.1-13.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pp.91-121.

- 조선주(2008).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실증분석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희금, 서지원(200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3(1), pp.61-82.
- 진미정(2009). 가족의 위기와 가족정책의 대응. 통합·예방·맞춤형 정책 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p.33-51.
- 차선자(2004).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18(2), pp.379-400.
- 최영준(2009). 영국의 지역중심 종합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7(5), pp.48-55.
-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2005).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Carter, B., McGoldrick, M. (198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2nd Ed.)*. New York: Gardner.
- Feld, F. (1963). *Feelings of Adjustment*. in F. I. Nye and L. W. Hoffman. *The Employed Mother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 Goldin, E., Mohr, R. (2000). *Issues and techniques for counseling long-term later-life couple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8(3), pp.229-235.
- Guelzow, M., Bird, G. & Koball, E.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an and wom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 Kernberg, P., Chazan, S. (1991). *Children with conduct disorders: A psychotherapy manual*. New York: Basic Books.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 Strong, B., DeVault C. (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5th ed)*. West Publishing Company.

관계부처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06-2010.

관계부처합동(2007). 일하는 기쁨, 함께 누리는 행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자료집.

국무총리실(2009).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20차 회의 안건, 6월.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제4차 대한가
정학회실천특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2009).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가족부(2009).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여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2008).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006).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
향연구. 여성가족부·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역(2006). 일본 소자화사
회백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p.1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06. 8. 31,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발표(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3. 12.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확정·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7. 1. 2009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노동부 보도자료 2009. 1. 30. “근로자의 꿈과 희망, 이제는 즐기세요”.

노동부 보도자료 2009. 6. 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행동선언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7. 12. 4. e-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
충 성과: “희망e든” 브랜드로 지속적 발전 다짐.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4. 30.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아이
사랑플랜 심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4. 6. 실직 후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유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pcsi2.pa.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recap.go.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호주 건강고령화부 홈페이지 <http://www.agedcareaustralia.gov.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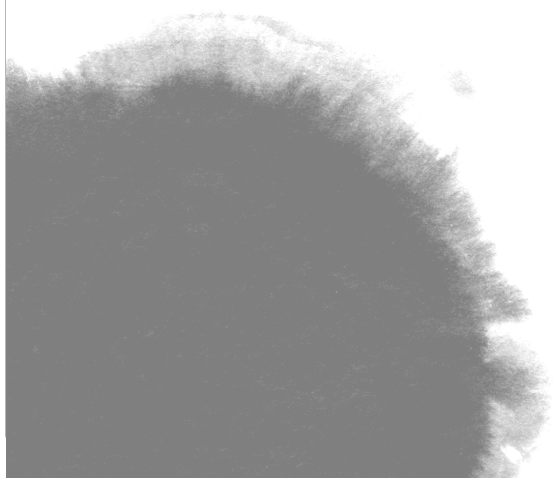
(2009년 현재 폐쇄)

2005대양주간부과정정책연수결과보고 <http://cafe.naver.com/eduable/384>

호주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노인정책 인터뷰자료

<http://blog.daum.net/happlworldhappyliife/8423308>

부록



〈부표 1〉 결혼연기 및 출산을 저하 관련법과 내용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건강가정 기본법	2004.2.9/ 2008.2.29	(제8조 1항)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8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제21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7> (제32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5.5.18/ 2009.2.29	(제4조 1항)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 보건법	1973.2.8/ 2009.1.7	(제 3조의 2)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신부의 날로 정한다.[신설 2009.1.7] (제 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근로 기준법	1997.3.13/ 2009.5.21	(제70조 2항) 사용자는 임신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 74조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74조 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인공임신중절 수술제외)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74조 5항)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와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4조의 2의 1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74조의 2의 2항)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안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07.12.14/ 2008.2.29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1987.12.04 (남녀고용평 등법)/ 2007.12.21	(제17조의 2의 1항) 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성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의 2항)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08.6.5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12조) 여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표 2〉 자녀 돌봄노동관련 법과 내용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건강가정 기본법	2004.02.09/ 2008.02.29	(제7조)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15조 2항)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에 방을 통한 사회비용절감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 가정의 양립 (제22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제22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 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모자 보건법	1973.2.8/ 2009.1.7	(제1조) 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7] (제 4조) 모성은 임신, 분만, 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7] (제10조 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3의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3의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3의 3항)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신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신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신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7]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5.5.18/ 2009.2.29	(제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1991.01.14 / 2008.02.29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작·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 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 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 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 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다자녀가구 등)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4조의 2의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 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 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19] (제34조의 3의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 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근로 기준법	1997.3.13/ 2009.5.21	(제 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 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1987.12.04 (남녀고용평 등법)/ 2007.12.21	(제1조) 이 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 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 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 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3항)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1항)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2의 1항)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 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 2항)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 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 회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로 허용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휴직 후에는 복귀시켜야 한다. (제19조의 2)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1년 이내 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 내에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협의 하의 12시간 외에는 요구할 수 없다.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제19조의 4의 1항)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19조의 5)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근로제한, 근로시간의 조정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 1항)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0조 2항)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알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제2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의 3항) 노동부장관은 알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1]

〈부표 3〉 이혼가정지원 관련법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민법	1960.1.1/ 2009.5.8	(제 836조의 2)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제 839조의 3)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한부모 가족 지원법	1989.04.01 (모자복지법)/ 2002.12.18 (모부자복지법)/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2008.02.29	(제 4조, 5조)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아동과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 11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 12조에 따른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중복지원이 아닌 한 복지 급여(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 2항) 제1항 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 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건강 가정 기본법	2004.02.09/ 2008.02.29	(제15조 2항)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에 방을 통한 사회비용절감 (제26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 복지법	1981.4.13/ 2008.6.13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부표 4〉 가정폭력 관련법과 내용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민법	1960.1.1/ 2009.5.8	(제836조 2의 3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	2004.02.09/ 2008.02.29	(제2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 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4.28/ 2007.10.17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 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4.28]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4조의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7.10.17] (제4조의 4의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 반한 가정구성원이 이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 5)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 해자에 폭력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 6의 1항) 여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급 전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간급 전화 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 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 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소의 업무는 신고 및 상담, 법률협조 및 지원 등이다.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원 등을 둔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97.12.13/ 2007.8.3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 6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능한 행위자의 범위 및 고소신청기간은 지정되어있다. (제 8조)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07.8.3>[전문 개정 2002.12.18] (제9조)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된 범위 하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제 18조)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9.1.21> (제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7.8.3> (제49조) 임시조치, 보호처분, 불처분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제63조) 보호처분 미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7.8.3> (제64조)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1981.4.13/ 2008.6.13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요보호아동은 보호자의 이탈, 학대 등에 처한 아동을 말하며, "아동학대"라 함은 유기와 방임을 포함한다. (제16조 1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13] (제24조)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인력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시행일 2009.7.1]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제25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 (제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26조의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제27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출동하여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법원의 심리과정 보조인 동반 혹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어떠한 아동학대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7.13>

〈부표 5〉 청소년 관련법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청소년 기본법	1991.12.31/ 2008.2.29	제6조 (가정의 책임) ①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은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5.12.29]
청소년 보호법	1997.7.7 / 2009.7.31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개정 2005.12.29>) ①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10.23/ 2009.6.9	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표 6〉 경제 구조적 변화로 인한 가정의 위기지원관련법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건강가정 기본법	2004.2.9/ 2008.2.29	(제15조 2항) 5년을 주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긴급복지 지원법	2005.12.23/ 2009.5.28	(제2조 1항)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위기가 해소될 때 까지 구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9조)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기타)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간접지원(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제10조 1항) 제9조제1항 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2항) 제9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제10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1호 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4항)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으로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1983.5.31/ 2009.6.9	(제 2조 1항)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의 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999.9.7/ 2009.4.1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조건이 고려되어 급여의 종류별로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제 5조 1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 5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개정 2008.2.29> (제 5조 3항)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 9조 1항)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 9조 2항)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3항)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 9조 4항)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개정 2008.2.29> (제 9조 5항) 보장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특별법	2004.3.5/ 2008.12.31 (한시법:2013. 12.31)	(제1조)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인건비 등 경비는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표 7〉 노인의 돌봄노동관련 법과 내용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민법	1960.1.1/ 2009.5.8	(제 974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 976조 1항)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관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제 976조 2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977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 978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979조)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2004.02.09 2008.02.29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과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아야 하거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간호를 해야 할 경우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가족간호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2007.4.27/ 2009.5.21	(제 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법명	제정년도/ 최근개정년도	내용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005.5.18/ 2009.2.29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사회 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07.12.14/ 2008.2.29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22조의 2의 1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5.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본조 신설 2007.12.2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시간 안내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중측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에 근거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웅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평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제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제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제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복지위원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